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6年 2月
博士學位論文

中國의 投資誘致政策에 따른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活性化 方案에 관한 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金 相 德

中國의 投資誘致政策에 따른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活性化 方案에 관한 研究

- *A Study on the Korean Enterprises' Investment Revitalization
to China according to the China's Investment Invitation Policy* -

2006年 2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金 相 德

中國의 投資誘致政策에 따른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活性化 方案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 明 皓

이 論文을 經營學 博士學位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05년 10월 일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金 相 德

金相德의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印
위원	광주대학교 교수	印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印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印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印

2005년 12월 일

朝鮮大學校 大學院

目 次

ABSTRACT

第 I 章 序 論	1
第 1 節 研究의 目的	1
第 2 節 研究方法 및 構成	4
第 3 節 先行研究에 대한 考察	5
第 II 章 中國의 外國人投資 誘致政策과 投資制度	7
第 1 節 中國의 外國人投資 誘致政策	7
1. 中國의 外國人投資 誘致의 必要性과 關聯法律	7
2. 中國의 外國人投資 誘致의 經過 및 政策의 發展	12
3. 中國의 外國人投資 誘致의 優待政策	26
4. 中國의 外國人投資 誘致의 政策方向	31
第 2 節 中國의 投資制度	34
1. 投資 準備段階의 關聯制度	35
2. 中國 現地 經營段階의 關聯制度 및 關聯慣行	49
第 III 章 主要 競爭國의 對中國 投資 現況	78
第 1 節 中國의 外國人投資 誘致 現況	78
第 2 節 中國의 投資環境과 對中國 投資에 대한 期待	80
第 3 節 主要 競爭國의 對中國 投資 現況	82
1. 對中國 外國人投資 現況	82
2. 對中國 外國人投資의 特徵	85

第 IV 章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 現況	92
第 1 節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의 展開	93
第 2 節 中國의 投資節次	96
1. 意向書·協議書 締結	96
2. 投資 豫備許可 申請	97
3. 事業妥當性 檢討報告書 作成	97
4. 契約 締結	98
5. 定款制定	99
6. 投資許可 申請	99
第 3 節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의 現況 및 特徵	100
1.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의 現況	100
2.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의 特徵	104
第 4 節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動機와 投資決定 要因	113
1.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動機	113
2.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決定 要因	116
第 5 節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가 韓國經濟에 미치는 效果	117
1. 對中國 投資企業의 賣出入 構造와 貿易收支	118
2. 投資의 二重的 役割	120
3. 輸出增加率 停滯 可能性	121
4. 産業空洞化에 미치는 效果	122
第 6 節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의 問題點	125
1. 對中國 投資에서 나타나는 問題點	126
2. 中國의 投資環境에서 나타나는 問題點	131
第 V 章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活性化 方案	136

第 1 節 對中國 投資活性化를 위한 投資戰略	137
1. 生産原價節減型 投資戰略	137
2. 內需市場販賣型 投資戰略	139
3. 對中國 投資企業의 地域別 投資戰略	140
4. 政府次元의 投資支援 戰略	145
第 2 節 對中國 投資活性化 方案	146
1. 中國 政府政策에 대한 活性化 方案	147
2. 投資形態에 대한 活性化 方案	150
3. 經營方式에 대한 活性化 方案	153
4. 對中國 投資企業의 現地化를 통한 活性化 方案	162
5. 韓國政府의 支援에 의한 活性化 方案	168
第 VI 章 要約 및 結論	170
參 考 文 獻	175

表 目 次

<表 II-1>	中國의 外國人直接投資 誘致 推移	15
<表 II-2>	中國의 外國人直接投資 導入關聯 主要 政策의 變化 推移	25
<表 II-3>	中西部地域 開發戰略 主要 內容	43
<表 II-4>	投資方式別 長短點 比較(三資企業의 差異點 比較)	46
<表 II-5>	一般商品의 都·小賣 및 物流配送	67
<表 II-6>	都·小賣業 許可基準	68
<表 III-1>	中國 工業總生産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 차지하는 比重	80
<表 III-2>	中國의 輸出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 차지하는 比重	80
<表 III-3>	中國의 主要國 外國人投資 比重	83
<表 III-4>	主要國 對中國 投資 年平均 增加率(1992~2002)	84
<表 IV-1>	韓國의 年度別 對中國 投資 現況	101
<表 IV-2>	韓國의 海外直接投資와 對中國 投資 比較	102
<表 IV-3>	韓·中間 對中國 投資 統計 比較	103
<表 IV-4>	韓國의 對中國 地域別 投資 現況	107
<表 IV-5>	韓國의 對中國 業種別 投資 現況	109
<表 IV-6>	韓國의 海外投資에서 차지하는 製造業의 比重	110
<表 IV-7>	投資主體別 對中國 投資 規模(1992~2004年 6月)	112
<表 IV-8>	對中國 投資動機	115
<表 IV-9>	大企業의 對中國 投資動機	115
<表 IV-10>	對中國 投資企業의 業種別 賣出과 買入의 構造	118
<表 IV-11>	對中國 投資의 輸出·入 誘發效果 推移(1999~2003)	119
<表 IV-12>	GDP에서 製造業이 차지하는 比重 推移	123
<表 V-1>	外國人 直接投資額 中 引受·合併型 外國人直接投資 比率	152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Enterprises' Investment Revitalization to China according to the China's Investment Invitation Policy

Kim Sang-duk

Advisor : Prof. Kim Myung-ho Ph.D.

Department of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China which was placed to the center of international economy at the time of globalization has executed economic reform and opening policy since 1978 under the leadership of Deng Xiaoping from the impoverished and backward economic reconstruction due to the Great Proletarian Cultural Revolution. During the period, there was up and down in economy in executing its economic reform and opening, but at present China becomes the first economic country in the growing rate of economy by accomplishing economic growth of more than 7~8% a year. Since China put its high target to the economic construction, it has reformed economic structure domestically and has kept open-door policy externally. China's reorganization of economic structure is that all the economy systems are changed to the most suit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direction is the invitation of market economy. At that time, China's open-door policy was to enlarge export and investment invitation by strengthening technology exchange with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for its economic

growth.

Therefore,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was necessary because of lack of domestic capital and technology. Also, economic communic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expanded by leaps and bounds since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Because Korea was adjacent geographically and had the similar culture, Korea has considered China as the largest investment area with infinite possibility and cultivation.

Korean enterprises' investment to China has continued to 1996. Although the investment was a little decreased with the foreign exchange crisis of Korea in 1997, it has increased and reached to US\$ 2,287,100,000 from 1998 afterward.

Korean enterprises' investment to China has been expanded in quantity, but there were many problems because of changing circumstance and a lot of trial and error. Korean enterprises coped with keen competition with Chinese enterprises as well as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China to lead the domestic market of China because China's industrial structure has been changed and its domestic market has been expanded. As many Korean enterprises lack of experience and information about Chinese market, they waste time and expense by trial and error, not understanding the China's special policies, legislations, systems, culture and politics etc., and so they sometimes got the bad investment circumstance.

With this, China which has vast territory is in confusion of enactment and execution of legislations accompanied by economic reform and opening policy. And so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legislations and those of actual practice. Therefore, Korean enterprises should understand investment systems and the actual practice by doing prior research for China's investment circumstance, a special feature and market structure.

In view of this, this thesis aims at presenting a way of successful entry into China and offering the good information for the Korean enterprises in China and expecting companies.

Under the circumstance, the ways of investment strategy and promotion are presented as follows : First, Korean enterprises should set up systems to cope with the market environment, the level of technology and market prices in China.

Second, Korean enterprises should expand R&D and use intellectual property. And further, they should strength the competitive power of intangible property and should center on the joint investment with those of China. With this, it is necessary for Korean enterprises to consider M&A for the invitation of foreign investment.

Third, with the pace of sudden investment circumstance and uncertainty, Korean enterprises should make thoroughly prior preparation and adaptability research to China for their successful investment, and securing good labor forces. Above all this, it is necessary to make use of 'GuanXi' for the broad understanding of Chinese culture and formation of human relations.

Forth, Korean enterprises should face with the economic change of China, diversify the investment area in China and make credit with the local employees.

Fifth, Korean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for the new formation of the two countries, and also make countermeasures. On the other sid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mote corelations with China through the better understanding and the expansion of tour exchange. Besides, it is important for Chinese to understand Korea through the Korean Wave.

Since the China's entry into the WTO system, the foreign enterprises have increased the investment to China and it is expected to make severe competition in China. Accordingly, it is also expected to make large investment of Korean enterprises to China. And so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 way to enter into China for the Win-Win relations rather than competitive relations.

第 I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目的

세계적으로 社會主義 經濟體制 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中國은 대표적인 성공적 사례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中國이 동유럽이나 러시아가 겪었던 것과 같은 심각한 경제적 파동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市場化에 성공했다는 점 때문이다. 中國은 1976년까지 약 10년간 지속된 「文化大革命」 시기의 극심한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 피폐하고 낙후된 경제재건을 위해 鄧小平을 중심으로 1978년부터 經濟改革·開放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경제개혁·개방을 추진하게 된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이전에 ‘竹의 帳幕’(bamboo curtain)으로 불리던 外國정책으로는 더 이상 국가의 안정적 발전 내지 經濟發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中國의 지도부는 이미 1970년대부터 世界經濟의 글로벌화가 시작되어 경제적 자원의 국제적 이동이 촉진되는 추세에서 만일 中國이 外國정책을 지속한다면 낙후된 經濟의 復興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世界市場과 西方中心의 세계경제체제 속으로 다시 진입해야 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중국은 경제건설이라는 중심목표를 위해 經濟改革·開放과 ‘4개 기본원칙 견지’라는 2대 정책을 결정하게 되었고,¹⁾ 이러한 경제개혁·개방노선하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外國人投資 誘致 政策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國內資本과 技術이 매우 부족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가 불가피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韓國은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經濟交流가 급속

1) 이는 이른바 ‘1개 중심, 2개 기본점’을 가리키며, ‘4개 기본원칙’은 사회주의 노선, 인민민주주의 독재, 공산당 영도, 맑스-레닌주의 및 마오쩌둥사상을 가리킨다.

도로 확대되었다. 왜냐하면 韓國은 中國과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문화적 이질감이 상대적으로 적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미개척시장으로 인식됨으로써 韓國의 최대 투자대상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는 양국간의 수교 이후 交易擴大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1996년까지 급증하다가 1997년 外換危機를 계기로 다소 위축되었으나, 그 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2005년 현재 빠른 속도의 증가를 보이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韓國의 對中國 投資는 실행액 기준으로 1992년 170건 1억 4,110만 달러에서 2004년 2,150건 22억 8,710만 달러로 무려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대중국 투자가 급증한 결과 2001년 이후 연간 실행투자 기준으로 중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투자지역으로 부상하여, 중국은 2005년 현재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韓國의 對中國 投資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만 한 것은 아니며, 1996년 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1997년 外換危機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9년에는 3억 4,870만 달러 수준으로 격감하였으나, 2000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8억 9,440만 달러까지 회복되었다. 특히 2001년에 純投資 規模가 감소한 것은 對中國 投資의 주요 업종인 製造業을 비롯하여 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事業의 撤收가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다. 그 후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는 계속 증가하여 2004년 현재 22억 8,710만 달러에 이르렀고, 이러한 현상은 2005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가 급증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 시기적으로 中國과의 수교와 한국기업이 海外投資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시점이 일치하였다는 점, 둘째, 1980년대 말부터 國內 製造業의 賃金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勞動集約産業의 해외이전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는 점, 셋째, 中國이 새로운 글로벌 제조업 기지로서 빠르게 부상하였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對中國 投資의 급속한 양적 팽창과정에서 環境變化와 試行錯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났다. 대중국 투자 한국기업들은 中國 産業構造의 變化와 中國 內需市場의 擴大가 확산되는 가운데 내수시장을 주도하려는 多國籍企業들은

물론 이들 기업들의 先進技術과 經營技法을 전수 받아 급속히 경쟁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중국기업들과도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韓國企業들이 경험·정보의 부족, 시행착오로 인한 時間·費用의 낭비, 그리고 중국특유의 政策·法規·制度·文化·政治的 要因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投資環境을 잘못 파악하여 투자 이후 현지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製造業의 경우 원가절감, 현지 내수시장 개척, 자원개발 등의 본래 투자목적 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中國市場에서 철수했거나 철수를 준비 중인 기업들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經濟改革·開放에 수반되는 법규 제정·집행상의 혼란 등으로 제도와 실제 시행되는 慣行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中國에 대한 投資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中國의 投資關聯制度를 숙지함과 동시에 그것이 실제로 시행되는 慣行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투자환경과 특징, 市場構造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논문은 이미 中國에 進出한 한국기업은 물론, 중국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企業에게 현장 중심의 대중국 투자 전반에 걸쳐 情報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中國進出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中國의 對外開放에 따른 투자유치정책과 그 변화에 따른 中國의 投資制度和 慣行, 세계의 주요 경쟁국과 한국기업의 對中國 投資 現況과 特徵, 韓國經濟에 미치는 影響, 問題點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活性化를 위한 投資戰略과 投資活性化 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 2 節 研究方法 및 構成

本 論文의 연구방법은 필자가 1990년도부터 무역업을 시작하여 中國을 상대로 사업을 했던 經驗과 학교에서의 講義 內容, 中國에서 발간한 관련서적들과 국회도서관, 한국산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KOTR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각종 세미나 자료, 관련 전문지, 신문보도 자료, 각종 研究論文을 참고하였고, 전반적인 통계자료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한 자료수집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本 論文의 연구범위는 中國이 經濟改革과 開放으로 경제적 성공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화를 통한 中國의 투자제도, 세계 주요 경쟁국의 中國에 대한 투자 현황, 한국기업의 對中國 投資 現況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한국기업의 對中國 投資活性化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本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第 I 章에서는 研究의 목적, 방법 및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나아가 先行研究도 검토하였다. 第 II 章에서는 中國의 대외개방에 따른 投資誘致政策과 그 변화, 中國의 投資制度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第 III 章에서는 世界의 주요 경쟁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을 國家別로 분석하였다. 第 IV 章에서는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 現況을 지역별·업종별·투자주체 및 기업규모별로 현황 및 특징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여 對中國 投資가 韓國經濟에 미치는 效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第 V 章에서는 第 II 章~第 IV 章에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活性化를 위한 投資戰略과 投資活性化 方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第 VI 章에서는 본 論문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고 결론을 맺었다.

第 3 節 先行研究에 대한 考察

본 논문은 中國의 投資誘致政策의 변화에 따른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活性化 方案에 관한 연구로서 먼저 先行 研究者들의 연구배경이나 내용을 고찰해 봄으로써 본 논문의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덕무·이충호(2004)는 “中國의 投資環境에 따른 效率的인 現地法人 設立方案”에서 중국시장의 특성 및 중국의 外國人投資政策과 현지법인 설립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²⁾

趙宗植(2000)은 “中國 通關制度의 問題點에 관한 考察”에서 통관제도상의 문제점으로 保管員의 근무업체 도용, 대리통관, 보세운송의 제한, 서류 및 상품통관의 이원화에 따른 수출지연, 輸入申告 遲滯金 賦課, 통관지연 등을 들고 있다.³⁾

蔣東植 教授(中國 南開大學 國際商學院, 2002)는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중국의 通商關係 法制가 개편됨으로써 우리나라는 한·중간 통상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나아가 中華經濟圈 形成에 따라 FTA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하였다.⁴⁾

최남용 교수(목포대, 2003)는 中國의 경제특구 건설을 통하여 전남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中國特區 實現을 위한 교류기반을 정비하고 國內 據點都市의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기술하였다.⁵⁾

姜永文 教授(고려대, 2000)는 WTO 체제하의 韓·中 關係에 대하여 뉴라운드하

2) 이덕무·이충호(2004), “중국의 투자환경에 따른 효율적인 현지법인 설립방안”, 『무역학회 발표논문집』, 한국무역학회.

3) 조종식(2000. 2), “중국 통관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13권.

4) 장동식(2002), “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대외무역제도 개편과 한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에 관한 연구”, 『WTO 제1차 다자간협상(DDA)과 한국무역의 대응전략 도출』, 한국무역학회.

5) 최남용(2003), “중국특구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방안”,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정책방향』, 한국국제통상학회.

에서 상호간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WTO 체제하에서의 중국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적합한 對中國 通商戰略을 수립하여 상사분쟁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⁶⁾

對外經濟政策研究院의 지만수 외 4인(2004)의 연구는 中國에 투자하고 있는 韓國 企業들의 현황, 투자동기, 경영성과, 경영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국투자 기업들의 성공률과 經營成果를 개선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中國投資가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企業과 政府의 중국전략 수립에 있어 판단 근거와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⁷⁾

김병순 교수(단국대, 2004)는 중국의 經濟現況과 投資環境 및 지역별 경제발전 전략을 東部沿岸, 西部地域, 東北3省으로 구분하여 발전전략을 제시하였고, 中國의 産業政策과 외국인의 투자환경 및 한국기업의 對中國 投資環境과 투자전략을 지역별로 제시하였다.⁸⁾

仁川發展研究院의 강승호 외 8인(2004)의 연구는 중국의 東北3省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投資戰略과 進出方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고, 동북3성에 대한 外國人 投資 現況 및 한국의 투자현황을 년도별로 제시하였으며,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에 있어서 政府次元의 대응방안과 企業次元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⁹⁾

6) 강영문(2000), “WTO 체제하의 한·중 통상관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5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7) 지만수 외 4인(2004. 12),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정책연구 04-1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 김병순(2004. 12),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대한경제학회지』 제17권 제6호, 대한경제학회.

9) 강승호 외 8인(2004. 6), 『중국 동북3성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IDI행사자료집 2004-03, 인천발전연구원.

第 II 章 中國의 外國人投資 誘致政策과 投資制度

第 1 節 中國의 外國人投資 誘致政策

中國은 1976년까지 약 10년간 지속된 「文化大革命」 시기의 극심한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 피폐하고 낙후된 경제를 再建하기 위해 1978년부터 經濟改革·開放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經濟改革·開放을 추진하게 된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이전에 ‘竹의 帳幕’(bamboo curtain)으로 불리던 鎖國政策으로는 더 이상 국가의 안정적 발전 내지 經濟發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中國의 지도부는 이미 1970년대부터 世界經濟의 글로벌화가 시작되어 經濟資源의 국제적 이동이 촉진되는 추세에서 만일 中國이 鎖國政策을 지속한다면 낙후된 경제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세계시장과 西方中心의 世界經濟體制 속으로 다시 진입해야 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中國은 새로운 국가발전 노선, 즉 經濟建設이라는 중심목표를 위해 改革·開放과 4個 基本原則 堅持라는 2대 정책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경제개혁·개방 노선하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外國人投資 誘致政策이다.

1. 中國의 外國人投資 誘致의 必要性和 關聯法律

가. 中國의 外國人投資 誘致의 必要性

中國은 국내자본과 기술이 매우 부족하여 外國人直接投資의 유치에 불가피하였고, 레닌(V. Lenin)의 “國家資本主義論”, 즉 사회주의 국가의 외자이용 및 외국인직

접투자 유치의 필요성에 관한 논리에 根據하여 투자유치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經濟改革·開放이 점차 확대·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투자유치정책은 국제분업, 비교우위, 국제무역, 국제투자 등과 관련된 다양한 논리에 근거하여 발전하였다. 이로써 국내의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補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을 위해 外國人直接投資를 이용하였다. WTO 가입 이전 중국의 外國人投資 誘致政策의 배경과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⁰⁾

첫째, 자원배분의 합리화 필요하다. 중국은 過去 社會主義 計劃經濟體制의 軟性豫算制約¹¹⁾ 문제와 이른바 ‘大而全, 小而全’(조직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추려는) 관행, 지방보호주의, 자금자족체계 등으로 인해 투자의 중복과 과잉, 規模의 不經濟 및 산업조직의 과도한 분산과 난립, 기업조직의 방만화 등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심각하였다. 資源配分の 合理化를 위해서는 자원이 가치규율에 따라 투입 산출효율이 보다 높은 곳으로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中國은 이러한 자치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경제제도의 일환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의 도입과 이용이 필요하였다. 중국은 外國人直接投資가 자원의 국제적 이동과 국제시장의 활용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이용해 국내자원의 合理的 配分을 추구하였다.

둘째, 국내산업의 구조조정과 개선을 위해 外國人直接投資가 필요하였다. 중국은 계획경제시기에 舊蘇聯의 공업화모델에 따라 중공업 우선 발전정책을 장기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소비재공업이 낙후돼 日用消費品과 식품의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經濟狀態에 빠지고 산업구조의 불균형, 생산요소이용 효율저하, 내수부진, 성장잠재력 약화 등의 문제를 안게 되었다. 經濟改革·開放 이후 중국은 산업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외국인직접투자가 필요하였다. 전통적 국제투자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斜陽産

10) 김익수 외 14인, 『현대 중국의 이해』, 나남출판, 2005, pp. 506~510.

11)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의 투자행위는 일정한 예산의 제약을 받는다. 이 예산선은 임의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헝가리의 경제학자 코르나이(J. Kornai)는 이를 경성예산(hard budget)으로 보았고, 반면에 국가사회주의체제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국가의 보조금으로 인해 그 예산선이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연성예산(soft budget)이라고 보았다.

業을 개도국으로 이전하여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피하고, 개도국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선진국의 斜陽産業을 유치해 이를 成長産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 科學技術의 혁명적 발전, 다국적기업의 발전, 경제글로벌화 등이 갈수록 빨라지면서 수평적 국제분업과 生産要素의 국제적 이동이 촉진됨에 따라, 중국은 國際分業을 이용해 産業構造를 개선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맞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중국은 그 동안 外國人直接投資의 적극적 이용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國民經濟에서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비효율성이 심각한 국유기업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하였다. 過去 計劃經濟 時期에 産業생산 전반을 담당한 國有企業은 정부의 명령과 계획에 따라 정부에 의해 분배되는 원자재를 투입해 생산한 제품을 政府計劃價格에 따라 공급하여, 경영자주권이 없고 손익을 책임지지 않으며 국가의 ‘큰술밥’을 먹던 政府 附屬物에 불과했다. 즉 과거에 국유기업들은 이윤동기를 缺乏하고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中國은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였고, 그 촉진수단으로서 外國人投資企業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中國은 시장원리에 입각해 이익과 효율을 추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개혁의 모델 내지 學習과 模倣의 대상이 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메카니즘이 中國의 전통적 기업제도와 개념을 변화시킨 衝擊要因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였다. 특히 경제개혁·개방 초기에 중국은 국유기업과 외국기업의 合作을 장려함으로써 외국기업에 대한 學習效果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海外의 선진 과학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가 필요하였다. 맑스의 唯物史觀에 따르면 한 국가의 제도적(정치, 법률, 종교 등), 이데올로기적 上部構造는 下部構造에 의해 결정되고, 하부구조의 핵심인 경제구조는 생산력의 발전단계에 의해 결정되며, 生産力의 핵심은 科學技術에 있다. 이러한 사상에 근거해 중국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생산력을 개발하려면 科學技術의 발달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대표적인 예로 鄧小平은 과학기술은 제일의 生産力이라고 주장했고, 경제개혁·개방의 목표인 이른바 ‘4個 現代化’¹²⁾ 속에는 과학

기술의 현대화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개방 이전에 중국의 산업기술 수준은 낙후된 상태였다. 그 원인은 自力更生 爲主의 기술도입 정책, 플랜트 설비 등 하드웨어 위주의 技術導入, 정부와 국유기업 외의 기술도입 창구 결핍, 기술도입용 외화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經濟改革·開放 이후 중국의 기술도입 수요는 매우 컸으며, 中國은 새로운 기술도입 경로로서 外國人直接投資를 중시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은 外國人直接投資가 상당히 효과적인 기술도입 방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기술을 도입하면 설계, 제조기술, 경영기법 등 소프트웨어 技術의 導入이 비교적 용이하고, 기술도입 자금의 부족에서 오는 제약을 받지 않으며, 內·外資企業間의 협력을 장려하여 내자기업(본토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섯째, 자국의 比較優位를 적극 활용하는 데에 외국인직접투자가 필요하였다. 아담 스미스(A. Smith)의 勞動分業論과 리카도(D. Ricardo)의 比較優位論에 따르면, 한 국가의 經濟發展을 위해서는 勞動分業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각 국은 자원부존 여건에 따라 자국이 比較優位를 지닌 제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해 國際貿易을 통해 타국의 비교우위 제품과 교환함으로써 勞動生産性의 향상과 國富增加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중국은 방대한 영토와 인구, 풍부한 天然資源을 보유하고, 이로부터 저비용 생산기지의 이점과 같은 비교우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比較優位를 개발하고 자국제품의 國際市場을 개척하는 데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이용하였다.

나. 中國의 外國人投資 誘致 關聯法律

12)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말함.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의 중국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점차적으로 비교적 완비된 법률체계를 세웠다. 1979년 全國人民代表大會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 발표에 따라 그 후 20여년 동안에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경영, 철수, 청산에 대하여 관련 법률, 법규, 조례, 방법을 제정함으로써 현재 산업정책, 지역정책, 세수정책, 금융정책 등을 주체로 한 비교적 완비된 법률·법규 체계를 형성하였으며, 외국인투자의 自主的 經營權을 보장하고 국내외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외국인투자자의 중국투자에 적용하는 주요 법률과 법규는 다음과 같다.¹³⁾

(1) 外國人投資에 관한 特別法律과 法規

- ①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시행 조례
- ②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시행 규칙
- ③ <중화인민공화국 외상독자기업법> 및 시행 규칙
- ④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및 시행 규칙
- ⑤ <외상투자 방향지도 규정> 을 근거하여 만든 <외상투자산업지도 목록>과 <중서부지구우세산업 목록>이 아주 중요하다.
- ⑥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투자보호법> 및 시행 규칙(홍콩, 마카오, 대만의 투자자의 중국의 투자는 외국인투자의 관련 법률과 법규에 적용한다.)

(2) 外國人投資에 관한 一般的 法律과 法規

- 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13) 王治林(2004), “中國吸收外國直接投資的法律和政策(중국의 외국직접투자유치에 관한 법률과 정책)”, 『경남법학』 제19호,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p. 7~8.

- ②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 ③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 ④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 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 ⑥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잠정조례> 및 시행규칙
- ⑦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잠정조례> 및 시행규칙
- ⑧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잠정조례> 및 시행규칙

(3) 外國人投資에 관한 國際條約

- ① <쌍변투자보호협정>(중국은 현재 세계 103개 나라와 투자보호협정을 맺었다).
- ② <이중과세방지협약>(중국은 이미 90여개 나라와 이 협약을 체결했다).

2. 中國의 外國人投資 誘致의 經過 및 政策의 發展

中國의 投資誘致政策은 세계적인 경제글로벌화 趨勢下에서 자본 등 경제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촉진되는 과정과 中國이 經濟改革·開放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했고, 여러 가지 필요성과 목적을 띄고 전개되었다. 그 동안 投資誘致政策의 변화는 국내의 경제상황과 경제체제 개혁 및 산업발전의 수요에 따라 조정되어 왔고, 鄧小平의 ‘南巡講話’¹⁴⁾, 아시아 금융위기 및 WTO 가입 등이 중국의 투자유치정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몇 가지 중요 시점에 근거하여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과 外國人直接投資 推移를 몇 단계로

14) 1992년 1월 18일~2월 21일 사이 심천, 주해, 무창 등 중국 남부의 주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행한 강연을 말한다. 덩소평은 여기에서 재차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혁·개방의 확대와 시장경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¹⁵⁾

가. 始作段階(1979~1986)

1979년 6월 中國國務院은 ‘기술도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수출확대에 노력하자’라는 방침을 제시하였다.¹⁶⁾ 그 해 7월 국무원은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公布했는데 이는 중국 최초의 대외경제 법규이다. 이후 경제개혁·개방과 투자유치사업 확대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국무원은 1983년과 1986년에 각각 “中·外合資經營企業法 實施條例”와 “外資企業法”¹⁷⁾을 공포하였다. 이 법규들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되었고, 이에 立脚해 각급 행정부문은 외국기업 유치활동에 상당한 裁量權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경제개혁·개방 초기에는 中國政府의 투자유치 입법이 미흡했고, 투자유치정책의 안정성에 대한 信賴度가 부족했기 때문에 外國企業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에 상당히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중국의 기초시설이 낙후했기 때문에 外國企業들은 중국에 시험적으로 투자하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中國政府의 투자유치 실적은 상당히 저조했다. 1986년까지 누계로 외국인직접투자(도착기준) 유치누계는 66억 달러에 그쳤다(<표 II-1> 참조).

나. 初期 成長段階(1987~1991)

1980년대 후반부터 中國經濟와 世界經濟 사이에는 상당한 連繫關係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78년에 206억 달러에 불과하던 대외 상품무역은 1987년에 827억 달

15) 김익수 외 14인(2005), 전게서, pp. 510~524에서 轉載.

16)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정부공작(업무) 보고를 통해 제시하였다.

17) 외자기업이라 함은 100% 외국인투자기업, 즉 독자기업을 가리킨다.

러로 증가하였고, 外國人直接投資를 포함한 각종 외자도입 총액은 1983년에 8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당시 중국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더욱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관련 입법을 加速化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6년 10월 國務院은 “外國人投資 獎勵에 관한 規定”을 公布하여, 제품수출형 및 기술선진형 외국인투자기업에 보다 큰 우대혜택을 부여하였다. 국무원의 각 관련부처도 이 규정의 실시와 관련한 實施細則을 잇따라 제정하는 동시에 中國政府는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였다.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가 진전되고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中國의 投資環境은 상당히 개선되었고 외국기업의 투자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8년 말부터 약 3년간 중국이 政治·經濟的 不安을 해소하기 위해 治理整頓 政策¹⁸⁾을 실시함에 따라 경제개혁·개방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1989년 天安門事態로 인하여 서방이 중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함에 따라 중국의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가 높아졌고, 이는 外國人投資를 상당히 위축시키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中國의 정세가 차츰 안정되면서 1991년에 外國人直接投資 誘致額은 약 4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1987~1991년 기간에 외국인직접투자 누계는 168억 달러에 달했고, 年平均 誘致額은 약 34억 달러로 제1단계의 8억 달러에 비해 약 4배 증가하였다(<표 II-1> 참조). 그러나 이 시기에 중국이 유치한 외자는 대외차관 위주여서 1986~1990년에 그 비중은 평균 65%에 달했고,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은 같은 기간에 31%로 상당히 낮았다.

<表 II-1> 中國의 外國人直接投資 誘致 推移

(단위 : 억 달러, %)

18) 1988년 9월 중국공산당 13기 3중전회(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치리정돈정책은 본래 경제개혁·개방 10년 동안 누적된 경제상의 제 문제들을 시정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적 아래 출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경기과열과 급속한 물가상승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투자의 취소 및 재정·금융 긴축을 실시하고 중앙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연 도	계 약 투 자		실 제 투 자	
	금 액	성 장 륜	금 액	성 장 륜
1979~1983	77.4	-	18.1	-
1984	26.5	-	12.6	-
1985	59.4	124.1	16.6	31.7
1986	28.3	-52.4	18.7	12.7
1987	37.1	31.1	23.1	23.5
1988	53.0	42.9	31.9	38.1
1989	56.0	5.7	33.9	6.3
1990	66.0	17.9	34.9	2.9
1991	119.8	81.5	43.7	25.2
(소계) '남순강화' 이전	523.5	-	233.5	-
1992	581.2	385.1	110.1	151.9
1993	1,114.4	91.7	275.1	149.9
1994	826.8	-25.8	337.7	22.8
1995	912.8	10.4	375.2	11.1
1996	732.8	-19.7	417.3	11.2
1997	510.1	-30.4	452.6	8.5
1998	521.0	2.1	454.6	0.4
1999	412.2	-20.9	403.2	-11.3
2000	623.8	51.3	407.2	1.0
2001	692.0	10.9	468.8	15.1
2002	827.7	19.6	527.4	12.5
2003	1,150.7	39.0	535.1	1.5
2004	1,535.0	33.4	606.0	13.2
총 계	10,964.0	-	5,603.8	-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2001~2004), 『중국통계연감』 ; 중국 국가통계국(2004~2005), 『중국통계적요』 ; 김익수 외 14인(2005), p. 513에서 재인용.

다. 高速成長 및 調整段階(1992~1997)

治理整頓 期間에 중국은 천안문사태나 동유럽 공산권 및 蘇聯의 沒落 등으로 안팎에서 격변을 겪었고, 이에 따라 사회 속에는 변화의 기운이 팽배해져 變革을 要

求하는 분위기가 자리잡게 되었다. 중국지도부는 이러한 변혁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을 全面的 市場化에서 찾았던 것 같다. 지도부는 1992년 초 덩소평의 ‘南巡講話’를 기점으로 하여 전면적 시장화를 추구함으로써 사실상 計劃經濟 路線을 포기하고 이른바 ‘社會主義 市場經濟’ 노선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해 세금우대정책을 폭넓게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1994년부터는 인민폐 이중환율제의 단일화, 인민폐의 33.3% 평가절하, 外國人用 外貨兌換券¹⁹⁾ 廢止 등 외환관리제도 개혁을 통해 外國人의 투자편의를 크게 제고시키는 동시에 중국은 전면적 대외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국무원은 기존에 개방한 연해지역뿐만 아니라 沿江·沿邊地域으로 개방범위를 확대하면서 본격적 대외개방 구도를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外國人直接投資는 급격히 증가해 1992년에 유치액이 11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이후에도 유치액은 계속 급증해 1993년 275억 달러, 1995년 375억 달러, 1997년 453억 달러에 달했다(<표 II-1> 참조). 이 시기에 外國人直接投資의 유치 구조에는 몇 가지 特徵的 變化가 있는데, 첫째는 投資事業의 건당 평균 투자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1986~1990년 기간의 건당 平均投資額(계약액 기준)은 106만 달러였으나, 1991~1995년 기간에는 155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둘째는 투자형태상의 변화이다. 中國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주로 合資, 合作, 獨資로 구분되는데, 종래에는 합자의 비중이 컸다. 中國政府가 內資企業의 기술도입 촉진을 위해 독자보다는 합자나 합작을 장려하였고, 외국기업도 중국 현지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內資企業과의 합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中國政府가 점차 모든 형태의 外國人投資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외국기업이 投資事業 經營의 통제권 장악을 중시하게 됨에 따라 신규 투자기업 중 독자기업의 비중이 갈수록 커졌다. 1992년에 외국인직접투자 계약액 중 合資와 獨資의 비중은 각각 50%, 27%였으나, 1998년에 그 비중은 각각 33%, 42%로 변했다.

19) 과거 중국은 내국인용 인민폐와 외국인용 외화태환권의 환율을 다르게 적용하였고, 외국인은 외화태환권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外國人直接投資 實行國의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었다. 과거에는 홍콩기업에 의한 투자가 대부분이었으나, 1995년 이후 구미선진국 및 일본기업들이 大量投資를 시작하면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상승하였다.

넷째, 중국 투자유치정책의 변화 및 市場開放의 進展에 따라 투자유치 방식이 다양화되었다. 즉 외국인직접투자 방식이 企業新設型 投資로 제한되었던 이전과는 달리 BOT(Build, Operation and Transfer), 지분참여, 주식시장을 통한 투자 등 새로운 방식의 출현으로 다양해졌다.

外國人直接投資의 빠른 증가추세와 함께 상술한 특징이 출현한 것은 中國의 投資環境이 개선되었음을 반영한다. 특히 투자유치정책의 조정과 法規·制度의 정비가 크게 작용하였다. 經濟改革·開放 이래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다수의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을 제정·시행하였다. 그러나 中國政府가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에 부응하고 外國投資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중국의 경제·산업구조 조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關聯政策과 制度를 조정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부터이다.

1991년부터 中國은 經濟社會 發展을 위한 제8차 5개년계획 기간에 들어갔는데, 이 때부터 중국은 경제발전 및 대외개방정책의 방향을 이전의 ‘地域傾斜’에서 ‘産業傾斜’로 전환하였다. 1980년대에 중국은 대외개방지역을 ‘點’에서 ‘線’으로, 다시 ‘線’에서 ‘面’으로 확대하면서 지역경사적 산업발전과 투자유치정책을 전개하였다.²⁰⁾ 그러나 그 결과는 地域發展이 극도로 불균형해지는 문제를 낳았다. 이 때문에 中國은 8차 5개년계획 기간에 점차 지역경사적 정책을 폐지하고 特定産業의 發展을 장려하는 산업경사적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국무원은 1990년대 중기부터 農業과 基礎產

20) 중국은 1980년에 남부지역에 4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해 대외개방을 시험한 뒤에 1984년 동남부 연해지역에 분포한 14개 항구도시를 개방함으로써 개방지역을 점에서 선으로 확대하였다. 1985~1986년에는 장강, 주장, 민난의 3개 델타지역과 랴우둥, 자오둥의 2개 반도, 상하이, 광저우, 민난, 환발해, 황허델타의 5개 경제구를 개방함으로써 개방지역을 선에서 면으로 확대하였다. 1988~1990년 중에는 하이난섬을 경제특구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개방지역 내에 보세구, 경제기술개발구를 설정했으며, 특히 상하이에서 푸둥개발구 건설에 착수하였다.

業의 발전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1994년 3월에 반포한 “90年代 國家産業政策綱要”에서는 기계,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건설업을 5대 성장주도산업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1995년 6월에 국무원은 “外國人投資의 方向을 指導하는 暫定規定”을 반포함과 동시에 “外國人投資産業 指導目錄”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장려·허용·제한·금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으로써 外國人投資를 더욱 규범화하고 노동집약적 경공업, 가전, 화공 등 업종의 중복투자 및 설비과잉 문제에 대응하였다.

1996년에 中國政府는 投資誘致政策을 조정했는데, 그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租稅減免政策을 조정하였다. 국내기업이 外國人投資企業과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中國政府는 1996년 4월부터 外國人投資企業의 資本財輸入에 대한 조세우대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였다. 둘째, 가공무역 보증금 대장 제도를 시범적으로 보급하였다. 이는 外國人投資企業들이 가공무역 방식을 탈법적으로 이용하여 관련조세를 회피·포탈함을 방지하면서 가공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6년 7월부터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정의 영향으로 中國의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投資誘致의 양적 수량을 중시하던 데서 질적 측면을 중시하기 시작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출현했다.

라. 投資誘致政策의 再調整 및 開放深化 段階(1998~2001)

對外開放의 진전으로 中國經濟와 世界經濟의 연계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경제는 國際政勢의 변화에 따른 영향 내지 충격에 상당히 노출되는 상태를 보이게 되었다. 1997년 발생한 아시아 金融危機는 中國의 경제 전반 및 投資誘致政策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위기 속에서 특히 人民幣換率의 안정유지는 國際社會에 중국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달러화에 고정된 인민폐환율의 안정유지로 인해 인민폐 가치는 인접한 동남아국가들의 貨幣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 때문에 中國의 가공무역 수출은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었고 投資環境도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또한 金融危機 發生國에서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심각한 資金難에 빠지게 되어 對中國 投資가 크게 감소하였고, 중국 내 투자취소와 부도, 철수 등의 사례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中國의 投資誘致는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中國政府는 인민폐의 相對的 過大評價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및 沿海地域의 토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투자환경의 악화 국면을 만회해야만 했다. 동시에 中國政府는 산업구조 개선 및 西部大開發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 기초하여 투자유치의 방향을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던 태도로부터 정책적 필요에 부합하는 外國 投資를 주도적으로 선별 유치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1988년 1월 국무원은 投資誘致 鈍化現狀에 대응하여 투자유치정책에 대한 微視的 調整을 가하고 대다수 外國人投資企業의 기계설비 수입에 대한 세수면제 혜택을 회복시켰다. 또한 1999년 6월에 국무원은 “外國人投資 商業企業 施行方法”을 비준하여 소매업에 대한 外國人投資의 개방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이어서 2000년 9월에 국무원은 새로운 投資誘致政策 및 措置를 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의 技術開發과 革新을 장려하여, R&D 센터의 설립·운영, 기술의 도입 및 혁신행위 등과 관련해 상당히 광범위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였다. 둘째, 西部大開發政策에 의거하여 중서부지역에 대한 外國人投資를 장려하고 각종 우대혜택을 부여하였다. 셋째, 장차 중국의 WTO 가입에 대비하여 점차적으로 서비스산업분야의 對外開放을 확대하고 이 분야의 投資誘致를 촉진하기 시작하였다. 넷째,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中國 株式市場 上場을 허용하고, 多國籍企業의 중국 내 설립 투자회사의 경영범위를 확대하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投資誘致에 불리한 관련정책과 규정 등을 폐지하거나 조정하였다. 다섯째, 外國人投資 方式의 확대와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외

국기업이 引受·合併, 持分參與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 경쟁업종의 중소형 국유기업의 민영화 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였다.

한편 중국은 WTO 가입을 앞두고 外資 3法(外資企業法, 中外合作經營企業法,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잇달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²¹⁾

첫째, 외환수지 균형 요구 폐지이다. 외자 3법 제정 당시 중국은 外換準備庫가 충분하지 못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외환관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三資企業은 외화가 필요할 경우 출자금이나 수출로 획득한 외화를 사용해야 한다는 外貨均衡義務條項이 있었으나, 이후 중국은 外換管理를 완화하고 1996년 12월에는 IMF 8조국(외환제한 철폐)으로 이행하여 經常去來가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었는데, 이 개정에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였다.

둘째, 原資材의 국내조달 우선 요구 폐지이다. 외자 3법 개정 전에는 외화관리, 국내산업 육성 측면에서 원자재는 國內市場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에서 조달방법은 정부가 관여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WTO 내국민대우원칙에 합치되지 않아 폐지하게 되었다.

셋째, 生産 및 經營計劃의 제출의무 폐지이다. 중국은 이미 오래 전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진입해 三資企業을 포함한 각 기업은 생산 및 경영계획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므로 폐지하게 되었다.

넷째, 輸出義務에서 輸出獎勵로 변경이다. 이때까지 외화균형 유지, 수출산업 진흥이란 관점에서 外國人投資企業에게 수출의무를 부여해 왔으나 WTO 內國民待遇原則에 부합되지 않아 수출의무가 수출장려로 변경되었다.

다섯째, 勞組設立에 관한 조항 추가이다. 外資企業法, 中外合作經營企業法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고, 中外合資經營企業法에는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되면서 추가되었다.

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2), 『WTO 최신 중국 경제법령집』, pp. 175~176.

마. 投資誘致의 글로벌化 段階(2002年 以後)

1990년대 이후 世界經濟는 情報化, 交通·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해 경제글로벌화가 현저하게 가속화되고 있다. 中國 역시 2001년 말에 WTO에 가입함으로써 글로벌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WTO 가입,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 그리고 2010년 상하이 EXPO 유치의 성공으로 中國의 市場開放과 市場經濟體制 整備의 가속화를 가져옴으로써 中國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더욱 활발해졌다. 경제글로벌화 속에서 세계의 경제·기술자원은 投資效率이 높은 곳으로 再配置되기 마련이므로, 저비용 생산기지와 市場潛在力의 이점을 지닌 中國이 흡인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은 世界經濟의 전반적인 공급과잉과 디플레이션구조 속에서 더욱 촉진되고 있다.

中國經濟가 WTO 가입에 따라 개방확대를 피할 수 없게 된 이상 中國은 開放擴大를 자국에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世界經濟의 글로벌화 추세에서 오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경제글로벌화와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해 中國정부는 經濟·産業構造의 調整 및 하이테크의 발전에 주력하고, 이를 經濟政策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투자 유치정책을 실시하였다. 예컨대 2002년 말 개최된 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 中國政府는 경제글로벌화에서 오는 기회를 이용해 中國經濟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외국투자 이용의 역점을 技術導入, 産業構造의 高度化, 國際競爭力 強化와 동시에 국제분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2003년 10월에 개최된 중공 16기 3중전회는 中國의 외국인투자 유치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몇 가지 정책을 결정하였다. 中國中央黨校의 副校長인 리권루(李君如)는 이 회의에서 이루어진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의 完備關聯 問題에 대한 決定’과 ‘憲法 一部 內容의 修正關聯 建議’가 中國의 경제개혁·개방을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킨 역사적 정책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새롭게 제시된 정책은 특히 公有制와

非公有制間の 관계에서 획기적 변화를 규정하였다. 그 변화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國有企業의 소유권 개혁과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現財產權制度의 본격적인 도입, 공유·사유자본이 함께 참여하는 混合所有制의 대대적인 발전, 사유자본 진출영역의 전방위적 확대, 私有企業에 대한 차별대우 철폐 등이다. 한편 헌법수정과 관련해서는 私有財產의 不可侵을 최초로 보장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外國企業의 M&A 투자를 적극 활용²²⁾해 國有企業의 民營化를 촉진함으로써 다수의 부실 國有企業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면서 은행권의 국유기업 관련 부실채권 감소, 산업구조의 조정 및 고도화, 국유기업 종업원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의 효과를 도모하였다. 이전에 中國政府는 이른바 ‘抓大放小’(큰 것에 역점을 두고 작은 것은 풀어놓는) 방침에 따라, 基幹産業이나 전략산업, 성장주도산업 등의 업종과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外國資本의 참여를 제한하고 일반 경쟁업종이나 중소형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영화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中國政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國有企業의 多數持分을 외국기업이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둘째, 外國人이 M&A, 지분참여, 주식매입, 투자기금을 통한 간접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國有 내지 公有企業의 주식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식제를 주체로 하는 混合所有制를 크게 발전시키려 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은 유망한 中·大型 國有企業을 중심으로 公有·私有資本을 고도로 집중시켜 이들을 大企業이나 企業集團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과 업종, 소유제를 초월한 國際競爭力을 지닌 대기업들을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

22) 국제적 M&A 경험과 방법을 참고하고 중국 경제체제의 특징 및 기업의 구체 상황과 결부하여 2002년 3월 7일 원 외경부,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은 공동으로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인수 잠정규정”을 발표하여 외국기업의 중국 국내기업 인수에 명백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잠정규정”은 외국투자자가 국내의 비외국인 투자기업 주주의 지분권을 협의 매입하거나 국내 회사의 증가자본을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동 기업을 통해 국내기업의 자산을 협의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국투자자가 국내기업의 자산을 협의 매입하고 동 대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 자산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거의 모든 産業·業種에 대해 외국기업의 投資進出을 허용하여 내·외자기업간의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 시장경쟁 요소의 漸進的 導入과 擴散은 그 동안 中國經濟의 發展을 이끈 원동력 중의 하나이다. 다만 基幹産業이나 서비스산업 등 종래 外國人投資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부문은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이 부진했다. 그러나 WTO 가입으로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全面的 對外開放을 약속(양허)한 이상 중국은 外國企業을 유치해 본토기업과의 경쟁을 조장함으로써 國有企業이나 金融·流通·通信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대한 충격 내지 개혁촉진 효과를 기대하였다. 동시에 中國은 내·외자기업간의 연계강화를 통해 上流(技術開發)-中流(組立生産)-下流(마케팅)를 포괄하는 산업사슬의 발전, 成長主導産業과 相關산업간의 산업사슬 내지 산업클러스터 형성, 나아가 多國籍企業의 글로벌 네트워크로의 본토기업의 편입 등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넷째, 內·外資企業間的 차별대우 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WTO 會員國으로서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內國民待遇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中國은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종래 外國人投資企業의 불만사항이었던 부품현지화, 외환수지 균형, 생산계획 보고 의무요건을 폐지하였다. 또한 2002년 2월에 “外國人投資 方向指導 暫定規定”을 개정·발표하고, 2002년 4월에 새로운 “外國人投資産業 指導目錄”을 개정·발표해 외국인투자 장려분야를 186개에서 262개로 확대하고, 제한분야를 112개에서 75개로 축소하였다. 동시에 서비스산업의 개방계획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2004년 4월에 對外貿易法을 개정하고 2004년 7월에는 “投資體制 改革에 관한 決定”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地方政府의 許可權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中國政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稅制上의 優待措置를 철폐하고 내자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外國人投資企業의 조세감면 혜택은 조만간 다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표 II-2>는 지금까지의 중국의 外國人直接投資 導入關聯 주요 정책의 제정 변화 추이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表 II-2> 中國의 外國人直接投資 導入關聯 主要 政策의 變化 推移

년 월	주 요 내 용
1978. 12	경제개혁·개방정책 추진을 천명
1979. 7	선전, 주하이, 산도우, 샤먼 등 4개 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제정
1983. 9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세칙을 제정
1984. 4	연해 14개 도시를 개방 및 경제기술개발구 설치 인가
1985. 2	삼각주지역을 연해경제개발구로 지정
1986. 4	외자기업법(단독투자기업법) 제정
1988. 4	해남성을 경제특구로 추가지정 요동반도, 산둥반도를 경제개발구로 지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제정
1990. 4	상해 포동개발구 건설 결정
1990. 12	외자기업법실시세칙 제정
1991. 3	27개 도시에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지정
1992. 2	등소평의 ‘南巡講話’ 실시
1992. 7	상해, 대련, 천진, 광주, 심천 5개 도시 보세구 지정
1992. 8	장강연안의 5개 도시와 내륙지역 15개 省都 개방
1992. 10	제14기 공산당대회에서 사회주의식 시장경제체제를 채택
1993. 9	금광업 대외개방(운남, 귀주, 사천성)
1993. 10	외국 법률서비스 회사(22개) 영업 허가
1994. 3	1990년대 산업정책 요강 제정
1995. 6	외상투자방향지도잠정규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제정
1995. 9	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세칙을 제정
1996. 10	중서부지역 합자유통업 허용(중국측 대주주 조건)
1997. 12	외자기업의 기계설비 수입관세 면세조치 부활
1998. 1	외상투자방향지도잠정규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
2000. 10	단독투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개정
2001. 3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개정
2001. 11	중국의 WTO 가입
2002. 2	외상투자방향지도잠정규정 개정
2002. 3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
2004. 4	대외무역법 개정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2. 6); 성용모(2003), p. 32 참고 작성.

3. 中國의 外國人投資 誘致의 優待政策

가. 産業政策

중국은 外國人直接投資가 중국의 산업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맹목적인 투자현상을 회피하기 위해 1995년 6월에 “外商投資 方向指導 暫定規定” 및 “外商投資産業 指導目錄”을 제정하고 발표하였다. 중국정부는 1997년 말 국가경제발전에 알맞게 “外商投資産業 指導目錄”을 개정하였다. 2002년 2월에는 새로운 “外商投資 方向指導規定”을 발표하여 1995년의 잠정규정을 폐기하였다.

“外商投資 方向指導 規定”은 중국 정부의 외상투자산업정책을 구현했으며 외상투자항목을 장려, 허가, 제한, 금지 4종류로 나누었다. 장려, 제한 및 금지종류의 외상투자항목은 “外商投資産業 指導目錄”에 편입하였다. 그리고 장려, 제한 및 금지종류에 속하지 않는 외상투자항목은 허가종류의 외상투자항목이다. 허가종류의 외상투자항목은 “外商投資産業 指導目錄”에 편입하지 않았다.

“外商投資産業 指導目錄”과 “中西部地區 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은 외상투자항목 심사비준과 외상투자기업에 적용하는 정책근거이다. 개정후의 “外商投資産業 指導目錄”은 국가의 장려외상투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産業의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였으며, 産業構造調整에 적용하고 선진기술 도입에도 유리한 원칙이며 동시에 外國投資者의 중서부지구 투자를 장려하는 원칙을 충분히 구현하였다.

아래와 같은 상황은 장려종류의 외상투자항목에 속한다.²³⁾

- ① 농업신기술, 농업종합개발과 에너지, 교통, 중요한 원자재공업
- ② 하이테크 先進適用技術, 제품성능 개조 및 기업기술 경제효율을 제고하는 것 또 국내생산능력이 부족한 新設備, 新資材를 생산하는 것
- ③ 시장요구에 맞게 製品等級制, 新市場을 개척하거나 國際市場에서 경쟁을 강화하는 제품

23) 王治林(2004), 전개논문, pp. 8~10.

④ 신기술, 신설비, 에너지와 원자재를 절약하고 資源과 再生資源을 종합적으로 이용 및 環境汚染을 방지하는 것

⑤ 중서부지구의 人力 및 資源優勢를 발휘하고 국가산업정책에 맞는 산업

⑥ 法律, 行政法規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상황

아래와 같은 상황은 제한종류의 항목에 속한다.

① 技術이 낙후한 것

② 자원절약 및 生態環境에 불리한 것

③ 國家가 규정한 보호성 개발정책을 실시하는 특정 광산의 탐사 및 개발

④ 국가가 점차적으로 개방하는 산업

⑤ 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의 기타상황

아래와 같은 상황은 금지종류의 항목에 속한다.

① 國家安全 또는 社會公益에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것

② 환경오염, 자연자원 파괴 또는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업종

③ 농경지를 많이 차지하고 土地資源을 개발 보호하는데 불리한 것

④ 군사시설의 안전과 사용효능을 위협하는 것

⑤ 중국특유의 공예 또는 기술을 이용한 제품생산

⑥ 기타 국가의 법률과 행정규칙에 금지된 업종

장려류 외상투자 항목 중 投資額이 크고 투자회수시기가 긴 에너지, 교통, 도시 기초시설(석탄, 석유, 천연가스, 전력, 철도, 항만, 비행장, 도시도로, 오수처리, 쓰레기처리)의 建設 또는 經營에 참여할 경우 관련법률과 行政法規의 규정에 의한 우대를 누린 이외 그와 관련한 경영범위를 넓혀줄 수 있다.

許可類에 속하면서 제품이 전부 수출인 경우에 장려류 외상투자 항목도 보고 制限類 항목이지만 제품수출액이 판매총액의 70%를 차지하는 경우에 省, 自治區, 직할시, 계획독립시의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주관부처의 비준을 받아 허가류 항목으로 취급할 수 있다.

中西部地域의 우세를 확실히 발휘할 수 있는 허가류 및 제한류 외상투자 항목에

대하여 진입조건을 적당히 낮출 수 있고, 그 중 “中西部地區 外商投資優勢產業 目錄”에 편입된 경우 장려류 외상투자 항목의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나. 地域政策

中國의 對外開放은 연해로부터 내륙으로 점차적으로 추진되는 전반적인 전략을 취해 왔으며, 현재 經濟的인 特殊地域은 다음과 같다. 첫째, 經濟特區(심천, 주해, 하문, 산둥, 해남성 및 상해포동신구), 둘째, 沿海開放都市(상해, 천진, 대련, 진황도, 연태(위해 포함), 청도, 연운항, 남통, 영파, 온주, 복주, 광주, 점강, 북해 14개), 셋째,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49개), 넷째, 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53개)이다.

1999년부터 中國政府는 서부대개발 전략을 실시해 왔는데, 外商投資를 포함한 서부투자를 장려한다. 관련 외상투자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中西部地區 外商投資優勢產業 目錄”에 속한 항목은 장려류 외상투자항목의 정책에 적용한다. 둘째, 外國投資者가 서부지역의 기초시설과 優勢產業 項目을 투자하는 경우 外商投資의 지분 제한을 적당히 완화할 수 있다. 셋째, 外國投資者가 서부지역의 농업, 수리, 교통, 에너지, 도시시설, 환경보호, 광산, 관광 등 기초시설의 건설과 資源開發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그리고 西部地域의 외상투자의 技術研究開發센터 건립을 장려한다. 넷째, 西部地域의 서비스분야의 개방을 확대한다. 은행, 상업소매업체, 대외무역업체에 대한 外商投資의 시범을 직할시, 성 및 자치구의 首都所在 都市로 확대시킨다. 서부지역의 外資銀行이 점차적으로 人民幣業務 取扱을 허가해 준다. 외국투자자가 관련규정에 따라 서부지역에서 通信, 保險, 旅行業에 투자하는 것을 허가해 주고 중외합자회계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공정설계회사, 철도와 도로수송회사, 도시시설공공회사 및 기타 對外開放을 약속한 분야의 기업을 건립할 수 있다. 일부 분야의 개방은 西部地域에서 먼저 시범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다. 다섯째, 外商投資의 方式을 넓힌다. 外國投資者가 서부지역에서 BOT(운영 후 소유권 이전) 및

TOT(소유권 이전 후 운영) 프로젝트방식으로 시범하는 것을 허용한다. 條件이 있는 서부지역의 외상투자기업들이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상장하는 것을 지지한다. 西部地域の 國家獎勵 및 許可類에 속한 기업이 경영권 이양, 지분양도, 引受·合併 등 방식을 통해 외상투자를 이용하는 것을 지지한다. 中外合資產業基金, 벤처투자 기금 방식으로 外國投資를 유치하는 것을 적극 탐구한다. 여섯째, 이미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이 서부지역에서 再投資하는 것을 장려하며 재투자항목의 외자비중이 25% 초과할 때 外商投資企業의 대우를 받는다.²⁴⁾

다. 稅收優待政策

중국정부가 실시하는 外商投資企業 稅制特惠政策의 주요 조치는 특혜 소득세를 실시하고 企業所得稅를 감면하며 수입설비의 관세를 감면하고 수입부분의 附加價值稅를 면제한다. 외상투자기업 소득세율은 일반적으로는 33%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業種, 地域에서는 특혜세율을 실시한다.

그 중 15% 特惠稅率을 적용하는 것은, 經濟特區에서 설립한 외상투자기업, 포동신구에서 설립한 생산성 외상투자기업, 國家級經濟技術開發區에서 설립한 생산성 기업, 국가급신기술산업구에서 설립한 하이테크산업으로 인정받은 外商投資企業, 에너지, 교통, 항구, 부두 등 기반시설분야에 투자한 외상기업이며, 24%의 특혜세율 적용은, 沿海經濟開發區, 연해, 연강, 연변개발도시, 각 성 정부소재 도시에서 설립한 생산성기업, 經濟特區와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 소재도시의 옛 시구에 설립한 생산성기업이다.

다음 기업소득세 감면은,

- ① 運營期間이 10년 이상인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黑字가 발생한 년도부터 2년 감면, 3년 50%의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24) 상계논문, p. 10.

- ② 先進技術 外商投資企業은 2년 감면, 6년은 50%의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 ③ 수출형 외상투자기업은 상기 “2免 3減” 특혜²⁵⁾와 기업 당년 輸出額이 기업 총 판매액의 70% 이상일 경우, 지속적으로 企業所得稅를 50% 징수한다(단, 어쨌든 기업소득세율이 10% 이하로 되면 안된다).
- ④ 농업, 임업, 목축업에 종사하는 外商投資企業과 경제가 발전하지 않은 변경지역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은 5년 감면기간이 만료 후 國家稅務總局의 허가하에 그 후 10년에는 15%~30%로 企業所得稅를 징수한다.
- ⑤ 中西部地域에 설립한 국가가 장려하는 외상투자기업은 5년 減免稅 期間이 만료 후 3년 내에는 15%의 企業所得稅를 징수하고, 서부지역은 2010년까지 연장한다.
- ⑥ 재투자의 還給: 外商企業의 외국투자자가 해당 기업에서 취득한 이윤을 직접 해당기업에 재투자하여 자본금으로 再投資하거나 다른 외상투자기업에 투자하고 그 운영기간이 5년 이상일 때에는 管轄 稅務官署의 허가를 거쳐 재투자부분에 대해 이미 징수한 所得稅의 40%를 환급한다. 再投資로 제품수출기업을 할 경우 재투자부분 중 이미 징수된 소득세세액을 전부 환급한다.
- ⑦ 外國投資者가 외상투자기업에서 취득한 利潤은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 ⑧ 地方所得稅의 감면: 외상투자를 장려한 업종, 항목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감면할 때는 성, 자치구, 직할시 人民政府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輸入關稅 減免은 다음과 같다.

- ① 관세세율: 中國政府는 1992년부터 연속적으로 輸入關稅稅率을 내려 2005년 현재 평균관세율은 12%이다.
- ② 수입설비면세: 獎勵外商投資企業의 수입설비에 대해서는 ‘외상투자 항목면세를 하지 않은 수입상품목록’에 기재된 상품 외의 상품은 關稅와 수입부분의 附加價值稅를 면제한다.²⁶⁾

25) 이익발생 후 2년간은 세금을 면세, 3년간은 50%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특혜이다.

26) 王治林(2004), 전개논문, pp. 10~11.

4. 中國의 外國人投資 誘致의 政策方向²⁷⁾

中國은 앞으로도 對外開放의 기본국책을 계속 실행하여 더 많은 外國投資者들이 中國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줄 것이다. 外國人의 投資環境을 개선하고 새로운 國際競爭優位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다 광범위한 영역과 보다 높은 차원에서 外國人投資를 유치함으로써 國民經濟의 신속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外國人投資의 法的環境과 政策環境 積極 改善

향후 中國政府는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法的體系를 더욱 완비시키고 WTO 가입시의 이행약속과 對外開放의 새로운 형세의 요구에 따라 새 법규 제정을 가속화하고 법에 따른 업무진행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주로 外國人投資에 대한 지방법규 규정 및 관련 정책조치에 대한 정리를 강화하여, 이들이 國家의 法律·法規, WTO 규정 및 中國의 대외약속에 일치되도록 할 것이다. 현행 법률·법규를 정리·개정함과 동시에 外國人投資 誘致政策과 法律의 상대적인 안정성, 연속성, 예측가능성, 추진가능성을 유지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나. 市場開放 積極 推進

中國은 經濟發展의 需要와 WTO 가입시의 이행약속에 따라 市場開放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금융, 보험, 증권, 소매, 대외무역, 관광, 회계, 변호사, 의료, 교육, 운수, 화물운수 대행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분야는 이미 제한적인 시장개방을

27) 상계논문, pp. 12~14.

시작하였다. 앞으로는 서비스무역분야 市場開放과 관련되는 法律·法規를 더욱 완비시켜 건전하고 통일되며, 規範化된 공개적인 외국인 投資誘致制度를 수립하여 지방보호주의 등 현대서비스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외국서비스업의 先進知識과 경영관리 경험 및 기술·시장 운영방법 등을 적극 도입하여 中國의 서비스업 구조를 개선하고 중국 서비스업의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특히 현대 물류 배달, 체인경영에 대한 外國人投資를 장려할 것이다.

다. 公正하고 開放된 市場環境의 維持保護와 改善

WTO의 貿易關聯 知的財産權 措置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중국은 著作權法, 商標法, 特許法 등 국내의 법률·법규를 개정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 등 선진국과 광범위한 교류협력을 추진하였다.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시장경제 질서 정비사업과 결부하여 地方保護와 業種獨占을 타파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법 집행을 강화하여 權利侵害 複製行爲를 엄하게 단속하고, 일괄되고 개방되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市場環境을 조성할 것이다. 外國人投資企業의 提訴制度를 보다 완비시켜 외국기업의 합법적인 權益이 침해받지 않도록 法에 따라 보호할 것이다.

라. 外國投資方式에 따른 外國人 投資過程 擴大

國際的 引受·合併 經驗과 방법을 참고하고 중국 경제체제의 특징 및 기업의 구체적 상황과 결합하여 外國人投資와 관계되는 정책·규정을 조속히 제정 준비한다. 中國政府는 多國籍企業이 지분 구매, 자산 일괄매입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國有企業의 개편·개조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이 외에 다국적기업은 또 국유기업에

선진적인 技術과 管理經驗을 이전하여 국유기업의 개편·개조를 촉진하고 社會資源을 합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體制改革을 완료한 일부의 企業, 특히 대중형 국유기업을 선정하여 外國企業에 일부 지분권을 점진적으로 양도하도록 한다. 주식회사, BOT, 특허권양도 투자방식,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외 주식상장 등 각종 관련 규정의 제정과 완비를 강화하여 多國籍企業의 對中國 投資에 조건을 마련해 준다. 현재 각 관련 부서는 多國籍企業이 중국에 지역분부와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재무회사 설립, 외환관리, 수출권, 조세 등 정책에 대해 검토 중이다.

마. 外國人投資에 관한 產業指導 強化

中國 外國人投資誘致의 산업방향은 첨단기술산업, 부대산업에 대한 外國人投資를 장려하는 것이다. 中國의 外國人投資誘致는 큰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형 집적전기회로, 생물공학 등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外國人投資企業의 기술도입, 기술개발, 기술혁신을 장려한다. 外國人投資에 의한 資本集約型 事業과 더 많은 先進技術型 사업의 설립을 촉진하는 한편, 기업자본금 비율에 대한 제한, 공업재산권 출자조건 등에서의 정책유도를 강화한다. 벤처투자기업관련 규정을 더욱 완비시켜 과학기술 기업의 설립과 발전여건을 마련해 준다. 둘째, 勞動集約型의 가공제조업을 발전시켜 외국투자기업의 先進的인 技術, 設備를 이용하여 기계, 경공업, 섬유 등 전통산업을 개조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장려한다. 부대사업에 대한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해 여건을 마련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原資材 現地化를 장려한다. 국내 중소기업(향진기업 포함)의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선진적인 적용기술을 도입하여 외국인투자 대기업을 지원하고 多國籍企業의 글로벌생산과 판매망에 진입하도록 한다. 傳統農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現代農業을 육성하며, 外國人投資가 석유화학, 화학공업, 건축자재 등 기초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적극 유도한다. 에너지, 교통, 도시건설 등 기반시설분야에 대한

外國人投資을 장려하고 中西部地域의 외국인투자유치를 더욱 강화한다.

바. 政府機能의 轉換 加速화와 法治行政 水準 向上

중국은 지금 政府機能과 業務方式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근면하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政府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합리성, 효율성, 공개성, 책임성 등의 원칙에 따라 중국정부는 審査比準 節次를 보다 간소화하고, 계약서, 정관에 대한 심사비준을 간소화하며, 규범화되고 표준화된 審査比準制度를 적용할 것이다. 政府部處의 법 관념을 제고하여 공개·공정·투명성을 실현하며 임의성을 가급적 피하고 法에 따른 업무추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외국기업에 훌륭한 行政環境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第 2 節 中國의 投資制度

1992년 韓·中 修交 이후 韓國과 中國의 경제교류는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1996년까지 급증하던 對中國 投資는 1997년 말 外換危機를 계기로 급격히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시되던 ‘低賃金 活用の 輸出加工’으로서의 투자목적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內需指向 目的’의 대중국 투자가 더욱 큰 의의를 갖게 되었다.

中國 産業構造의 변화와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중국 투자 한국기업들은 內需市場의 確保를 위해 선진 외국기업은 물론 中國企業과도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韓國企業들은 경험과 情報의 부족, 試行錯誤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 및 중국 특유의 정책·법규·제도·문화 등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기에 中國의 광대한 영토와 經濟改革·開放으로 인한 법규 제정·집행상의 혼란과 실제 시행되는 제도와 관행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對

中國 投資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中國 投資關聯 制度를 숙지함과 동시에 그것이 실제로 시행되는 관행 역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外國人投資가 중국의 산업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맹목적인 投資現狀을 회피하기 위해 많은 제한적인 정책들을 공표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韓國企業들이 對 中國 投資 이전에 알아둬야 할 제도들과 중국 현지 경영단계의 관련제도 및 관행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投資 準備段階의 關聯制度

가. 投資誘致政策²⁸⁾

(1) 投資優待制度

1980년대 말 中國의 緊縮政策과 천안문사태 등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 다소 주춤하는 경향이 있던 外國人直接投資는 1991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鄧小平의 ‘南巡講話’ 이후 중국의 개혁과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投資는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對 中國 投資增加率이 감소세를 보이자 中國政府는 각종 외국인 우대조치를 취하여 외국투자 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크게 개선시켰다.

中國의 投資企業에 대한 우대정책은 주로 稅制 側面에서 우대, 수출시 증치세 면제,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관세 면제, 중국산 설비 구입시 증치세 전액 환급, 이익 발생년도부터 2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다음 3년간 50% 감면, 장려업종이나 을류 제한업종의 경우 설비 및 원자재 수입시 관세, 증치세 면제, 投資制限業種에 있어서

28) 김번옥·김혜진·김연하(2001. 11), 『중국 투자 제도 및 관행』, 한중교류센터 연구보고서 2001-01, 인천발전연구원 한중교류센터, pp. 13~16.

70% 이상 수출시 투자 우선 허가, 내륙지역 투자시 전국 평균 대출수준보다 높은 대출권 부여 등이다.

이와 더불어 中國은 外國人投資企業이 외환수지 균형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外貨를 은행을 통해 조달 가능케 하였고, 外國人投資企業이 필요로 하는 설비, 원자재 등을 중국 내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했던 것을 中國國內·國際市場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外國人投資企業은 생산제품의 대부분을 반드시 輸出해야 한다는 조항을 輸出을 獎勵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外國人投資企業 설립신청서에 내수 및 수출비율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 조항과 반드시 주관부서에 生産經營 計劃을 보고·등록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한편 경영기간 내에 登錄資本金을 감소할 수 없다는 조항을 許可機關의 승인을 받으면 자본금 감소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外國人投資企業의 각종 보험은 中國保險會社를 통해야만 했던 것을 中國保險會社가 아닌 외국 보험회사 가입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국가지정 소수기업에 한정되어 있던 對外貿易權에 대해 등기심사제를 실시하여 일정액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보유한 企業에 대해서는 대외 무역권을 개방하였다.

(2) 投資規制制度

對中國 投資企業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中國에서 이미 개발했거나 技術導入을 통해 生産能力이 이미 중국 내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事業과 投資誘致를 위한 시험사업이나 국가에서 전매하거나 기획·개발하는 사업은 제한하였고, 國家의 安全이나 社會公益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건강을 손상시킬 수 있거나, 대량의 경작지를 훼손하여 土地資源 保護에 영향을 끼치며, 그 부대시설의 사용에 위협을 미치거나, 중국고유의 生産方法과 技術을 이용하는 특산품은 금지하였다.

그리고 對外送金이나 資金借入에 대해서는 경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海外送金은 외환당국의 허가없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口座開設 銀行을 통해 송금 가능하다. 하지만 外國側 投資者의 과실이나 외화납입자본금의 이전과 資本金과 利潤으로 분배받은 상품의 반출, 해산 또는 청산에 따른 外貨資金의 반출 등 資本去來는 외환당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稅金을 공제한 후 利益金에 대해서 현지 去來銀行에서 송금할 수 있으나 본국으로의 투자과실 송금이 지나치게 많은 企業에 대해서는 中國 稅務當局이 집중 감시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外國從業員의 賃金은 정당한 수익 중 중국 내에서 지출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임금명세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企業의 外貨預金口座를 통해 송금 가능하지만, 賃金の 50%를 초과하여 송금할 수 없고, 만약 50%를 초과하여 송금할 때는 소재지 외환관리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本國이나 제3국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하는 경우 1998년 하반기부터 不法 外資導入에 의한 채무부담 가중 등에 따라 外換 및 外債管理가 엄격히 실시되고 있고, 모든 海外借入의 경우 인민은행 외환관리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長期外債는 투자용도에 한하여 투자규모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中國은 外國人의 直接投資가 중국의 산업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맹목적인 투자현상을 막기 위해 1995년 6월 “外商投資 方向指導 暫定規程” 및 “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을 제정 공포하였다. 產業의 대부분이 장려나 허가업종이지만 生産能力이 이미 중국 내 市場의 需要를 만족시키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外國人投資를 제한하고 있다. 이 規定과 目錄은 두 차례 개정²⁹⁾되었고, 2002년 4월 1일 규정과 목록은 기존의 허가항목이 없어지고 獎勵와 制限, 禁止 등 3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3) WTO 加入 후 投資誘致政策의 變化

29) 1997년 12월 29일, 2002년 3월 11일.

中國은 WTO에 가입한 후 지주회사가 系列企業에서 제조한 제품을 구입한 후에 국내외로 판매하는 것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였다. 그리고 貿易權에 관해서 2001년 5월 對外貿易經濟合作部는 등록자본금 3,000만 달러 이상 등의 조건하에 이른바 지주회사가 系列企業에서 제조한 제품에 관련되는 상품이나 신제품테스트 판매를 위한 割當許可證의 대상이 아닌 상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또 더욱이 지주회사가 系列企業이 제조한 제품을 구입한 후에 국내외로 판매하는 것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였다.

또한 “輸出入經營資格管理規程”³⁰⁾을 발표하여 자본금 500만 위엔 이상의 企業에 대해 무역권한을 부여하였고, 貿易權限을 부여받은 企業은 자사가 생산한 제품, 원부자재·기계설비 수출입 업무와 기타 제품의 수출입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外商投資企業 輸出入 經營權의 擴大에 관한 通知”에서 外國人投資 生産型企業의 연간 수출액이 1,000만 달러 이상 등의 조건하에서 할당허가증의 대상이 아닌 상품이나 자사제품 이외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外國人投資 生産型企業의 연간 수출액이 1,000만 달러 이상 등의 조건하에서 할당허가증의 대상이 아닌 상품이나 자사제품 이외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輸出實績 要件이 남아 있다는 것은 WTO 가입시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시정이 필요하고, 貿易權의 自由化는 中國의 무역자유화를 위해 특히 중요한 사항이며, 中國의 制度·運用의 개정을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投資進出地域의 選定

進出地域의 적절한 선정은 투자사업의 장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中國

30) 2001년 7월 시행.

은 지역마다 所得水準과 商品需要, 事業與件이 다르고 같은 지역이라도 개발구,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종류에 따라 投資環境에 차이가 많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投資進出地域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은 인건비, 원·부자재 수송비, 상품 물류비용, 준조세, 토지사용료, 소재지 지방정부의 지원과 협조, 본국과의 거리 등 많은 요인이 있다. 企業의 業種, 원·부자재의 현지조달 비중, 내수판매 비중, 물류·수송비 비중 등에 따라 각 費用의 비중이 달라지므로 進出豫定地域의 사회간접자본, 임금수준, 준조세, 토지사용료 수준 등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³¹⁾

국내지역간 投資誘致 競爭은 매우 치열하여 중앙에서는 지방으로, 지방에서는 부서로, 부서에서는 각 개인에게로 매년 계획한 投資誘致 割當量을 하달하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우대 이상의 것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進出業體는 법적문서나 規定集을 제공해 주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으며, 상담시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經濟特區를 비롯한 경제개발기술구, 고신기술산업개발구, 보세구에 대한 투자유치제도와 中西部地域의 開發政策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³²⁾

(1) 經濟特區

中國은 개방 초창기인 1979년~1981년 동안에 심천, 주해, 산둥, 하문에 설립된 수출가공단지를 經濟特區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1988년 해남도가 추가되어 2005년 현재 총 5개의 지역이 經濟特區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지역은 일반 外國人投資企業의 기업소득세는 30%이며, 그 외 납세할 所得額의 3%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하는데 반해 企業所得稅를 15%로 감면해 주고, 中國境內에 기구를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그 소득원이 經濟特區인 소득은 소득세를 10%로 감면해 주고 있다.

3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 12), 『중국투자 신전략: 투자리스크 관리·권역별 진출환경』, p. 29.

32) 김익수(2005), 『중국투자론: 이론과 실제』, 박영사, pp. 46~59.

또한 외국투자 서비스업의 投資額이 500만 달러 이상이며 운영기간이 10년 이상 일 때는 허가를 거쳐 黑자가 발생한 첫해는 企業所得稅를 면제하고 향후 2년간 企業所得稅를 50%로 감면해 주고 있으며, 경제특구 내의 企業이 생산한 제품을 당해 특구 내에서 판매할 경우 소비세납세대상물품의 消費稅는 징수하되 附加價值稅는 면제해 주고 있으며, 경제특구 내의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輸出할 때 수출제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輸出關稅를 면제해 주고 있다.

(2) 經濟技術開發區

中國이 經濟技術開發區로 정한 지역은 대련, 진황도, 천진, 연대, 청도, 연운항, 남통, 상해 민항, 홍교, 조하경, 영파, 복주, 광주, 담강, 하얼빈, 장춘, 심양, 영구, 위해, 곤산, 항주, 숙산, 온주, 복청, 용교, 동산, 해주 대아만, 광주 남사, 무호, 무한, 중경의 32개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企業所得稅를 24%로 감면해 주고, 生産性 外國人投資企業, 技術·知識集約型 業種, 투자액 3천만 달러 이상, 투자회수 기간이 긴 경우와 에너지, 교통, 항구 건설 및 기타 장려항목에 속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를 15%로 감면해 주고 있고, 中國境內에 기구를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그 소득원이 經濟技術開發區인 所得은 소득세를 經濟特區와 같이 10%로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경제기술개발구 내 기업이 生産한 제품을 輸出할 때 수출제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輸出關稅 또한 經濟特區와 같이 면제해 주고 있고, 中國產 部品 또는 半製品를 사용해 개발구 내에서 실질적인 가공을 거쳐 증가된 附加價值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구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간주하여 관련 주관부서의 증명을 거쳐 輸出關稅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리고 輸出品 生産을 위해 소모되는 부품, 원자재, 포장재료 등은 輸入關稅와 附加價值稅도 면제해 주고 있으며, 1992년 이후 비준 설립된 곤산, 용교, 위해, 영구, 동산의 5개 경제기술개발구는 生産性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해 소득세를 15%로 감면하는 외의 기타 특혜정책을 폐지하였다.

(3) 高新技術開發區³³⁾

中國의 高新技術開發區는 일종의 ‘하이테크 파크’인데, 이 하이테크 파크는 중국 정부가 장려하는 우주·항공, 컴퓨터, 반도체, 통신·정보, 정밀전자, 신소재, 생명공학, 레이저 등 8대 부문에 종사할 外國人投資企業을 집중 유치할 목적으로 성, 직할시, 1급 시급 지방정부가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지역이다. 1991년에 공식 인가한 하이테크개발구는 중국 전역에 27개에 불과했는데, 2004년 말 현재 약 53개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高新技術企業으로 인정된 企業의 기업소득세를 15%로 감면해 주고, 운영기간이 10년 이상인 高新技術企業의 흑자 발생 첫해 및 두번째 해는 기업소득세 면제, 향후 3년간 기업소득세를 50%로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高新技術企業이 수출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한 부품, 원자재는 輸入關稅와 附加價值稅를 면제해 주고 있고, 稅關의 허가를 거쳐 高新技術產業開發區 내에 보세창고와 보세공장을 설립할 수 있으며, 실제 가공 수출한 수량에 따라 輸入關稅와 附加價值稅를 면제해 주고, 고신기술산업개발구 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 수출제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輸出關稅를 면제해 주고 있다.

(4) 保稅區

中國이 保稅區로 정한 지역은 상해 외고교, 천진항, 심천 복전, 심천 사두각, 대련항, 광주 장가항, 해남성 해구, 하문, 영파, 청도, 복주, 마모, 산두, 심천 염전항, 주해 등 15개 지역이다.

보세구 내에서 輸出加工에 종사하는 生産性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해서는 기업소

33) 고기술(High-Tech), 신기술(New-Tech) 등 첨단산업분야의 외국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선진기술을 도입·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혹은 각급 지방정부가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일종의 첨단산업단지이다. 상계서, p. 49.

특세를 15%로 감면해 주고, 보세구 기초시설 건설용으로 수입하는 기계, 설비와 기타 건설물자는 輸入關稅, 附加價値稅와 보세구 내 기업이 자가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건축자재, 生産과 管理設備 및 부품, 원자재는 輸入關稅와 附加價値稅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리고 보세구 내 기업이 輸出製品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輸入하는 부품, 원자재, 포장재료 등은 보세 처리되고 있으며, 免稅로 보세구에 반입된 화물을 중국 내 기타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규정에 따라 輸入關稅와 附加價値稅를 징수하고 있다. 그리고 보세구 내 기업이 生産·加工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³⁴⁾

(5) 中西部地域

1999년 11월 中國 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 ‘西部大開發 戰略’을 2000년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중서부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계획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2000년 3월 全人代에서 西部大開發의 핵심으로 사회간접자본 건설, 환경보전, 산업구조조정, 과학기술과 교육의 발전, 경제개혁·개방의 강화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34) 김번욱·김혜진·김연하(2001. 11), 전계서, pp. 38~39.

中西部地域 開發戰略은 첫째, 중서부지역 경제발전을 통해 國內景氣를 부양함으로써 中國經濟의 成長鈍化 局面을 타개하고, 둘째, 날로 확대되고 있는 地域間 所得隔差를 해소함으로써 중서부 지방정부와 주민의 불만 고조로 인한 社會不安定 要因을 해소함으로써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셋째, WTO 가입과 그에 따른 農業市場의 開放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표 II-3> 참조).³⁵⁾

<表 II-3> 中西部地域 開發戰略 主要 內容

분 야	주 요 내 용
기반시설 확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20년간 1,200억 위엔 투입, 중서부지역에 8개 도로 건설 - 2001년~2005년 중 1천억 위엔 투입, 철도시설 확충 - 1천억 위엔을 투입, 서기동송(신강 타림분지~상해간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사업 추진 - 중서부지역 50개 공항의 개보수 및 확장
산업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맹목적 자원개발 지양 -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발전전략 추진
생태환경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10년간 2천억 위엔 투입, 경작지 산림화사업 추진
자금조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조건 완화 및 세금 우대(동부 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중서부지역 투자시 소득세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이후 3년간 15% 감면) - 중서부지역 투자 확대(향후 10년간 매년 7~8천억 위엔을 중서부지역에 투입, 연간 해외차입액의 70% 이상을 투자) - 정책은행, 중서부지역 대출규모 확대(총대출액의 60% 이상 중서부개발에 투자) - 중서부지역 도시인프라 건설을 위한 복권발행 허용 - 지방기업 채권발행 규모 확대 - 산업투자자금 설립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0), p. 30.

35)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0),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p. 27.

다. 投資方式 및 파트너 選定

(1) 投資方式³⁶⁾

가) 合資投資

1979년 7월 1일 공포되어 1990년 4월 개정된 “中華人民共和國 中外合資經營企業法”과 1988년 9월 20일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 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에 근거하고 있는 投資方式으로 1979년 10월 中國의 第1號 外國人投資가 허가된 이래 가장 대표적인 중국투자방식이다.

外國投資者와 中國投資 파트너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동으로 投資리스크를 분담하는 유한책임회사이다. 外國投資者와 中國投資 파트너가 현금, 현물, 지적재산권, 공업기술, 토지사용권 등을 각각 출자하여 그 출자액에 따라 지분을 배분한다. 外國投資者와 中國投資 파트너가 공동으로 董事會(이사회)를 구성하고, 동사회의 결정을 總經理(사장)가 집행하고, 회사채무 부담책임은 회사 자산총액 이내로 하고, 投資者들의 會社債務에 대한 책임은 출자액 이내로 하며, 투자자 상호간의 연대책임 의무가 없다.

나) 合作投資

1998년 4월 13일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 中外合作經營企業法” 규정 및 1995년 8월 7일 국무원의 비준을 득한 “中華人民共和國 合作經營企業法實施細則”에 의하여 中外合作企業을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韓國의 投資者들에게는 낯선 투자방식이다.

3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 3), 『중국 투자 실무 가이드(증보판)』, pp. 21~35.

外國投資者와 中國投資 파트너가 공동투자를 하지만 투자자 각자의 權利와 義務가 출자금액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投資者들의 계약에 의해 배분된다. 貨幣價值評價에 의한 지분배분방식과 화폐가치평가를 하지 않은 약정 배분방식에 의한 利潤分配가 모두 가능해서 投資者는 현금, 노동력, 토지, 천연자원, 건물, 설비, 기술 중 가용한 投資資源을 활용하여 출자할 수 있다.

合作投資는 투자사업의 특성과 投資者들의 사정에 따라 투자자의 權利와 義務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契約內容의 정형성이 부족하여 중국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韓國企業의 投資者들로서는 자칫 불리한 投資契約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外國投資者와 中國投資 파트너 쌍방의 출자에 따른 분배와 쌍방이 계약한 별도의 약정방식에 의한 利潤分配가 모두 가능하다. 즉 利益金을 분배하거나 생산제품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업수입 자체를 분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會社法人 形態나 법인격을 구비하지 않은 聯合經營體 形態가 모두 가능하고 동사회 구성여부도 자유로우며, 연합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企業을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도 있다. 外國投資자는 中國投資 파트너와의 계약에 따라 투자기간 내 投資資本의 조기회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투자기간 만료시 合作企業의 모든 자산은 中國 쪽에 귀속, 별도의 清算節次를 거치지 않는다.

다) 獨資投資

1986년 4월 12일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 外資企業法”과 1990년 12월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 外資企業法實施細則”에 근거하여 外國人投資자가 100% 單獨投資하여 중국 내에 外國人投資企業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中國의 獨資投資企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單獨投資企業과 큰 차이가 없지만 업종이나 기타 방면에서 합자·합작보다 제한이 많다. 그리고 獨資投資企業인 경우에 중국에서는 이를 ‘外資企業’과 ‘獨資企業’, ‘外國企業’이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投資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表 II-4> 投資方式別 長短點 比較(三資企業의 差異點 比較)

구 분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독자기업
근거법	합자법과 실시조례	합작법과 실시세칙	외자법과 실시세칙
기업형태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 연합경영체	유한책임회사
투자업종 제한 범위	제한범위 작음	제한범위 작음	제한범위 큼
기업부채 책임 범위	지분율 비례 출자액 한도	·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액 한도 · 연합경영체는 공동책임	출자액 한도
이윤분배 기준	지분율	계약내용	독점
법인세 기준	삼자기업 공통	삼자기업 공통	삼자기업 공통
최고 의사결정 조직	동사회(이사회)	· 동사회 · 연합관리위원회 · 경영관리수탁자	투자자 임의
경영관리 방식	투자자 공동경영	· 투자자 공동경영 · 투자자 일방경영 · 제3자 위탁경영	투자자 독자경영
토지사용권 획득방식	· 중국측 투자자 출자 · 합자기업의 명의로 토지사용권 유상 양 수 혹은 임차	· 중국측 투자자 출자 · 합작기업 명의로 토 지사용권 유상 양수 혹은 임차	· 외자기업 명의로 토 지사용권 유상 양수 · 중국정부측 외자기업 의 토지임차 사용제한
출자자원	현금과 현물 및 지적 재산권 가능	현금과 현물 및 지적 재산권 가능. 또 용역 출자도 가능	국제적으로 태환이 가 능한 외화현금이나 현 물과 지적재산권 출자 가능. 단 토지출자 불가
출자평가	모든 출자분은 반드시 화폐가치로 환산평가	계약내용	모든 출자분은 반드시 화폐가치로 환산평가
지분율 의무	등록자본금의 25% 이상	등록자본금의 25% 이상	등록자본금의 100%

<계속>

구 분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독자기업
출자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불입 : 6개월이내 규정 · 분할 불입 : 규모별 불입기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불입분 : 출자액의 15% 이상을 영업허가증 발급 90일 이내 불입 - 등록자본 50만 달러 이하 · 영업허가증 발급 후 1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만~100만 달러 : 1년반 이내 - 100만~300만 달러: 2년 이내 - 300만~천만 달러 : 3년 이내 - 천만 달러 이상 : 인가기관이 실정에 따라 별도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내용에 따라 분할 불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불입분 : 출자액의 15% 이상을 영업허가증 발급 90일 이내 불입 - 등록자본 50만 달러 이하 · 영업허가증 발급 후 1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만~100만 달러 : 1년반 이내 - 100만~300만 달러: 2년 이내 - 300만~천만 달러 : 3년 이내 - 천만 달러 이상 : 인가기관이 실정에 따라 별도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불입 가능 : 규모별 불입기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불입분 : 출자액의 15% 이상을 영업허가증 발급 90일 이내 불입 - 등록자본 50만 달러 이하 · 영업허가증 발급 후 1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만~100만 달러 : 1년반 이내 - 100만~300만 달러: 2년 이내 - 300만~천만 달러 : 3년 이내 - 천만 달러 이상 : 인가기관이 실정에 따라 별도 처리
투자자본 회수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 순이윤 배분 · 청산이윤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 총이윤배분 · 당기판매수입배분 · 당기 생산품 배분 · 당기 감가상각비 · 약정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 순이윤 · 청산 이윤
자본 감자	불가 명문화	미규정	불가 명문화
청산자산 처리	청산후 잉여자산 지분을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내용에 따라 배분 · 중국투자자가 투자기간 중 외국투자자 투자자본을 조기에 상환하고 투자기간 만료시는 자산 전부가 중국투자자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 	청산 후 잉여자산 독점 소유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 3), pp. 33~35.

독자투자는 外國投資者의 외자로 설립되어야 하며, 中國에서 은행대출을 받아 설립하는 경우 은행대출은 外國投資者의 信用으로 획득한 대출금이어야 한다. 독자적 경영관리조직을 갖추며, 손익과 투자리스크 모두 단독으로 부담한다(<표 II-4> 참조).

(2) 파트너 選定

中國의 기업이나 지방정부는 투자하려는 外國企業에게 投資를 요청할 경우 자기들의 능력을 과장되게 선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合資·合作의 필요성보다는 단순한 投資誘致에 목적을 두고 요구사항을 다 처리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中國은 각 지방에서 豫算을 위해 자료를 부풀리거나 하여 부정확한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中國側에서 제시하는 자료들을 세심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國有企業을 파트너로 선정할 경우에는 國有企業이 준공사인지, 총공사 밑의 분공사(國有企業의 系列社)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분공사일 경우 총공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中國은 企業形態別로 國有企業, 集體企業, 鄉鎮企業, 私營企業 등이 있는데, 인맥이 있는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영향력의 행사가 가능한지 등의 파악도 중요하다.

合資·合作企業 運營에서 중국기업이 國有企業인 경우 협력파트너는 당해 企業 이외에 현지 지방정부 등 복수로 이루어진다. 파트너가 복수일 때는 製品生産性이 처음 예상과 다르거나 제품판매 부진 등 企業運營에 차질이 생겨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책임이 中國企業에 있을 경우 문제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허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책임이 中國企業에 있어 문제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中國企業은 地方政府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지만 지방정부는 작업장과 관련된 문제이므

로 企業과 협의해 해결하라고 한다. 즉 골치 아픈 문제는 企業과 地方政府가 서로 떠맡기기 식이 되거나, 中國企業과 地方政府가 합심하여 문제가 외국기업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대부분 投資에 성공한 기업들은 中國側 파트너와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中國側 파트너는 각종 認許可, 通關節次 등에 관한 법규와 관행에 익숙하고 현지 사정에 밝아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을 피해가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외국측의 서투름을 악용, 中國과 外國과의 內外價格差, 중국 내의 二重 및 多重價格制, 불투명한 비용 징수, 뇌물 등으로 이용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2. 中國 現地 經營段階의 關聯制度 및 關聯慣行

中國은 정부가 제정한 경영에 관한 관련 제도들이 있지만, 보통 관행에 의해 경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制度和 慣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組織 및 勞務管理³⁷⁾

(1) 職員의 採用

가) 關聯制度

外國人投資企業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職員의 採用과 解雇, 전문기술인원, 경영관리인원의 초빙과 해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理事會가 채용규모, 인원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린 다음, 채용·선발 계획을 세워 지방정부 노동·인사관련

37) 김익수(2005), 전계서, pp. 393~434.

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직원은 企業이 공개모집 하거나 中國側 파트너가 추천하는 인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만약 企業의 소재지에서 企業이 필요로 하는 직원을 채용할 수 없을 경우 소재지 이외의 行政區域에 있는 企業體 등에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

그리고 外國人投資企業이 中國의 다른 企業이나 단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려 할 때 유관부문과 단위는 해당직원의 이동을 방해할 수 없으며,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해 직원이동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合資·合作企業 설립시 해당기업은 中國側 파트너인 企業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 중 필요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 中國側 파트너인 企業이 外國人投資企業 설립 후 해산되는 때 外國人投資企業은 中國企業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전원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필요한 인원만 선발할 수 있다.

나) 關聯慣行

中國은 풍부한 노동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현지 기술자 및 관리자의 확보가 어렵다. 이러한 人力難은 주로 中國의 낮은 교육수준, 전문가 양성시스템 부족, 물적 인센티브의 취약 등 때문이다. 직원고용시 서비스센터에 의뢰하면 일인당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내야 하며, 中國側 파트너의 소개에 의하면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보통수준의 勞動者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他地域 人力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地方政府가 管轄 行政區域의 인력을 먼저 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地方政府의 간부들이 보통 자신들의 자제나 친척·친구, 지방정부 퇴임관료 등 특정인사를 채용해 주도록 청탁하거나, 기존 中國側 파트너 企業의 인원을 흡수 채용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中國은 戶口, 當案 등 거주이전 제한제도의 운영을 통해 外地人의 採用을 제한해 왔으나, 최근에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로 石家庄市는 2001년 8월부터 일정조건을 갖춘 外地人에게 戶口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북경도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우수졸업생이 남을 수 있도록 戶口制度를 완화하고 있으며, 情報技術產業이 집중돼 있는 중관

촌에 優秀人力이 자유롭게 거주·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더 나아가 향후 5년 내 戶口制度를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 中國의 戶口制度는 都市에서 農村으로 나가는 쉬우나 반대의 경우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요즘은 戶口 때문에 타지역 노동자들을 쓰기 불편한 점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

(2) 職員의 解雇

가) 關聯制度

外國人投資企業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有關법률과 노동계약에 의거, 노동계약기간 중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有關法律과 勞動契約에 위반되지 않는 한 中國政府는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 그리고 外國人投資企業은 직원을 해고할 때는 반드시 1개월 전에 公會와 해당직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기업주관부문과 소재지 노동인사부문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내 해고되는 職員이나 契約期間이 만료되어 勞動契約를 갱신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 企業은 그 근무기간이 10년 이내인 때는 매 1년마다 그 企業의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10년 이상인 때에는 11년째부터 기산하여 매 1년마다 1.5개월분의 평균임금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有關法律과 勞動契約에 따라 직원을 해고했을 때 해고당한 職員이 다른 企業이나 단위로부터 선발된 자일 경우 원소속 기업이나 단위에서 그를 다시 채용해야 한다. 그 이외에 外國人投資企業이 고용한 직원일 경우, 그 職員은 고용 전 소재지의 노동복무공사나 인원교류복무기구에 취업대기 등록을 해야 한다. 外國人投資企業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가 生産性 向上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거나 중대한 罪나 過誤를 범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經營者는 勤勞者에게 해당 행위·태도의 시정에 여러 차례 주의를 주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勤勞者, 公會代表, 企業代表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근

무기율 위반 근로자에 관한 해고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는 地方政府 勞動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關聯慣行

中國側에서 파견된 인원이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外國人投資企業이 교체하려 해도 中國側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해고를 반대하는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韓國의 外國人投資企業은 외자기업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정규직이어야 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나 1년 등의 임시직으로 상당수의 職員을 採用하는 경우가 많다.

中國側과 合資·合作時 기존 중국기업의 인력고용 압력을 받기도 하며, 이러한 과다인력을 어떻게 정리·활용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中國 國有企業은 外國人投資企業의 생산성 향상보다 雇用減少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며, 國有企業과의 合資·合作에는 과다 인력고용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일정한 技術을 습득한 熟練勞動者들은 인근에 새롭게 진출한 외국의 동종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外國人投資企業이 밀집한 연해지역이나 개발구 등지의 離職率이 높은 편이다.

특히 조선족 근로자의 경우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가 증가함에 따라 취직이 쉽고 한족 근로자보다 금전보상 심리가 강해 移職率이 높은 경향이 있다. 勤務期間이 2~3개월된 근로자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韓國企業이 日本과 美國企業에 비해 이직률이 높은 편이며, 늦게 中國市場에 진입하는 韓國企業이 기진출 한국기업으로부터 숙련인력을 스카우트해 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³⁸⁾

(3) 勤勞條件 및 賃金

38) 대한상공회의소(1998), 『사례분석에 기초한 대중 투자경영전략』, p. 349.

가) 關聯制度

外國人投資企業은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정규직이어야 한다. 賃金水準은 해당지역 동일업종 國有企業 賃金の 120~150% 수준에서 결정되며, 임금구조, 장려금, 수당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延長勤務手當으로 평일은 정상 근무시간 시간당 급여의 150% 이상, 휴일이나 보충휴가일에는 200% 이상, 法定公休日과 正規休日에는 300% 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제로 1일 1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못하나 특별한 사유로 연장근무하는 경우 1일 3시간, 월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休暇로는 연 20일 귀향휴가, 1~3일 경조 특별휴가, 최소 90일의 출산휴가 등이 있다.

나) 關聯慣行

外國企業은 中國企業보다 20~50%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각종 國家補助金 및 社會福利費로 임금의 약 4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賃金水準이 가장 높은 상해의 1999년 기준 한달 平均賃金은 1,303위엔으로,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하남성의 451위엔의 3배에 달한다. 또한 관리직과 IT업종 임금은 최근 대폭 상승해 一般 勞働者 賃金の 4~8배에 이르는 등 地域別·業種別 賃金隔差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北京의 最低賃金이 월 545위엔에서 580위엔으로 6% 가량 인상되었고, 상해도 635위엔에서 690위엔으로 조정했다. 최저임금이 상향조정되면 企業體들이 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社會保險料와 住宅積立金도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6.8위엔에서 7.3위엔으로 인상되었고, 법정공휴일의 최저급여는 시간당 15.5위엔에서 16.5위엔으로 상향 조정되었다.³⁹⁾

賃金에 대한 中國政府는 노동집약형 수출업종에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高賃金을 기반으로 內需市場을 지향하는 기술집약형 업종에 대해서는 국유부문의 인력유출과 임금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과도한 賃金引上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⁴⁰⁾ 그리

39) 매일경제신문, “중국 최저임금 잇따라 인상”, 2005년 7월 2일자.

40) 김원배·권영섭(1998), 『한·중 경제협력 전망과 연안지역 개발방향』, 국토개발연구원,

고 관련규정이 강제인지 권장인지 불명확하여 집행도 企業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일관성이 없다.

일반적으로 外國人投資企業은 FESCO(Foreign Employment Service Corporation)⁴¹⁾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면서 中國企業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FESCO에서 소개하는 인원은 상당수가 國有企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많아 확실한 실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물론 職業博覽會나 中國大學을 통해 유능한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1995년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고 延長勤務가 월 36시간으로 제한되어 輸入業者의 주문에 변동이 많은 企業은 정상적인 經營을 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고,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企業은 雇用人力의 증가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그리고 都市에서는 퇴근 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으며, 副業을 통해 얻는 所得이 직장을 다니며 얻는 소득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現地人은 현지에 가족이 있으므로 ‘돈도 좋지만, 가정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外地人은 고향을 떠나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잔업이 과하지 않으면, ‘특별한 연고가 없으므로 토·일요일에 별다른 계획이 없는 한 돈이나 벌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잔업에 대한 생각 자체도 많이 다르다. 延長勤務가 제한됨에 따라 주문이 늘어나 선적기일을 맞추기 위해 韓國 投資企業들은 합리적인 생산계획을 위한 노사합의 보다는 관할 노동국의 협조를 구하는데 더 급급한 실정이다.⁴²⁾

(4) 公會關聯

公會란 企業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으로 外國人投資

p. 198.

41) 중국 국영 직업소개소인 외국기업 서비스공사.

42) 대한상공회의소(1998),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경영실태와 애로요인』, p. 92.

企業에 있어 경영관리기구가 資本出資者의 代表機構라면, 공회는 그 企業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기구이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조합과는 그 성격과 역할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公會法(노동조합법)에 의거하여 모든 企業에게 공회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中國政府는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해 공회설립을 촉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企業의 동사회 또는 최고권력기구가 企業의 發展計劃이나 생산경영활동 및 勤勞者의 임금제도, 상벌제도, 생활복지 등의 사항을 결정할 때 公會의 대표는 그 자리에 참석해 勤勞者들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있으며, 企業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 企業이 근로자를 解雇할 때는 반드시 공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회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企業의 代表는 공회의 대표와 협의해 해당 勤勞者의 解雇를 결정한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공회는 소재지 정부 노동관리부문에 仲裁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결과에 불복하는 쪽은 人民法院에 제소될 수 있다. 하지만 中國公會는 團結權과 團體交涉權만 있고 團體行動權(罷業 등)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2001년 9월 수정된 公會法은 기업 내 근로자가 25명을 초과할 경우 公會設立을 의무화했고, 25명 이하인 경우도 公會設立이 가능하며, 타기업과 연합해 하나의 공회를 만들 수도 있다. 該當企業이 공회를 설립하지 않을 경우 상급공회가 설립을 유도하며, 이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外國人投資企業이 공회를 조직하려면 上級公會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공회는 상급공회의 監督을 받으며 당해공회의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外國人投資企業은 매월 기업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賃金總額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회경비로 지원해야 하며, 공회활동에 필요한 事務室이나 設備를 제공해 공회의 각종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韓國의 경우 극심한 勞使紛糾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지에서의 公會의 존재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현상을 보이고 가능한 공회를 설립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中國政府는 공회를 이용해 勞務管理에 간섭하기도 한다. 즉 기업에 노동조합을 조

직하도록 요구하거나 노조위원장을 中國政府에서 파견 또는 선임하기도 한다. 실제로 外國人投資企業의 공회는 대부분 전문성이 미흡해 주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賃金交渉도 고용자측에서 賃金水準을 결정하고 이를 공회측에 통보하면 공회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公會는 단지 僱用者와 勞動者의 중간다리 역할 정도의 수준이며, 合資·合作企業의 경우 中國側 파트너가 어느 정도 통로역할을 해줄 수는 있지만, 獨資投資가 많은 韓國企業의 경우 공회가 없으면 곧바로 소재지 노동관련기관이 勞使問題에 개입해 문제가 확대되는 일도 많다. 이를 위해서는 韓國의 勞動慣習과는 다른 사회주의 노동관습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본사의 원칙을 현지에 적용하지 않고 現地 管理者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原材料 購入과 通關

(1) 原資材 購入

原資材 購入方法은 중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법과 타지에서 구매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먼저 中國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법에는 計劃 分配物資를 구매해야 하는 企業은 물자공급 신청계획서를 만들어 企業主管部門에 신청하고, 주관부문 비준을 거쳐 國家의 分配計劃에 반영되어야 공급받을 수 있다. 그 이외 特定企業만이 생산하는 물자나 대외무역회사의 輸出商品에 해당하는 물자는 해당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해서 구매할 수 있다.⁴³⁾

다음은 他國에서 구매하는 방법으로 수입쿼터제도와 수입허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수입쿼터제도에는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 國內 産業發展에 커다란 손실이 우려되는 물품이나 輸入 및 産業構造調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자국시

4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 3), 전계서, p. 30.

장의 수급조절을 위해 수입량의 조정이 필요한 물품, 外換收支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해 시행하고, 이에는 一般商品의 13개 품목과 기계·전기제품의 15개 품목에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輸入許可制度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물자를 수입할 경우에는 比準받은 수입설비 등 물자목록에 근거해 수입허가증을 취득해 수입할 수 있고, 輸入許可證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부와 각 성, 직할시, 자치구의 對外經濟貿易委員會 또는 경제무역청과 沿海都市에 주재하고 있는 對外經濟貿易部 特派員事務所에서 발급하고 있다.

輸入許可證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물자일 경우는 稅關이 비준을 받은 수입설비 등 물자목록에 근거해 검사한 후 그 물자목록에 포함된 물자에 한하여 輸入을 허가하고 있고, 外國人投資企業이 수입허가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물품을 포함한 輸出製品의 생산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계설비나 원자재, 생산용 차량, 부속품 등의 물자는 輸入許可證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設備나 原資材 등을 사용해 생산한 제품은 원칙적으로 輸出해야 하나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는 內需用으로 전용할 수 있다. 비취터 수입허가증 관리품목에는 식량, 주류, 화학병기 재료, 유독성 화학품, CD롬 생산설비, 칼라 감광재료 등 6개가 있다.

2001년 현재 中國에 진출한 韓國企業은 원·부자재의 68.2%를 韓國에서 조달하고, 中國現地에서 16.6%, 제3국에서 15.2%를 각각 조달하고 있다.⁴⁴⁾ 部品輸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고, 대신 수입부품에 대한 높은 增值稅를 부과하고 세관이나 검사국의 까다로운 수입통관 처리 등의 다른 방법으로 原資材 輸入을 규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外國人投資企業은 低價나 급하게 필요한 원·부자재는 中國現地에서 직접 구매하고, 핵심부품이나 고기술부품은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는 中國産原·副資材는 저가이기는 하지만 品質이나 性能面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국토가 좁은 韓國에서는 거의 모든 원·부자재를 어느 지역에서나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고

44) 매일경제신문, “중국을 다시 보자(한·중 세계로 수출)”, 2001년 9월 7일자.

品質도 평준화되어 있어 구매가 쉽지만, 중국은 다양한 品質과 供給者가 광대한 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原·副資材 購買가 쉽지 않고 물류비용도 많이 든다.

(2) 通關

가) 通關節次

中國의 輸出入 通關節次도 韓國의 輸出入 通關節次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수출입신고 및 심사, 물품검사, 관세납부, 통관반출, 사후관리, 세관수속 및 종결의 6단계를 거친다. 輸出貨物의 送荷人은 수출허가증과 관련 증명서를 첨부해 세관에 신고하는데, 일반적으로 화물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輸出地域 해당세관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輸入貨物은 受荷人이 입국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데, 기한을 초과하면 화주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수입화물 CIF 가격의 0.05%의 연체료를 징수하며, 受取人이 입국 신고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도 通關하지 않을 경우 세관이 반출해 매각 처리된다.

輸出入 申告時 제출서류는 수출입화물 허가증 또는 각종 증명서, 도착통지서, 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 등이며, 減免稅 對象貨物의 경우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稅關이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장, 거래서신 등을 첨부할 수도 있다.

나) 新 海關法⁴⁵⁾

中國은 1987년 개정·시행하던 稅關法은 WTO 가입에 대비하기 위해 2001년 1월부터 대대적인 수정작업을 거쳤다. 수정 전에는 통관신고 후 신고서와 관련 서류에 대한 수정이 불가능해 申告內容과 實到着貨物間의 내용이 불일치하면 불이익을 당했는데, 수정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稅關의 동의를 거쳐 申告書 및 關聯書類에 대한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통관신고 전에도 受荷人이

45) TRADEHELPER(<http://www.tradehelper.org>).

도착화물을 살펴보고 샘플을 추출할 수 있게 하여 受荷人の 權益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리고 輸出 및 輸入貨物과 관련된 知的財産權을 보호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관련화물의 知的財産權 관련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관세 납부기한을 납세증 발행일로부터 7일이던 것을 15일로 연장하였고, 통관수속 전에도 輸出者 또는 輸入者가 현금이나 담보물, 金融機關이 발행한 보증서 등을 담보로 화물을 通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납기가 촉박한 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密輸品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켜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密輸品 隱匿場所와 運送裝備에 대한 조사를 가능하게 하고, 밀수단속기관에 밀수혐의범 계좌추적권을 주었다. 또한 稅關員의 부정과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관원에 대한 監督 및 監査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稅關員의 자의적인 해석을 제한하고 법규적용의 統一성과 透明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관련 당사자는 稅關에 서면으로 상품분류 및 법규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다) 關聯慣行

輸入貨物을 통관할 경우에 선하증권의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는 國際的인 原則을 무시하고 中國에서는 船荷證券 寫本만을 가지고도 수입화물을 선 통관해 주고 있어 선적서류 원본보다 貨物이 먼저 도착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선하증권 사본을 가지고 선 통관한 후 中國의 신용장 개설은행이 貸金을 거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中國의 많은 은행들이 取消不能 信用狀에 대해 신용장 개설은행은 반드시 支給義務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있으며, 또한 中國의 信用狀 開設銀行은 네고된 선적서류를 접수하면 수입상에게 船積書類 到着通報와 동시에 대금결제 여부를 물어 만약 바이어가 대금결제 유보를 요청하면 대금지급 거부를 통보하기도 하며, 中國輸入商들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선적서류와 물품인수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信用狀 開設銀行으로부터 선적서류 일체를 인수받아 물품을 통관한 후

貸金決濟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中國稅關에서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保稅運送을 불허하고 도착된 港口에서 직접 通關하게 함으로써 이를 위한 원거리 출장 등으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保稅運送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地域에 따라 도착지 세관장의 보세운송동의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保稅運送 및 通關이 지연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中國은 지역이나 세관직원에 따라서 통관처리 기준이 다르고, 通關關聯 규정도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알려지지 않은 通關 內部規定이 많아 규제를 당할 경우에도 그 규제가 합당한지 부당한지의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稅關職員의 주관적인 조치에도 항변할 수 없는 실정이다.⁴⁶⁾ 또한 通關業務가 간소하거나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고, 稅關의 컴퓨터 고장 등의 이유로 通關이 지연되어 선적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고, 全國 稅關業務의 전산화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 타지 세관의 수출입 관련서류를 우송·전달하는데 시간이나 그 외의 경비가 소요된다.

中國은 편법적인 통관이 성행하여 세관직원과의 ‘관시’⁴⁷⁾에 따라 원활한 通關與否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제도와 실제 운용이 다른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中國 輸入商과의 상담과정 중 중국특유의 貿易慣行에 따라 편법을 써서 通關하기로 합의하는 수가 있으나, 이를 빌미로 나중에 輸入商이 決濟貸金을 빼돌리거나 야에 貸金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다. 또한 中國은 中央에서 통관에 관한 지시가 하달되면 地方은 잠시 따르는 척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편법활동을 재개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중앙에 ‘政策’이 있으면 지방에는 그에 대한 ‘對策’이 있다는 말이 있다.⁴⁸⁾

46) 외교통상부(2000), 『외국의 통상환경』, p. 295.

47) ‘관시’의 가장 근접한 번역은 ‘connection’으로 가족·씨족 등 혈연관계, 고향 등 지역관계, 학교·직장 등 사회적 연고관계에 기초하여 맺어진 사람간의 인맥관계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사업상의 접촉이나 공식적인 조직에 의해 맺어진 공식관계와는 달리 비공식적이고 호혜적인 친분의 교환을 기초로 맺어진 관계로 한번 혜택을 입으면 반드시 다음에는 그 혜택을 갚아야만 ‘관시’가 유지되고 발전된다는 뜻이다.

48) 안경준(1999), 『이것이 중국 상술이다』, p. 68.

그리고 輸出入物品 등에 관세당국이 심사·책정하는 課稅價格에 대해 상당수 기업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 輸入物品 課稅價格을 결정할 때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稅關에서 정한 가격을 적용해서 과도한 관세납부로 輸出競爭力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리고 中國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례는 WTO 협정의 基本原則에 부합되나, 실제 덤핑조사시 節次의 不透明성과 무리한 요구로 外國企業의 적극적인 應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특히 덤핑조사 관련 세칙 등이 공개되지 않으며, 피제소국의 응소시 반드시 中國辯護士를 선임할 것과 각종 답변서 등 관련서류를 中國語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다. 生産 및 品質管理

(1) 商品檢査制度

中國은 1,577개 품목에 대해 국가출입경검험검역국, 각 성·자치구·직할시 지방출입국경검험검역국(CIQ), 중국 수출입상품총공사(CCIC) 등 기관에서 商品檢査를 하고 있다. 검사신고, 샘플채취, 검사·검역, 위생처리, 비용징수, 증명서 발행·통관 허가 각 1회 등 6개 사항 점검과 檢査·檢疫窗口 一元化를 시행하고 있다.

檢査·檢疫機關은 검사·검역·통관방식, 인증절차, 증서서식, 증서관리 인쇄, 요강기준, 데이터 집계방식, 컴퓨터 사용관리 절차의 통일 등 7가지 통일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출입경검험검역국은 지금까지 3개로 나뉘어졌던 檢疫證明書を 1개로 통일하였다. 이전의 검역은 中國衛生部檢疫局(CHF), 中國農業部 動植物檢疫局(CAPQ) 및 중국진출구상품검역국(CCIB)이 담당하고, 1999년 8월에 3개 부서가 통합되어 모든 검역신고 및 인증발행 창구가 일원화되었다.

外國人投資企業이 수출입하는 품목과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에 의해 輸出入되

는 품目に 대해서는 수출입 검사와 관련해 각종 우대조치를 주고 있고, 상품검사기구 시행 ‘분류표’ 또는 ‘지방종류표’에 속하는 품목이나 安全管理와 衛生檢査를 받아야 하는 품목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는 商品檢査機關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하나, 이를 제외한 품目を 輸出入할 경우는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商品檢査를 하거나 상품검사기관에 감정 의뢰가 가능하다.

中國商標를 부착하거나 中國産임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허가를 받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고, 外國人投資企業이 각종 비용을 청산하기 위해 수출하는 상품은 商品檢査機關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賃加工用으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할 경우 契約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商品檢査를 하거나 상품검사기관에 감정의뢰가 가능하다.

(2) 關聯慣行

중국의 標準 및 規格認證制度는 내용이 모호하고 지역마다 다른 표준이 적용되고 있고, 형식승인과는 별도로 安全品質許可制度를 채택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공인된 先進國 安全規格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도 中國의 안전표시 마크인 공산품 안전규격마크(CCIB) 획득을 요구한다. 또한 現地 生産·販賣製品에 대해서만 적용해 오던 장성규격마크(CCEE)를 TV, CD플레이어 등 일부 輸入品에도 적용함으로써 수입품은 기존의 CCIB외에 CCEE도 추가로 획득해야 하는 등 각종 인증제도가 중복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外國商品의 검사가 國內商品보다 엄격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수출자 비용 부담조건으로 生産工場 檢査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中國은 가전제품에 대해 수입승인 전에 輸出物量의 1%에 대해 재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일 모델의 경우에도 輸入者가 다른 경우 수입자별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中國 國務院은 “工業製品 生産許可證 管理條例”를 공포하고 인체건강, 인체 및 재산안전, 금융·통신시스템 안전, 근로안전, 공공안전 등 6대 업종을 대상으로

事前豫防과 管理監督을 강화하기 위한 生産許可證을 최초로 발급하기로 하였다.⁴⁹⁾ 앞으로 중국에서 生産許可證을 발급받지 않고 제품을 生産·販賣하면 제품생산액의 3배에 해당하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고, 不法으로 生産許可證을 대여하면 최고 20만위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라. 販賣 및 代金回收

(1) 輸出에 關聯된 制度

가) 輸出쿼터制度

中國의 수출쿼터제도에는 自律的 쿼터制度和 被動的 쿼터制度가 있다. 전자는 상품의 안정적 공급과 중국상품간 過多競爭을 방지하기 위해 中國이 자율적으로 수출쿼터량을 설정하는 제도이고, 對象品目으로는 쌀·대두·옥수수 등 國民經濟와 生活에 직접 관계되는 주요 자원이나 수출 중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전통상품이며, 外國이 중국에 자율적 제한을 요구하거나 덤핑제소 기미가 있는 상품이다.

그리고 후자는 中國과 貿易協定을 체결하고 있는 輸入國에서 수입수량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中國이 스스로 輸出物量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수출쿼터품목에 대한 有償入札制度가 있어 할당 취득수수료를 지불하고 輸出割當을 낙찰받아야 한다. 2000년 1월부터 輸出促進을 위해 종전 13개 품목을 7개 품목으로 축소하고 있다.

나) 輸出許可制度

2000년 1월부터 조정·시행된 輸出許可證 管理品目에는 새롭게 銀이 추가되었고 캐시미어, 신문용지 등 6개 품목이 제외되어 총 54개 품목으로 축소되었다. 輸出許

49) 매일경제신문, “중국 ‘생산허가증제’ 도입”, 2005년 8월 22일자.

可證 對象品目を 생산·수출하는 外國人投資企業은 모두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공포한 분급 관리규정에 따라 각각 해당발급기관에 輸出許可證을 신청·발급 또한 년도별 수출계약에 의거, 6개월에 한번씩 수출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 委託加工輸出

수입원자재 가공 후 再輸出에 관한 업무는 “中華人民共和國 稅關의 輸入源資材 加工을 위한 輸出入貨物 管理規則에 대한 通知”에 따라 처리하며, 별도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허가없이 임가공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수출허가증이 필요없다. 원자재 중 輸入·加工 후 재수출하는 물품이 쿼터관리 대상품목인 경우 배정받은 쿼터에 따라 건별로 통관 전에 輸出許可證을 발급받아야 하며, 일반허가증 대상 품목을 수입·가공 후 재수출하는 企業은 원자재 수입가공 등기수첩과 輸出契約書를 근거로 허가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아 수출한다.

라) 外國人投資企業 輸出促進制度

製品輸出企業이나 先進技術企業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中國人 勤勞者의 노동보험과 복리비용 및 주거보조기금을 지불·적립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을 면제하여 주고, 生産經營에 필요한 전력, 용수, 운송조건, 통신시설을 우선 제공하고, 소재지 국유기업에 대한 사용료징수 표준에 의거해 사용료를 징수한다. 또한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단기운전자금 및 기타 신용대출자금을 中國銀行의 심사를 거쳐 우선 대출해 주고 있으며, 外國投資者가 企業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을 국외로 송금할 때 송금액에 대한 所得稅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리고 國家의 規定에 따른 기업소득세 감면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당해년도 企業에서 수출한 제품의 製品價値가 당해년도 기업의 총생산제품 가치의 70% 이상인 때 현행 세율에 따른 企業所得稅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고, 先進技術企業은 국가의 규정에 따른 企業所得稅 減免期間이 만료된 후에도 3년간 50% 감면된 企

業所得稅를 납부하도록 해 주고 있다. 또한 外國投資者가 企業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을 中國에 재투자해서 製品輸出企業이나 先進技術企業을 설립·확장한 경우에는 經營期間이 5년 이상인 경우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再投資分에 관해 이미 납부한 企業所得稅를 전액 반환해 주고 있으며, 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投資를 회수하면 이미 반환받은 企業所得稅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外國人投資企業은 수출제품에 대한 가격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결정한 輸出價格은 기업주관부문과 물자관리부문에 보고·등록해야 한다.⁵⁰⁾

(2) 內需에 關聯된 制度

가) 內需販賣

外國人投資企業이 생산한 제품을 중국시장에서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生産製品의 國內·외시장의 판매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하고, 比準된 國內·외 제품 판매비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2001년 4월에 外資企業法을 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外國人投資企業 설립신청서에 內需 및 輸出比率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生産製品이 계획분배 물자가 아닌 경우에는 中國市場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有關機關에 위탁해 대리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外國人投資企業의 생산제품은 國際市場價格을 참고로 제품가격을 결정할 수 있지만, 참고할 수 있는 國際價格이 없다면 중국이 규정하는 價格標準에 따라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中國市場에 판매하는 가격은 물자관리부문의 기준을 받아야 한다.

나) 流通業

中國은 1992년 북경, 상해, 천진, 광주, 대련, 청도 등 6개 도시와 심천, 산둥, 주해, 해남, 하문의 5개 經濟特區에 대해 小賣業을 개방하였다. 그리고 1999년 각 성,

50) 김번옥·김혜진·김연하(2001. 11), 전계서, p. 114.

자치구, 자치구의 수도와 중심도시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고, 都賣業은 地域別로 각 1개씩 中國의 지분범위가 51%를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外國人投資를 허용하였다. 하지만 中國은 都賣業을 법적으로 허용했으나 2년여간 협상을 끄는 등 外國企業의 中國 내 진출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던 중 상해 일백그룹과 일본 마루베니상사가 2000년 7월 상해 백홍상업무역유한공사라는 최초의 外國人投資 都賣企業을 설립하였다.

中國은 WTO 가입에 따른 양허안 준수와 유통시장 정비를 위해 “外國人投資商業企業時點方法”을 준비 중이고,⁵¹⁾ 2003년 5월 1일부터 도서, 신문, 잡지 소매업에 종사하는 外國企業의 자격기준을 명문화하기 위해 “外國人投資 圖書, 新聞雜誌, 定期刊行物 小賣企業管理方法”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3년 이내에 醫藥品 小賣市場 開放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개방되지 않았고, 시범적으로 상해와 북경에 外國人投資 藥品小賣企業의 진출을 허가기준으로 정하고 허가하였다. 의약품의 소매기업 설립은 현재 合資形態만 가능하고 신청조건은 첫째, 合資企業의 외국기업은 신청 전에 3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20억불 이상, 신청 1년 전의 자산총액이 2억불 이상이어야 하고, 中國側은 流通企業으로 신청 1년 전 자산총액이 5천만 위엔이어야 하며, 貿易會社일 경우에는 신청 전 3년간의 輸出入 總額이 5천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다수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WTO 가입 후 中國은 “外國人投資 獎勵產業目錄”을 수정하고 外國人 投資領域에 대한 개방범위를 확대하였고, 도매 및 소매의 장려산업은 <表 II-5>와 같이 규정하고 이에 대한 허가기준은 <表 II-6>과 같다.

中國은 外國企業의 中國진출을 合資 또는 合作으로 제한해 독자진출은 불허하고, 合資대상으로 中國측은 流通業 關聯企業으로 제한하고, 외국측은 經濟力과 流通分野의 선진경영기법 및 경험, 국제 유통네트워크, 높은 信用度와 經營實績이 우수한 企業으로 合資·合資 유통기업 설립을 통해 中國產 製品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5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3), 『중국의 유통업 현황과 진출방안』, p. 13.

기업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輸入品規模를 연간 매출액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輸出入 代行業務는 금지하고 있고, 외국측과 신규 合資·合作 流通企業이 상표 등을 사용하거나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外國側에게 지불한 관련비용 합계액은 동 流通企業의 연간 매출액(增值稅 除外)을 초과하지 못하고, 지불기한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表 II-5> 一般商品의 都·小賣 및 物流配送(外國人 投資 獎勵産業)

- 상품교역, 직판, 우편구매, 인터넷판매, 특허경영, 위탁경영, 판매대리, 상업관리 등 유통업 및 식량, 면화 식물유, 설탕, 약품, 담배, 자동차, 원유, 농업생산원료의 도매, 소매, 물류 배송
- 도서, 신문, 잡지의 도매, 소매
- AV제품(영화 제외)의 유통
- 상품경매
- 화물임대
- 에이전트(선박, 화물운송, 화물관리 외국기선, 광고 등)
- 정유 도매 및 주유소의 건설, 경영
- 대외무역분야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3), p. 14.

<表 II-6> 都·小賣業 許可基準

구 분	소 매	도 매
외국측 신청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억 달러 이상 - 최근 1년간 자산 2억 달러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5억 달러 이상 - 최근 1년간 자산 3억 달러 이상
등록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해지역 : 5천만 위엔 이상 - 중서부 내륙 : 3천만 위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해지역 : 8천만 위엔 이상 - 중서부 내륙 : 6천만 위엔 이상
지분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수가 3개를 초과하는 합자 연쇄기업의 경우, 중국측 지분 51% 이상(편의점, 전문점 제외) -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판매품의 현지조달비율이 높을 경우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지분조절 가능 - 점포수 3개사 이하의 합자, 편의점, 전문점은 중국측 지분 3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측 지분 51% 이상
경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영역의 소매업(대리판매, 위탁판매 포함) - 중국산 제품의 해외수출 - 자체경영 상품의 수출입 - 경영관련 부대서비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및 수입품의 중국내 도매 - 중국산 제품의 해외 수출
경영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해지역 : 30년 이하 - 중서부 내륙 : 40년 이하 	좌 동
허가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쇄점의 분점은 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직영 연쇄점에 한하며 특히 연쇄점 등 기타 방식의 분점은 잠정 불허함 	좌 동

자료 : <표 II-5>와 동일, p. 15.

다) 物流業⁵²⁾

中國은 아직도 전통적인 計劃經濟의 영향을 받아 상당수의 企業들이 여전히 원자재 구매에서 제품판매에 이르기까지의 物流活動 전부를 기업내부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企業 自體處理 比率이 상당히 높은 동시에 企業들의 內部 物流施設 保有率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물류시설이 企業經營資産의 중요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企業들의 전문화 및 물류서비스의 發展에 제약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 中國의 대부분의 물류서비스 기업들은 貨物運送과 保管 등 단순서비스만을 취급하고 있고, 유통가공, 물류정보서비스, 재고관리, 물류비용 조절 등 부가서비스 분야는 아직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物流 基礎施設과 設備가 낙후하고 規模가 작으며, 표준화·정보화 수준도 낮다. 또한 運送管理 體系에 있어 中央에서 地方까지 운송방식별로 管理部門이 나뉘어 있어 각종 政策 및 法規間에 상호모순이 발생하며 통일성이 없다. 物流研究의 상대적인 낙후와 물류전문인원의 부족, 현대화된 물류집산 및 보관운수 시설이 적은 점, 기존 물류시설의 부적절한 활용 등도 문제이다.

(3) 關聯慣行

가) 販賣關聯

中國業體들은 대부분이 서류의 작은 하자를 들어 貸金決濟를 거부하는데, 이는 商品의 市場價格 下落으로 인한 마켓클레임이 대부분이다. 또 일부업체들은 높은 關稅나 외화사용 제한 등을 이유로 貸金을 50% 정도 지급하고 나머지는 商品引受 후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商品을 引受하고 난 다음에는 品質의 불량 등을 이유로 잔금을

52) KOTRA China 사이트,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 물류산업”, 2001. 6. 28.

결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輸出入 權限이 몇몇 소수업체에 한정되어 있거나 輸出物量이 많은 경우 이미 계약을 했더라도 미리 契約金을 현찰로 내지 않을 경우 다른 輸入業體가 가격을 조금이라도 인상해주면 계약선을 바꾸는 일도 다반사다.⁵³⁾

현재 貸金回收에 통상적으로 6개월 가량이 소요되는데 그나마 현금이 아닌 實物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外國人投資企業들은 판매대금의 10~20%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기도 한다. 擔保制度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中國은 不實債權으로 인한 거래의 위험부담이 늘 있고, 外國人投資企業들은 현지에서 手票使用이 관행화되어 있지 않고 신용보증도 낮기 때문에, 일부 우량기업에 대한 手票決濟를 제외하고는 모든 결제를 현금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外上賣出金 회수시 은행간 온라인 決濟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貸金回收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장 기초적 체제라 할 수 있는 주문과 대금확인에 관련된 은행서비스 역시 없는 실정이다. 제품수출 후 銀行에 선적서류를 가지고 가서 貸金을 결제받을 때 즉시 받을 수 없고 추심기간이 오래 걸려, 韓國에서보다 資金의 회전기간이 길어 기업의 운영자금이 더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나) 電力關聯

中國은 전력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자주 단전되거나 制限送電, 不時停電이 되기도 한다. 電力申請費와 增設費도 비쌀 뿐 아니라 자가발전시설 설치·이용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韓國의 진출기업들이 韓國產 發電機施設을 수입해 오는데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현지에서 發電設備를 구입·설치하면 설비의 技能과 品質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현지공장 건설시 施工者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설비 수속비를 입주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기도 한다. 심지어 使用電力을 확장시킬 때는 변압기 용량문제를 들어 變壓器 交替費用을 업체가 부담할 경우 해주겠다

53) 안경준(1999), 전계서, pp. 99~101.

는 경우도 있다.

다) 物流關聯

道路, 鐵道, 港灣, 通信 등 사회간접시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物流費用이 평균 유통마진의 50~60%에 달하는 등 물류비용이 여전히 높은 편이고, 대부분 中國側 파트너나 政府機關은 자기지역의 輸送手段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방문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부피가 큰 물품을 運送할 경우에는 컨테이너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컨테이너 공급량이 부족해 납기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運送車輛이 각 지방 당국구역을 통과할 때 마다 각각 道路費를 내야 하고, 자동차관련 세금 등 각종 準租稅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비용부담이 크다.

라) 流通關聯

中國의 流通網은 제품품질이 높거나 가격이 저렴함 등에 관계없이 人間的인 關係가 형성되지 않고는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中國에는 종합도매상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流通業體가 영세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을 해 物流業務를 수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다수의 代理店을 상대해야 함에 따라 거래처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들 대리점들은 倉庫 및 輸送手段이 부족해 주문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열악한 物流與件 때문에 납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需要가 많은 인기상품의 경우에는 물건이 부족해 商品의 販賣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생기고, 需要가 적은 상품의 경우에는 在庫의 보충·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금한 貸金을 챙겨 달아나거나 받은 외상값을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하고, 대금을 깎아주는 대신 뒷돈을 받아 챙기는 營業職員들의 비리도 심한 실정이다.

마) 內需關聯

類似名稱, 類似包裝으로 인한 不當商去來行爲로 인한 피해를 입기도 하고, 外國에서는 무단복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商品에 붙은 별명 등에까지 상표권을 적용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中國法下에서는 商品의 별명은 가장 먼저 등록한 회사가 상표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中國 流通業體와 小賣商들이 자사제품의 별명을 등록해 복제품을 유통시켰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中國에서는 韓國에서 통용되는 先收金 販賣方式이나 판매보증금 수령 후 판매 등이 통용되지 않고, 보통 ‘先 製品供給, 後 代金回收’의 위탁판매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마. 稅制⁵⁴⁾

(1) 增值稅

增值稅는 생산·도소매 등 加工·流通段階에서 증가되는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附加價値稅의 일종으로 1979년~1982년 동안의 실험을 거쳐, 1983년 1월~1984년 10월에 일부지역에서 시행되다가, 1984년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財貨의 販賣 등에 따른 부가가치 발생분에 대해 부과하는 附加價値稅로 재화의 판매, 가공, 수선 및 교체용역의 제공행위에 대해 과세한다. 基本 增值稅率은 17%이고, 곡물, 식용유, 가스, 연탄, 천연수, 서적, 신문, 잡지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 기계, 농업용 비닐은 13%이다.

그리고 農業 生産者가 판매하는 자가생산 농산물과 피임약 및 피임용구, 고서적, 과학연구 및 교육용 수입장비와 하청 가공·조립을 위해 수입되는 장비 및 기계, 장애인용 수입물품, 무상지원 물자 및 장비, 사용하던 재화의 판매, 재료가공(위·수탁가공) 수출용 수입 원자재는 免稅對象이다.

54) 청도시 외자기업 정보지원센터(<http://www.qdic.net>).

(2) 營業稅

營業稅는 노무의 유상제공, 무형자산의 유상양도 및 不動產 販賣로 인한 營業額에 대해 부과한다. 교통·운수, 건축, 우편·통신 및 문화·체육업종은 3%이고, 金融·保險과 서비스업종, 무형자산 유상양도 및 부동산 판매는 5%이며, 오락업은 5~20%인데, 이것은 地方政府가 구체적인 적용세율을 결정한다.

그리고 月 營業額의 200~800위엔 이하와 每次 營業額 50위엔 이하, 유치원, 탁아소 등의 부양 및 양육서비스, 혼인소개, 장례서비스, 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학교 등의 교육서비스, 문화 및 종교활동 관련 입장료 서비스, 장애인제공 노무, 농목축업 관련 기술훈련과 질병예방 및 치료는 免除對象이다.

(3) 外國人投資企業 所得稅

中國에 들어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生産運營에 따라 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해 부과한다. 營業代理人의 경우도 상품구입 및 판매대행, 샘플보관 및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고, 利潤이나 利子, 賃貸料, 재산양도수익, 특허권 및 技術貸與收益도 과세대상이다. 稅率은 中央政府에서 30%, 地方政府에서 3%를 부과한다.

生産運營과 관련된 자금의 대출 또는 차입이자, 합리적인 관리비용, 집대비, 환율환산손익과 임직원의 급여와 福利厚生費는 비용으로 공제해 주며, 投資를 위해 발생한 費用과 損失, 고정자산 구입 및 건설관련 지출, 무형자산 양수 및 개발관련 지출, 자본이자, 소득세 세금, 벌금, 배상금, 몰수에 따른 손실, 기증, 본사에 지불한 특허권 및 기타 生産運營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赤字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納稅年度에 所得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해외납세 소득세의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控除額이 납세대상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4) 個人所得稅

個人所得稅는 1980년부터 중국정부가 國家稅收를 확대하고 개인간 소득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個人所得稅를 시행하였다. 중국 내에 住所가 있거나 주소는 없지만 1년 이상 중국 내에서 거주한 個人의 중국내외에서 발생한 所得이 과세대상이 된다. 그리고 급여소득, 개인사업자의 생산운영소득, 임대운영소득, 노무대가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 사용료소득, 이자, 주식이자 및 이윤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이 納稅對象이 된다. 韓·中 二重課稅防止 協定上 중국 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韓國人은 중국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中國에서 課稅權을 가진다. 급여소득의 경우 中國人은 800위엔, 外國人은 4,000위엔을 기초공제해 주고, 海外에서 이미 납세한 所得稅도 공제해 준다. 그리고 거주 및 숙박보조금, 식비보조금, 이사비, 세탁비, 국내외출장비, 언어훈련비, 자녀교육비, 저축예금이자, 보험배상금 등은 免稅對象이다.⁵⁵⁾

(5) 外國人投資企業의 稅制特惠

가) 一般特惠

運營期間이 10년 이상인 生産性企業의 경우 黑子가 발생하는 1, 2차년도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세해 주고, 3, 5차년도에는 감세해 주고 있고, 製品 輸出企業으로 총생산액의 70% 이상을 수출할 경우에는 반감해 주고 있으며, 經濟特區 등은 15% 세율을 납부하는 外國企業으로 총생산액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 세율을 적용시키고 있다. 그리고 先進技術企業인 경우에는 減免期間을 3년간 연장해

55) 김익수(2005), 전계서, pp. 125~126.

준다. 그리고 營業利益을 자본금으로 채투자 또는 다른 外國人投資企業에 채투자하고 운영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납부했던 企業所得稅額의 40%를 환급해 준다.

나) 地區別 特惠

經濟特區 및 상해포동신구 내 외국인투자기업, 경제기술개발구 내 생산성외국인 투자기업, 高新技術企業과 보세구 내 수출가공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企業所得稅를 15%로 반감해 준다. 그리고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발구 및 변경 등 대외개방도시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24%의 세율을 적용시키고, 投資金額이 3천만 달러 이상 또는 投資回收 期間이 장기인 경우 및 社會間接資本 建設 外國人投資企業의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6) 關聯慣行

中國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은 中國의 外國人投資企業 稅務政策이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럽다고 말한다. 稅務政策의 잦은 변화로 혼란이 많고 각종 정책법규의 透明性 및 衡平性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外國人投資企業은 세무감사를 실시하고 中國企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中國企業이 납부하지 않는 세금을 外國人投資企業만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각종 변경된 제도 및 규정이 地方政府까지의 전달이 늦어져 중앙정부, 시정부, 각 행정단위간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準租稅 徵收의 차이가 나며, 중앙정부와 세무당국의 발표내용이 달라 혼선을 빚을 때도 있다.

무분별한 業體訪問調查가 당연시되고 있고 지도교육보다는 罰金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재무내용 및 세무관련 비밀보장조치도 미흡하다. 外國人投資企業 優待政策을 보고 투자했는데 나중에 이를 다시 소급해서 課稅하는 不合理를 보이기도 하며, 기간이 경과된 稅金에 대해서도 몇 년간의 세금을 소급해서 납부하라는

요구가 있기도 하다. 地方 下部法에 의해 임의로 준조세가 부과되기도 하며, 변경된 제도를 알면서도 즉시 시행하지 않고 시행을 미루기도 한다.

그리고 外國企業들이 환급신청을 했을 때,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財源不足이나 還給에 관한 정확한 시행세칙 등 관련절차에 대한 行政未熟 등의 이유로 환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外國企業들은 增值稅 還給에 관한 정책과 시행규정 등의 잦은 변경, 변경된 정책이 일선창구에서 시행되기까지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와 함께, 복잡한 增值稅 稅額計算問題 등 실무적인 애로를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關聯 政府機關에 문의해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거나 서로 業務責任을 전가하는 경우도 많으며, 還給을 위해 필요한 영수증 구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도 많다. 또한 下級機關의 중복적 세무조사, 각종 수수료 및 임대료의 과다책정 등 대체적으로 外國人投資企業 優待措置가 갈수록 감소되고 있으며,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각종 감시 및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準租稅 性格의 잡부금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中央이나 地方政府에서 발표한 세금내역만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가 나중에 準租稅 性格의 각종 잡부금 부담으로 예상외 지출이 늘어나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개발구 내나 도시에 진출한 企業보다는 시 외곽지역이나 農村地域에 진출한 企業들에게 준조세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취약한 地方政府의 재정능력으로는 각종 공공사업을 감당할 수 없어 구역 내 外國人投資企業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이다.⁵⁶⁾ 또한 外國人投資企業에게만 부과하는 준조세가 많으며, 外國人投資企業 중에서도 소위 ‘관시’가 좋은 企業은 감면받는 경우도 많아 부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⁵⁷⁾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대처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中國政府 有關機關과의 관계 등을 이용해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세금고지서가 발급된 경

56) 손수운(1997), “중국진출 한국투자기업의 애로사항 분석”, 『중국통상정보 2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p. 15.

57) 대한상공회의소(1998), 전계서, p. 60.

우 納稅期間이 너무 촉박해 납기를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납세시기면에서도 연간납부, 반기납부나 분납 등이 어려워 稅金納付가 번거롭고 資金壓迫의 요인이 된다. 會計處理方式이 한국과 상이한 면이 많고 이를 적절히 소화해 낼 수 있는 優秀人力의 확보가 쉽지 않으며, 中國側이 회계를 담당할 때 회계업무를 韓國側에 잘 숙지시킬 수 있는 通譯이나 한국측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第 III 章 主要 競爭國의 對中國 投資 現況

第 1 節 中國의 外國人投資 誘致 現況

1980년대 말 中國의 緊縮政策과 天安門事態 등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 다소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던 外國人直接投資는 1991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2년 초 鄧小平의 ‘南巡講話’ 이후 中國의 經濟改革과 開放政策이 다시 가속화되면서 1992년 한 해에 전년의 거의 4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였고 1993년도에는 契約投資金額이 최고치에 도달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1994년 다소 조정을 거치면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實際 投資金額 基準으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여 1997년과 1998년에는 높은 수준을 이루었다. 하지만 1999년 들어 中國投資는 전년대비 投資件數, 契約額, 實行額 등에서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아시아 金融危機로 인한 주변국의 投資餘力 弱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中國의 투자관련 법률 미비, 불투명한 投資政策 등이 外國企業들의 신규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시아 金融危機 기간 동안 다소 주춤했던 中國의 外國人投資 誘致規模는 中國의 WTO 가입이 확정되면서 2001년부터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WTO 가입 첫해인 2002년도에 527억 달러를 넘어서서, 美國을 제치고 최초로 세계 1위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⁵⁸⁾ 그리고 2003년에는 전반기 사스파동에도 불구하고 535억 달러, 2004년에는 606억 달러를 유치하였다. 누계로는 中國의 外國人投資誘致 總額이 2004년 말 5,600억 달러를 넘어섰다(<표

58) 유희문 외 11인(2004), 『현대중국경제』 증보판, 교보문고, p. 433.

II-1> 참조>.

이는 中國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른 市場擴大와 WTO 가입 이후 中國의 內需市場 開放으로 인한 것이고, 中國 內需市場 開放의 擴大에 대한 기대감은 단순히 양질의 값싼 인건비 조달차원에서 中國에 진출하던 外國人投資企業들의 진출전략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실제로 中國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듯이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500대 多國籍企業 가운데 300개 기업이 中國에 投資·進出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단순가공 조립생산을 넘어서 연구개발, 디자인 기술센터, 마케팅 및 판매서비스 등 企業의 核心力量에 해당하는 부가가치 기능들이 대거 中國으로 유입되고 있다.⁵⁹⁾

이에 따라 中國의 外國人直接投資는 이제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인 변화와 구조조정으로까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물류 등 서비스업종까지 投資가 확대됨으로써 中國市場의 진입이 더욱 용이해지고 있고, 이런 변화에 부응해서 中國은 超一流 多國籍企業을 중심으로 M&A에 기초한 지배구조의 재조직 및 產業構造의 調整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이제 外國人投資企業은 中國經濟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경제주체 중 하나가 되었다. <표 III-1>에서 보듯이 2002년에는 中國의 공업총생산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 차지하는 비중이 1/3을 넘어서고 있으며,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50%를 넘어서고 있다(<표 III-2> 참조). 이처럼 外國人投資企業이 中國經濟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外國人投資企業의 中國 投資戰略이 종전의 수출생산기지 전략에서 中國 內需市場과 輸出市場을 통합하는 글로벌 전략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9) 백권호 외(2004), 『중국내 한국계 외자 기업의 경영현지화』, 지식마당, pp. 22~24.

<表 III-1> 中國 工業總生産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 차지하는 比重

(단위 : %)

년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비중	7.1	9.2	11.3	14.3	15.1	18.6	24.0	27.8	22.5	28.1	33.4

자료 : 유희문 외 11인(2004), p. 434.

<表 III-2> 中國의 輸出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 차지하는 比重

(단위 : %)

년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비중	20	28	29	32	41	41	44	45	48	50	52

자료 : 백권호 외(2004), p. 24.

第 2 節 中國의 投資環境과 對中國 投資에 대한 期待

세계은행은 중국투자환경포럼에서 ‘中國의 投資環境 改善’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中國의 현재 投資環境을 높이 평가하고 中國은 거시경제와 정치적 안정, 世界市場 單一化와 기초 인프라에 있어서 매우 탁월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다른 開發途上國과 비교해 보면 世界經濟 單一化를 따르는데 있어 中國의 성과는 더욱 두드러지며 이론의 여지가 없는 선구자이며, 成長速度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브라질 등을 훨씬 뛰어 넘어 世界經濟의 우등생으로 편입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世界銀行은 국가통계청의 기업조사팀과 함께 북경, 상해, 천진, 청도, 광주 등 도시의 1,500여개 企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國際水準과 비교한 후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고, 처음으로 거시경제 환경과 미시경제의 기본 틀 안에서 한 국가의

投資環境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세계은행 니콜라스 스텐 수석 경제학자는 中國이 안정적인 投資環境으로 얻은 成功은 앞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中國이 投資環境의 질적·양적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成長과 發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의하기도 하였다.

세계은행이 제기한 投資環境은 넓은 개념으로 다음 네 가지를 포함한다.⁶⁰⁾

첫째, 巨視政策 環境으로 재정정책, 화폐정책, 경제와 사회의 안정성과 개방성이다. 둘째, 체계적인 環境으로 입법과 법의 집행, 정부의 實踐과 構造의 개선을 말한다. 셋째, 企業의 微視的인 環境이다. 넷째, 기초 인프라의 질적 향상이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投資의 數的問題가 아니라 投資環境의 質的問題이며, 그것이 투자가 企業의 競爭力을 제고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강조하였다.

세계의 多國籍企業이 中國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中國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 고속성장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탄탄한 投資環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多國籍企業의 한 고위급 인사는 中國은 인프라 시설, 교통, 통신, 수도, 전기 공급에 있어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였다. 中國의 勞動力은 풍부하며 블루칼라부터 고급인재까지, 중·하급관리자부터 고급관리자까지 모두 生産現場에 투입할 수 있는 데다가 저렴한 인건비 조건까지 갖췄으며, 이러한 環境은 다른 국가들은 갖출 수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모토로라는 인력의 97%를 현지에서 채용하고 있다.

中國의 방대한 시장 또한 多國籍企業이 中國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불과 몇 년 사이 中國은 美國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휴대폰시장으로 부상하였다. 中國의 이동통신 설비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력을 가진 시장이다. 자동차와 컴퓨터가 빠르게 中國人들의 일상생활 일부분으로 자리잡으면서 세계 자

60) 청차오 저, 최운정·김준봉 역(2005), 『중국경제성장의 비밀』, 지상사, pp. 502~505.

동차와 부품제조업체, 그리고 컴퓨터와 컴퓨터부품 공급업체에 커다란 상업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스티븐 의장은 中國의 WTO 가입은 中國이 市場經濟를 향해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WTO의 틀 안에서 國際規範에 따르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外國投資者들이 中國投資를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中國이 WTO에 가입한 후 시장진입의 문은 더욱 활짝 열렸고 外國人投資 領域도 확대되어 금융업회사를 포함한 多國籍企業이 中國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第 3 節 主要 競爭國의 對中國 投資 現況

1. 對中國 外國人投資 現況

중국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는 1980년대에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1년 이후 전면 開放政策이 실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했으며, 1993년에 피크를 이루었다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약간 주춤하고 있다. 중국의 外國人直接投資는 1990년대 이래 연평균 약 120%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2002년 말 현재 중국의 外國人直接投資 總額이 4,480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다. 전 세계 투자유치 규모는 지난 2000년 1조 3,930억 달러에서 2002년에는 6,512억 달러로 연 3년째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中國은 전 세계적인 투자유치 부진 속에서도 초고속 經濟成長을 기반으로 2001년 세계 5위의 投資誘致國에서 2002년에는 프랑스, 독일,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투자유치국으로 급부상하였다.⁶¹⁾ 그리고 中國에 投資한 국가는 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投資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61) UNCTAD(2004), *World Investment Report 2003(United Nations)*.

홍콩·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등 華僑資本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현재 주요한 投資國은 홍콩, 臺灣, 日本, 美國, 韓國 등이며, 이들 국가의 대중국 투자 비중은 세계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 말 현재 中國의 外國人直接投資 總額은 5,351억 달러 규모로 이 중 홍콩지역의 投資가 전체 투자의 33.1%인 1,770억 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⁶²⁾ 다음으로는 2002년 기준 美國, 日本, 臺灣, 韓國, 싱가포르 순으로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 비중은 전체의 5.2%로 5위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에는 美國, 臺灣을 제치고 3위를 차지하였다. 中國의 주요국 외국인투자 비중 추이를 <표 III-3>에서 보면, 홍콩과 대만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美國과 韓國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日本, 싱가포르는 일정 기간 증가하다가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表 III-3> 中國의 主要國 外國人投資 比重

(단위 :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홍콩	68.2	62.8	58.4	53.5	49.6	45.6	40.7	40.6	38.1	35.7	33.9	33.1
미국	4.6	7.4	7.3	8.2	8.3	7.2	8.6	10.5	10.8	9.5	10.3	7.8
일본	6.4	4.9	6.1	8.3	8.8	9.6	7.5	7.4	7.2	9.3	7.9	9.4
대만	9.5	11.3	10.0	8.4	8.3	7.3	6.4	6.4	5.6	6.4	7.5	6.3
한국	1.1	1.4	2.1	2.8	3.3	4.7	4.0	3.2	3.7	4.6	5.2	8.4
싱가포르	1.1	0.2	3.5	4.9	5.4	5.8	7.5	6.6	5.3	4.6	4.4	3.8
기타	9.1	12.0	12.6	13.9	16.3	19.8	25.3	25.3	29.3	29.9	30.8	31.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각년호; 김홍석·이영주(2003. 12), p. 44에 의거 제작성.

한편 다른 국가들의 對中國 投資와 비교해 보면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가 빠르

6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 3), 전계서, p. 11.

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99~2002년 동안 주요 국별 대중국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韓國은 연평균 36.7%의 증가율을 보여 37%를 기록한 英國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표 III-4> 참조).

<表 III-4> 主要國 對中國 投資 年平均 增加率(1992~2002)

(단위 : %)

홍콩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싱가포르
9.1	26.6	19.4	14.2	36.7	34.3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기타	합계
26.5	37.0	29.1	26.0	37.2	17.0

자료 : <表 III-3>과 동일.

中國의 WTO 가입 이후 내수시장 진입제한 폐지, 서비스업 등의 개방 확대, 中國市場의 透明性 提高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그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외국인투자 형태 역시 변화를 보이고 있다. 多國籍企業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合作投資에 대비해 단독투자가 증가하였으며, 최근 中小企業의 投資가 증가하면서 총투자의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건당 투자금액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中國企業의 M&A 장려로 M&A 방식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WTO 가입으로 인한 서비스산업의 본격적인 開放으로 서비스업의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地域別로는 서부대개발 등의 中國政府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西部大開發이 장기 프로젝트로 빠른 시일 내 수익을 낼 수 없고 經濟的 落後性,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비교적 내수시장 공략이 쉬운 東部·中部地域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 對中國 外國人投資의 特徵

가. 地域別 特徵

중국의 地域別 外國人直接投資 誘致 現況을 보면 매우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地域政策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中國은 1978년 對外開放을 시작하면서 지역경사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는 동부연해지역처럼 비교적 經濟發展에 유리한 여건을 지닌 지역을 먼저 개발하여 이후 이 지역이 다른 지역의 발전을 선도한다는 不均衡 地域成長政策이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中國政府는 원자재의 대량수입과 제품의 국제시장 대량수출에 유리한 연해지역에 勞動集約的 産業을 육성하였고, 그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이 지역의 우수한 노동력을 이용해 附加價值를 높인 후 다시 외국에 수출하여 外貨를 獲得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 발생한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은 中國經濟 成長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는데, 1979년부터 1992년까지 中國이 誘致한 直接投資額 중 92.1%인 903.51억 달러가 동부연해지역의 10개 省·市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1995년 6월까지 外國人の 沿海地域投資는 6.4% 증가한 반면, 중부지역의 投資는 무려 9.6%가 증가되었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남도연해지역의 인건비의 상승, 中國 中西部地域의 交通 발달, 物流環境의 改善, 중국의 산업구조정책 및 지역분포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勞動集約的인 産業을 중심으로 外國人投資가 중서부지역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⁶³⁾

그리고 최근에는 中國의 항저우(35.18)가 中國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도시로

63) 상계서, p. 11.

2004년에 이어 2년째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우시(40.89), 상해(43.26), 대련(43.43), 북경(43.75) 순이다. 포브스지는 中國의 661개 도시를 대상으로 노동력의 수준, 인건비·토지비 등 경영원가, 시장규모, 민영경제의 활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평가하였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경쟁력이 높다.⁶⁴⁾

나. 業種別 特徵

中國에 投資하는 外國人直接投資 가운데 合資나 合作보다 單獨投資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4월 中國에 대한 外國人 投資件數를 보면 2003년 4만 1,081건에서 4만 3,664건으로 전년에 비해 6.3%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單獨投資 件數는 2003년에는 2만 6,943건이었는데 2005년 4월에는 14% 증가한 3만 708건이었고, 合資投資는 2003년 1만 2,521건 대비 7.6% 감소한 1만 1,570건, 合作投資는 2003년 1,547건 대비 13.2% 감소한 1,343건으로 조사되었다.⁶⁵⁾

2002년 기준 中國의 業種別 投資에서 製造業分野 投資가 전체 投資件數의 72.9%, 전체 契約投資額의 71.6%로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일반기계 및 특수기계제조업 등 資本集約的 産業에 대한 外國人投資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기계제조업의 경우에는 實投資額基準으로 2003년에 15억 6,100만 달러에서 21억 7,10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특수기계제조업의 경우에는 12억 2,500만 달러에서 18억 9,700만 달러, 통신설비와 컴퓨터를 포함한 전자기계제조업은 63억 700만 달러에서 70억 5,900만 달러로 각각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이 전체 投資件數의 3.9%, 전체 契約投資額의 6.1%, 유통업영역이 전체 投資件數의 5.0%, 契約投資額의 1.7%를 차지하였다.

1995년 상반기 2차 산업에 대한 投資가 2천억 달러이며, 그 중 방직업에 대한 投資가 709건에 15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에 주로 投資者側에서 경쟁력을

64) 매일경제신문, “중국에서 사업하기 좋은 도시”, 2005년 8월 30일자.

65) 무역일보, “중 외국인 단독투자 증가”, 2005. 4. 25일자.

상실한 斜陽産業이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中國으로 이전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中國政府는 勞動集約的인 産業의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각종 혜택을 축소하고 있으며, 資本技術集約的인 産業에 대한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유통업영역은 對外貿易法의 실시 및 流通領域의 개방에 따라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中國 내 金融證券領域의 외상투자 제한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投資誘致가 최근 1~2년간 급격한 상승세를 이루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종은 對外貿易과 유통업 개방조치에도 불구하고 2004년 대비 현재 5.8%의 증가에 그쳐 아직 開放效果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中國에 대한 外國人投資企業의 單獨投資 選好傾向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合資나 合作投資에 비해 獨資投資가 경영과 이익분배에 신축성이 많고, 大企業이 아닌 중견기업의 경우 合資나 合作投資를 해 왔으나 2005년에는 자본사정이 나아져 中國側과의 이익분배 문제와 경영상의 갈등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문제 등으로 合資·合作投資보다는 單獨投資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 國家別 特徵

2005년 현재 中國에 대한 주요 5대 투자국은 홍콩, 臺灣, 日本, 美國, 韓國 등이며, 이들 國家의 대중국 투자 비중은 세계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主要 國家인 홍콩, 美國, 日本, 臺灣의 투자 특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홍콩

홍콩은 中國의 開放政策 이후 對中國 投資額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홍콩은

2002년 말 현재 전체 투자의 45.7%인 2,049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中國에 投資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홍콩과 中國이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언어와 문화가 일치하며, 地理的으로 근접하여 輸送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先進國企業들이 홍콩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홍콩을 中國進出의 교두보로 활용했기 때문인데, 中國市場에 문외한인 外國企業들은 中國의 사정에 밝은 홍콩기업들과 제휴하여 中國에 合作投資會社를 설립하는 형태의 투자가 상당규모 이루어졌다.

홍콩의 中國投資는 中國의 저렴한 勞動力을 이용하여 生産費를 節減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심천경제특구나 광둥성에 조립, 하청공장을 설립하였고, 勞動集約的인 전자산업의 賃金이 급상승하면서 홍콩의 投資는 상해, 강소, 절강 등 양자강삼각주와 북경시를 포함한 환발해만 지역, 나아가서 호북, 호남 등 內陸地域으로 점차 다변화 되어가고 있다.

投資業種에 있어서 종래에는 전자제품, 섬유, 의류, 완구, 가발, 음식료품 등 勞動集約的 産業이 대부분이었으나, 1992년 이후부터는 資本集約的 業種과 投資資本의 회수가 비교적 빠른 요식, 오락, 관광, 호텔, 소매업부문, 그리고 부동산개발, 社會間接資本 등 서비스부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⁶⁶⁾

현재 주장삼각주지역 내 홍콩계 투자기업은 5만 3천여 개사로 주로 임가공을 위한 投資企業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홍콩기업들의 投資地域이 南部에서 北部로 선회하고 있으나 주장삼각주 이외의 지역에 대한 홍콩기업들의 投資가 주장삼각주지역 투자의 1/10 수준인 5,600개사로 추정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홍콩기업들의 광둥성 일대 투자편중이 심한 편이다.⁶⁷⁾

(2) 美國

66) 김익수(2005), 전계서, pp. 283~284.

6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 3), 전계서, pp. 12~13.

美國의 對中國 投資는 1992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投資地域으로는 북경, 천진, 상해, 강소성 등 연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中國 全域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⁶⁸⁾ 美國의 경우는 홍콩, 일본 등과 같은 아시아권의 企業들이 加工貿易據點으로 진출해 있는 것과는 달리 地理的 特性 때문에 中國의 내수시장 공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美國企業의 투자가 다국적기업, 업종의 다양한 분포, 거대도시에의 집중, 合資企業의 선호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초기에는 주로 호텔, 부동산, 석유개발에 종사하는 外國企業들에 대한 설비서비스공업, 수출형 경공업제품과 가공분야에 투자했으나 1986년 中國政府의 제조업부문 투자장려정책 이후 현재는 보다 더 다양하게 天然資源 開發에서부터 식품, 음료, 일용잡화에 이어 IT를 포함한 전기·전자산업, 화학, 통신, 자동차, 보험, 도소매 등으로 다양하다.

(3) 日本

日本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中國進出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으나 1992년부터 對中國 投資를 본격화하고 있다. 日本의 對中國 投資는 1988년까지는 광둥성 등 동남해와 經濟特區, 대련에 집중되었다. 1993년 말 中國進出 日本企業의 20%가 대련일대에 投資하였으며, 1993년 11월 대련 경제기술개발구 내에 일본기업 전용단지를 건설하였다.

1990년대 들어 엔고현상으로 中國投資 붐이 일면서 投資地域도 상해와 그 주변 지역, 하북, 호북, 사천 등 내륙지역으로 확대되었다. 進出動機도 종래에는 낮은 생산원가를 이용한 生産基地의 확보였으나, 이제는 中國을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日本의 對中國 投資는 종래의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68) 상계서, pp. 13~14.

백화점, 슈퍼마켓 등 소매업과 물류를 담당하는 운송회사, 金融·保險, 호텔, 식당 등 서비스부문의 投資業種이 다양화되고 있다.

日本の 對中國 投資의 특징은 첫째, 일본 내의 母企業과 중국 내 現地企業의 공장을 분업화하는 방식이다. 즉 일본 내 모기업은 高技術과 高附加價値 商品을 중심으로 하고 중국 내의 現地企業은 일반보급형 내지 수입대체품을 조립 생산하는 분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對中國 投資業種은 對中國 投資 初期에는 가전, 섬유제품,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최근에는 도매, 물류, 컨설팅, 공업단지 개발 등 3차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셋째, 일본 내의 多國籍企業의 중국 내 現地法人 혹은 外國企業과 투자지분을 공유하거나 부품 조달, 판매망 구축, 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상호관계 및 연대관계 구축을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 投資地域과 投資業種이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요녕성과 흑룡강지역에 진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輸出指向形 企業의 경우에는 주강삼각주지역에 진출해 있는 반면, 內需指向形 企業들은 주로 상해, 절강성, 강소성 등 장강삼각주지역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⁹⁾

(4) 臺灣

臺灣의 對中國 直接投資의 특징을 보면 첫째, 臺灣의 中國進出이 최근 수 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臺灣의 中國投資 規模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여 2003년 9월 현재 357억 달러로 中國의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臺灣經濟가 마이너스 成長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국면에 빠져있지만 진출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은 양국관계에 있어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 自國經濟의 불황타개를 위한 활로를 大陸投資 擴大에서 찾고 있다는 것은 대만이 경제적으로는 거의 中國에 통합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69) 상계서, pp. 14~15.

둘째, 첨단기술산업 위주의 投資形態가 변화하고 있다. 臺灣企業의 中國投資 形態는 1990년대 초까지 中國의 低賃金を 이용해서 가공생산을 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小規模 勞動集約的 產業에 대한 投資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中國의 賃金上昇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와 국제시장의 保護貿易主義 擴散에 따른 제3국 수출의 어려움 등으로 기존의 勞動集約型 小規模 投資形態가 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臺灣의 주력산업이 반도체, 컴퓨터 등으로 전환되었으나 高賃金과 협소한 시장이라는 臺灣經濟의 한계가 첨단기술산업의 대중국 투자를 확대하는 주요원인이 되었다.

그 외 臺灣企業이 주로 강소·광둥·복건의 동남 연해지역에 집중해 있고, 投資規模가 작고, 다른 外國企業이 합자경영을 하는 것과 달리 독자경영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臺灣企業은 원료·부품과 설비의 공급에 있어 臺灣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생산에 필요한 기술도 상당부분 대만에 의지하고 있다.

臺灣은 통계상으로 4위의 對中國 投資國이나 버진군도, 케이만군도 등 租稅避難處를 경유한 對中國 投資의 상당규모가 臺灣資本임을 감안한다면, 실제 臺灣의 對中國 投資는 美國과 日本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臺灣企業들은 주장삼각주와 장강삼각주의 양대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기초금속, 플라스틱, 식품, 음료 등 업종에 대한 投資比重이 높으나 2004년부터는 하이테크업종, 도소매, 보험 등 내수지향형 업종에 대한 투자도 늘고 있다.⁷⁰⁾

70) 상계서, p. 16.

第 IV 章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 現況

韓·中 修交 이후 급증했던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는 투자인가액면에서는 1995년을 정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認可件數面에서는 1994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즉 1996년에는 인가건수증가율이 전년의 50%에서 11.6%로 급감하였으며, 투자인가건수는 1995년부터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곧 인가건당 平均 投資額이 증가하는 投資規模 增大 現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모증대는 단순한 量的인 變化가 아니라 質的인 變化를 내포하고 있는데, 즉 投資主體로서 大企業의 부상과 投資對象 地域으로서 환발해만권 위주에서 양자강 삼각주로의 전환이 두드러진다. 즉 과거에 中小企業이 노동집약적인 상품의 임가공 후 再輸出을 목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조선족이 많은 환발해만지역에 집중되던 것이, 대기업이 製造業과 非製造業을 망라한 다양한 품목에서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를 겨냥하는 投資를 행하게 됨에 따라 양자강유역지역이 부상하게 된 것이다.

특히 韓國의 對中國 直接投資는 中國에 진출한 主要 投資國과 비교하여 10여년 정도 늦게 시작되었으나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이미 허가받은 韓國 累積投資件數는 3만 2천여건, 도착금액은 258.1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韓國의 對中國 地域別 投資現況을 살펴보면 山東省 投資가 가장 많고, 수익성 또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⁷¹⁾

본 장에서는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의 전개과정과 투자절차 및 對中國 投資 現況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가 韓國經濟에 미치는 효과와

71) 2004년 말 현재 한국의 산동성 투자는 누적투자건수 기준 12,832건(한국의 대중국 투자건수 대비 40%), 누적투자금액은 127.3억 달러(한국의 대중국 투자총액 대비 49.3)에 달한다. 경기개발연구원(2005. 5), 『산동성 진출 한국기업을 통한 경기도와 산동성간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위탁연구 2005-01호, p. 3.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第 1 節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의 展開

세계는 지금 中國의 무한한 潛在力과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인정하고 世界 超一流 多國籍企業들이 진출하여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中國을 글로벌마켓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이에 따라 韓國企業들도 이러한 조류에 따라야 할 필요성이 中國의 WTO 가입 이후에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韓國企業들의 對中國 進出計劃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⁷²⁾한 결과 50% 이상이 1~3년 내에 進出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업체 중 현재 이미 中國에 進出한 업체의 비율은 9.5%이며, 현재 이미 中國에 進出해 있거나 향후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의 비중은 전체의 38.4%에 달하고 있다. 한편 中國進出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은 업체는 52.6%였고, 나머지 9.0%는 무응답이었다.

中國進出 意圖에 있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업종은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가 47.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가 43.9%로 나타났는데, 이는 韓·中間 產業內 分業이 활발하게 진전되어온 전기·전자부문에서 中國進出이 향후 더욱 활발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기타 기계 및 장비 40.5%와 勞動集約型 産業인 가죽, 가방 및 신발 40.0% 등의 업종에서도 中國進出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韓國企業들이 對中國 對比 技術優位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에서 적극적인 投資計劃을 세우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업종별 편중현상은 이미 추진된 투자실적패턴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國內企業의 업종별 경쟁력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전 산업에 걸친 産業技術의 發展이 더불어 이

72) 동 조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 사이에 인천지역의 1,18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4. 5), 『인천 제조업계의 중국투자 실태와 인천시의 대응방안』.

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中國에 投資를 계획하고 있는 企業들의 투자시기를 보면, 진출을 고려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업 중 中國進出의 예상시기는 1년 이내가 5.6%, 2~3년 이내 14.1%, 4~5년 이내 5.2%, 5년 이후가 6.8%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3년 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投資計劃을 세우고 있는 많은 企業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景氣狀況의 추이를 지켜본 후 경기변화에 따라 진출시기를 탐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中國에 投資를 계획 중인 企業들의 예상투자규모에 있어서는 5억원 이하의 小規模 投資가 54.2%, 6억~10억원 이하의 投資가 22.9%를 차지하여 투자예정업체들의 대부분이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規模에 있어 일부 大企業을 제외하고 규모면에서 零細性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企業들이 資金側面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또한 향후 中國과 韓國間의 기업내 분업형태에 있어서는 중국진출 이후에도 國內의 生産施設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업체는 50.5%, 生産工程의 일부만을 中國으로 移轉하고자 하는 업체는 32.6%에 달해, 대부분의 업체가 國內 生産施設을 유지하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韓國企業은 지나치게 IT 등의 産業에 편중되어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아 産業全般에 걸친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 부문에 걸친 技術力強化 努力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느 市場이건 간에 技術力 優位와 브랜드 認知度を 높인 企業에 의해 市場이 先導됨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研究開發(Research and Development: R&D) 및 引受開發(Acquisition and Development: A&D) 등의 기술의 아웃소싱 전략을 통하여 先進技術 獲得에 더 한층 분발이 요청되어지고 있는 시기인 것이다.

과거에는 中國의 저임금에 매력을 느껴 投資하려고 했던 韓國企業들이 최근에는 中國의 巨大市場에 매력을 느끼고 진출을 하려는 企業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유형별 차이가 없이 일관된 選好度を 보이고 있다. 한편 中國進出이 저

임금 위주에서 市場中心의 投資가 이루어진다면 市場特性을 고려한 지역별 진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어, 進出地域의 偏重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中國投資를 계획 중인 企業의 地域別 分布現況을 보면 북경 및 산둥성 지역이 1위를 나타내고 있고, 2위는 상하이로 중심으로 한 양자강 하구유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장강델타지역이 中國의 經濟中心으로 부상하는데 따른 市場指向的인 인식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양자강수운을 이용한 중칭 등 西部內陸 進出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이점을 높이 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企業들의 진출이 市場形成에 포인트를 두고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동안의 실적투자에 대비해 볼 때 상당한 認識變化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분석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韓國企業의 中國進出은 많은 경우 韓國經濟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즉 韓國市場에서 제품수명주기가 성숙기 또는 쇠퇴기에 접어든 제품을 中國에서 생산하여 製品壽命週期를 연장하는 역할을 해왔고, 또한 많은 경우 韓國의 중고설비를 중국에 가져다 사용하여 기존 설비의 수명도 中國으로의 移轉을 통하여 연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들은 대중국 투자가 韓國의 産業構造 調整과 産業高度化에 일조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5%에 달하는 企業들이 중국현지 移轉技術의 부메랑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절반 이상의 기업이 中國進出 이후 母企業의 生産額과 從業員數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여 企業의 中國進出에 따른 일부지역과 산업에의 타격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절반 이상이 이미 中國에 進出해 있거나 진출을 고려 또는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韓國企業의 中國進出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對中國 投資의 증가가 韓國經濟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를 最大化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最小化시킬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⁷³⁾

第 2 節 中國의 投資節次

본 절에서는 中國의 投資制度和 관련하여 한국기업의 對中國 投資의 節次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投資節次는 投資者가 投資하기 이전에 사전조사와 投資地域의 선정이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절차의 흐름이다.

1. 意向書 · 協議書 締結

韓國側과 中國側의 投資意思가 확인되면 양측의 상담을 통해 사업의 개괄적인 내용을 정하고 이를 의향서나 협의서라는 형태로 문서화시킨다. 이 서류들은 中國 投資에 있어 문서화되는 최초의 서류로 中國에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기본서류이나 한국에서는 對中國 投資申告를 할 때 반드시 제출할 문서는 아니다. 독자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지역 관할 地方政府의 주무부서와 체결한다.⁷⁴⁾

中國에서는 外國投資者와의 合營企業 設立節次를 의향서 → 협의서 → 계약 → 정관으로 보고 있으며, 협의서까지만 해도 투자의 원칙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協議書 締結 雙方의 경제적 책임범위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法律的 效力이 부여되기 어려우며 契約이 비로소 완전하고 구체적인 법률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문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 말은 의향서와 협의서만 가지고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고, 契約을 締結하고 정관이 제정된 다음에야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意向書와 協議書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中國語와 韓國語로 문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두 언어로 작성된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中國內에서 問題가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中國語로 작성된 계약

73) 지만수 외 4인(2004. 12),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정책연구 04-14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38~141.

74) 김번옥·김혜진·김연하(2001. 11), 전계서, p. 51.

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中國語로 된 문서가 韓國語로 된 문서와 일치하는지를 잘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契約의 효력 발생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中國側과의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責任者 署名과 中國側 會社의 인감도 찍어두는 것이 좋다.

2. 投資 豫備許可 申請

投資 豫備許可 申請은 한국측에서는 없는 절차이지만 中國側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이것은 中國側 파트너가 투자프로젝트 건의서를 작성하여 해당기업 주무부서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外國人投資 許可 委任範圍에 따라 중앙정부 혹은 관할 지방정부의 투자허가기관에 예비허가를 신청한다. 獨自企業의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투자허가기관에 外國人投資企業 設立報告書를 제출한다.⁷⁵⁾

3. 事業妥當性 檢討報告書 作成

投資許可機關으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았을 경우 投資事業 妥當性 與否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⁷⁶⁾

사업타당성보고서(可行性研究報告書)란 投資事業의 항목건의서 혹은 外國人投資企業 設立報告書가 中國의 투자허가기관으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은 후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4. 契約 締結

7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 3), 전계서, p. 53.

76) 김번옥·김혜진·김연하(2001. 11), 전계서, p. 19.

外國人投資企業이 中國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서류는 契約書와 定款이다. 따라서 契約書 작성과 定款을 제정할 때는 세부 항목과 내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독자기업의 경우에는 投資許可를 신청할 때 契約書가 필요하지 않지만 合資나 合作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金融機關과 中國 投資許可機關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合資나 合作을 할 때는 中國側에서 거의 정형화된 契約書 예문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라 契約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契約書 예문이 中國側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中國에서는 企業規模를 평가할 때 종업원수와 固定資產 規模를 기준으로 하는데 고용인원 중 상당수의 퇴직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형태로 企業이 賃金を 지급하는 비근무자들이 있고, 고정자산 역시 '50~60년대의 노후설비가 장부가액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장부지나 건물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자료를 제출하기도 한다.⁷⁷⁾

中國側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할 경우, 中國側은 合資企業이 도산해도 임차료를 받는 것만으로도 손해가 없도록 임차료를 비싸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내용을 韓國語와 中國語로 각 2부씩 작성해 양측이 확인·서명하고 필요시 공증을 받아서 1부씩 보관하는 편이 좋다.

5. 定款制定

中國에서는 定款을 '章程'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법인 내부의 조직법이자 중요사항의 규칙으로서 법인구성원의 공동행위 준칙이고, 合作契約의 契約내용을 모체로 제정되며, 企業法人 名義로 제정된다. 中國側 投資許可機關에서는 契約과 定款을

77) 상계서, p. 26.

동시에 심사하여 投資許可 與否를 결정하지만 한국의 투자허가기관에서는 契約에 대해서만 심사하기도 한다. 그리고 合資·合作 投資는 계약 내용을 거의 정관에 반영하여 제정하지만, 獨資投資의 경우에는 회사명칭과 법정소재지, 법정대표, 투자자명칭과 법정소재지, 회사형태와 설립목적, 경영범위와 투자기한, 총투자액과 등록자본금, 회사의 경영조직, 재무 및 회계제도, 손익분배제도, 노동자 고용방식, 임금 및 복리제도, 적립금 적립비율, 이사회 조직과 권한, 사장 등 고급관리직원 직책, 회사의 해산 및 청산방식, 회사의 투자기한 종료 및 연장제도, 회사 정관의 개정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定款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⁷⁸⁾

6. 投資許可 申請

中國의 外國人投資 許可機關은 中國 特有的 지방분권적 행정조직에 따라 중앙정부 국무원의 상무부(구.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각 지방 현급정부의 外國人投資 許可 主務機關에 이르기까지 권한위임 범위별로 수직적 체계를 이룬다. 中國의 각 지방정부 내 대외경제무역위원회 및 이에 상응하는 外國人投資 許可機關으로부터 投資許可書를 의미하는 비준증서를 발급받아야 中國의 投資許可 節次가 완료된다. 그리고 비준증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재지관할 공상행정관리국에 企業設立 登記를 신청해야 한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企業設立 登記登錄을 마친후 이에 근거하여 營業許可證(營業執照)을 발급받아야 비로소 企業設立 登記節次가 완료된다는 것이다.⁷⁹⁾

第 3 節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의 現況 및 特徵

7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 3), 전게서, pp. 111~112.

79) 상게서, p. 155.

1.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의 現況

韓國의 對中國 投資는 1992년 韓·中 修交 이후 交易擴大가 活性化되는 가운데 2005년 현재까지 빠른 속도의 증가추이를 보이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韓·中 修交 이후 韓國의 對中國 投資는 실행액 기준으로 1992년 170건 1억 4,110만 달러에서 2004년 2,150건 22억 8,710만 달러로 무려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건수면에서도 2004년에 신고기준과 실행기준으로 각각 2,246건과 2,15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對中國 投資가 급증함에 따라 누계기준으로 볼 때, 中國은 韓國의 제2위 투자대상 지역이지만, 2001년 이후 연간 실행투자기준으로는 가장 중요한 投資對象地域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韓國의 對中國 投資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즉 금액면에서 1996년 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한국의 對中國 投資는 IMF 外換危機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9년에는 3억 4,870만 달러 수준으로 격감하였으나, 2000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8억 9,440만 달러까지 회복되었다. 특히 2001년에 金額基準으로 純投資 規模가 감소한 것은 같은 해 신규 투자건수가 1,032건으로 종전의 최대치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對中國 投資의 주요 업종인 제조업을 비롯하여 通信業 등을 중심으로 大規模 事業의 撤收가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다. 그 후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는 계속 증가하여 2004년 현재 신고건수 2,246건, 신고금액 36억 7,610만 달러에 실행 투자건수 2,150건, 실행 투자금액 22억 8,710만 달러에 이르렀고, 이러한 현상은 2005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표 IV-1> 참조).

<表 IV-1> 韓國의 年度別 對中國 投資 現況

(단위 : 십만 달러, 건수)

년 도	신 고 기 준		실 행 기 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88	2	34	1	0.1
1989	12	98	7	64
1990	39	556	24	162
1991	112	847	69	425
1992	269	2,231	170	1,411
1993	631	6,227	381	2,637
1994	1,065	8,249	841	6,331
1995	885	12,823	751	8,411
1996	925	19,536	733	9,012
1997	751	9,143	630	7,257
1998	317	8,958	263	6,780
1999	552	4,823	457	3,487
2000	905	9,317	766	6,130
2001	1,125	9,928	1,032	5,800
2002	1,515	20,204	1,333	8,944
2003	1,701	24,907	1,592	12,875
2004	2,246	36,761	2,150	22,871
2005.8	1,684	24,852	1,657	18,684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이러한 對中國 投資의 부침은 주로 1997년 外換危機로 인해 韓國企業의 해외투자 자체가 큰 폭의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기업의 투자, 특히 海外投資는 기업의 재무상황 및 景氣에 대한 예측에 따라 심한 부침을 보일 수밖에 없다. 韓國企業의 전 세계에 대한 直接投資 역시 1990년대 내내 급격한 부침을 보이고 있으며, 對中

國 投資도 外換危機에 따른 기업의 투자보류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표 IV-2> 참조).⁸⁰⁾

<表 IV-2> 韓國의 海外直接投資와 對中國 投資 比較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 체	1,263	2,323	3,136	4,415	3,648	4,730	3,281	4,980	5,044	3,449	3,660
대중국	264	633	841	901	726	678	349	613	580	894	1,288
비 중	20.9	27.2	26.8	20.4	19.9	14.3	10.6	12.3	11.5	25.9	35.2

자료 : <표 IV-1>과 동일.

對中國 投資가 한국의 全體 海外直接投資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면, 1990년대 중반 27%대에 달한 이후 外換危機 등을 계기로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가 1998년과 1999년에 큰 감소를 보이는데, 對中國 投資는 해외투자 전체의 감소보다도 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對中國 投資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해외투자 전체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韓國의 海外投資에서 대중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이후 다시 급등하였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이 집계한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 통계와 중국상무부가 집계한 投資誘致 統計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韓國에서 집계된 통계보다 중국에서 집계된 통계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 이후 中國側이 집계한 대중국 투자 통계가 韓國側이 집계한 통계보다 2~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측 통계로 볼 때 對中國 投資가 전년에 비해 감소했던 1999년과 2001년에는 그 차이의 비율이 3.7배에 달하는 등 더 커지고 있다(<표 IV-3> 참조).

<表 IV-3> 韓·中間 對中國 投資 統計 比較

80) 지만수 외 4인(2004. 12), 전계서, p. 31.

(단위 : 백만 달러, %)

연 도	중국측 통계(A)	한국측 통계(B)	A-B	A/B
1992	120.3	141.1	-20.8	0.85
1993	384.5	263.7	120.8	1.46
1994	794.9	633.1	161.8	1.26
1995	1,190.5	841.1	349.4	1.42
1996	1,357.5	901.2	456.3	1.51
1997	2,140.0	725.7	1,414.3	2.95
1998	1,803.2	678.0	1,125.2	2.66
1999	1,274.7	348.7	926.0	3.66
2000	1,500.4	613.0	887.4	2.45
2001	2,151.7	580.0	1,571.7	3.71
2002	2,720.7	894.4	1,826.3	3.04
2003	4,489.0	1,287.5	3,201.5	3.49

자료 : 중국상무부;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이처럼 兩國의 집계에 차이가 있는 원인은 주로 現地에 이미 투자한 기업에 의한 再投資나 現지에서의 법인변경 등을 통해 중국측이 韓國企業의 新規投資로 파악하는 부분이 韓國側 統計에는 잡히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식당 등 소규모 서비스업 투자의 경우에 韓國에서 신고하지 않고 投資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⁸¹⁾

이러한 차이는 중국 내 韓國企業에 의한 추가투자가 활발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對中國 投資의 정확한 규모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對中國 投資가 韓國經濟에 미치는 效果에 대해서도 정확한 파악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에서 清算 내지 撤收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유의해

81) 남영숙 외 3인(2004. 11),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37~38.

야 할 사항이다. 外換危機 이후 建設業에서 시작하여 製造業과 通信業을 중심으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清算 내지 撤收는 2002년~2003년 동안에 운수·창고업, 음식·숙박업의 청산 내지 철수로 이어지고 있다. 投資規模도 비교적 大規模 投資事業에서 중소규모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업 내부요인으로 中國의 投資環境에 대한 충분한 調査와 分析이 미흡했던 기업 자신의 준비 부족과 企業의 본원적인 핵심역량 부족 및 환경요인으로 中國의 投資環境의 빠른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력 미흡, 外換危機 이후 相對 價格構造의 변화에 따른 現地 價格競爭力 喪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⁸²⁾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큰 점은 通信業 등 비교적 최근에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서비스업과 低賃金에 기초한 생산비용상의 이점을 추구하기 위하여 진출했던 기존의 輸出 爲主 中小投資企業, 그리고 內需市場을 목표로 한 중소서비스업 등에서 동시에 撤收 내지 清算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中國의 투자관련 정책을 포함한 投資環境의 변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對中國 協力の 強化 및 擴大라는 국가정책 방향의 추세에서 볼 때, 그 보다는 韓國企業들의 핵심역량 부족과 준비부족 및 전략결여 등에서 그 주된 원인을 찾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2.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의 特徵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의 특징은 많은 연구가들이 공통적으로 3대 특징을 들고 있는데, 地域面에서는 환발해만지역 집중, 業種面에서는 제조업 중심 투자, 規模面에서는 소규모 투자 현상이다.⁸³⁾ 이러한 투자는 과거에는 中國의 經濟特區에 진출

82) 백권호 외 5인(2002. 12),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지화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46~47.

83) 대한상공회의소(1997),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현황과 전망』에서는 1996년까지의 대중 투자 현황을 분석하여 대중투자의 빠른 증가, 환발해지역에 대한 투자 편중, 제조업에 집중, 작은 투자규모 등을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익

하여 低賃金を 활용한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한 對中國 投資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內需市場 進出을 목적으로 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의 3대 특징별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1) 地域別 現況과 特徵

한국기업의 對中國 投資는 地理的·民族的 要因 및 市場要因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 中國 地方政府의 유치노력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의 對中國 投資地域으로는 산둥성, 북경시, 천진시 등 환발해만과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동북3성에 편중되어 있다. 이들 지역에 韓國企業의 投資가 집중되는 이유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朝鮮族이 얼마나 많이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韓國人의 중국 내 거주 연고와 대북한 접촉의 지리적 이점, 地方政府의 投資誘致政策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文化的 同質성과 함께 朝鮮族 活用の 용이성 때문이다. 특히 전문인력자원이 부족한 中小企業에게 있어 조선족의 고용은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海外投資의 가장 큰 障礙要素의 하나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投資地域 選定의 큰 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광둥성, 복건성 등 中國 南部地域의 경우, 經濟特區를 중심으로 이미 外國企業들의 中國進出이 활발하여 임금, 토지,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이 크게 상승하였고, 홍콩, 臺灣, 西方企業들이 선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요녕성에는 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고, 심양과 대련에는 中國의 工業團地

수(2005), 전개서, pp. 333~336에서는 중소기업에 의한 원가절감형 투자, 제조업 중심의 투자, 환발해만지역으로의 집중, 다수지분 전략 등을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김주영(2002), “한국의 대중국 투자의 평가와 전망”, 『대은경제리뷰』, 대구은행에서도 역시 높은 제조업 비중, 소규모 투자 위주, 높은 중소기업 투자 비중, 환발해만지역에 대한 편중 투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구성되어 있으며 흑룡강성에는 각종 天然資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천진의 경우 韓國土地開發公社가 천진 경제기술개발특구 내에 한국전용공단을 조성하였는데, 천진 경제기술특구관리위원회가 각종의 優待措置를 취함으로써 韓國企業의 진출이 용이한 면이 있다.

韓國企業이 대중국 직접투자지역을 企業의 規模와 관련시켜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산동성에 대한 投資集中度가 절대적인데, 이는 韓國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한중항로의 개설, 在韓 中國人의 고향이 산동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 30대 企業의 경우 외국업체와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 中國에서 비교적 경제발전이 활발한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으나, 中小企業일수록 산동, 요녕, 길림성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中小企業의 정보력부재, 인력부재, 자금력부재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開放擴大에 따른 中國 內需市場 進入 制限이 완화되면서 점차 偏重現狀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변화는 없다. 그리고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가 가장 많은 환발해만지역⁸⁴⁾과 장강삼각주지역⁸⁵⁾에 대한 投資는 건수, 금액면에서 전자는 각각 全體 投資의 68.5%, 60.2%, 후자는 각각 12.8%, 24.4%를 차지하고 있다. 地域적으로 보면 산동, 강소, 북경, 천진, 요녕 순으로 높은 投資比重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5개 지역이 전체 中國 投資件數 및 金額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IV-4> 참조).

84) 요녕, 하북, 북경, 천진, 산동.

85) 강소, 상해, 절강.

<表 IV-4> 韓國의 對中國 地域別 投資 現況

(단위: 천 달러, 건)

		산 동	요 녕	길 립	천 진	북 경	강 소	상 해	광 동	절 강	기 타
1988	건 수	1	-	-	-	-	-	-	-	-	-
	금 액	10	-	-	-	-	-	-	-	-	-
1989	건 수	3	-	-	-	1	-	-	1	-	2
	금 액	4,450	-	-	-	450	-	-	1,000	-	460
1990	건 수	6	7	1	2	1	1	-	2	-	4
	금 액	5,741	4,724	45	1,305	200	900	-	1,740	-	1,519
1991	건 수	18	16	5	4	8	3	-	3	2	11
	금 액	14,952	7,333	813	2,629	2,052	3,030	-	1,050	1,206	7,969
1992	건 수	69	33	11	18	6	6	5	7	2	13
	금 액	49,394	15,850	2,846	7,970	27,249	4,335	4,932	8,557	2,365	17,629
1993	건 수	107	77	30	49	26	18	9	10	2	53
	금 액	87,640	43,807	14,490	24,088	14,448	18,400	4,856	11,750	856	43,347
1994	건 수	208	189	87	92	67	40	22	19	10	107
	금 액	203,587	59,364	24,888	108,312	31,733	56,857	33,680	25,917	2,325	87,809
1995	건 수	212	154	81	81	45	33	29	17	17	82
	금 액	287,418	74,119	37,861	85,916	69,566	89,778	97,621	21,400	10,589	67,495
1996	건 수	226	151	88	60	31	38	33	10	23	78
	금 액	249,341	117,461	34,628	108,211	102,905	89,888	113,623	33,162	8,614	63,879
1997	건 수	197	119	77	65	25	38	23	14	11	62
	금 액	142,922	58,320	24,348	42,394	57,715	134,114	136,067	18,910	50,127	73,741
1998	건 수	86	39	32	26	10	14	13	5	10	27
	금 액	183,302	32,626	5,265	168,836	31,383	80,890	32,428	75,611	62,267	22,516
1999	건 수	186	81	71	14	13	32	16	5	14	27
	금 액	66,320	36,254	17,632	56,411	42,163	49,438	39,666	5,282	9,296	42,859
2000	건 수	311	111	75	70	48	41	29	19	22	51
	금 액	269,513	608,645	10,986	63,618	85,511	81,292	23,856	9,979	24,548	80,217
2001	건 수	424	137	54	84	64	66	73	33	35	77
	금 액	189,973	40,852	21,529	110,297	24,439	100,615	31,130	21,693	42,402	52,450
2002	건 수	545	149	41	135	90	129	102	46	56	89
	금 액	249,131	63,056	15,553	101,419	172,082	198,038	58,096	34,431	56,418	71,267
2003	건 수	644	196	40	140	124	171	111	63	76	114
	금 액	445,251	103,023	13,808	103,716	178,745	400,372	87,571	58,430	120,382	129,232
2004	건 수	824	227	56	168	198	236	136	86	88	83
	금 액	591,535	202,293	19,221	137,131	338,744	565,280	104,449	115,542	95,786	67,429
2005.8	건 수	636	206	44	163	147	143	117	52	51	98
	금 액	451,761	143,900	29,901	156,485	277,704	419,904	97,750	50,958	74,448	165,613

자료 : <표 IV-1>과 동일.

현재 지역적으로 投資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산둥, 강소는 韓·中 修交 초기부터 中國이 WTO에 가입한 후 2005년 현재까지 유망한 投資地域으로 선호되고 있다. 이들 지역이 地理的 隣接과 북경 진입이라는 이점을 가진 반면, 북경과 천진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內需市場 開拓을 위한 大規模 投資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投資國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낮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生産方法의 사용과 經營을 할 유치요인이 있으며, 投資誘致國의 입장에서선 先進技術과 경영노하우에 쉽게 접근하게 됨으로써 誘致企業뿐만 아니라 유치기업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企業의 生産性을 증가시키게 된다.⁸⁶⁾

(2) 業種別 現況과 特徵

한국기업의 對中國 直接投資는 2004년 투자기준으로 1,623건에 18억 1,500만 달러로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비제조업부문의 投資도 증가하고 있다(<표 IV-5> 참조). 製造業分野 중에서도 投資規模가 투자금액면이나 건수면에서 모두 전자·통신, 섬유·의복, 석유·화학분야의 순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섬유·의복분야에서는 件當 投資規模는 작지만 건수가 지속적으로 매년 평균 100여건 넘게 投資되는 양상을 보이다 2003년을 기점으로 급증하였고, 전자·통신분야에서는 성장 초기단계부터 投資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금액·건수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IT산업분야의 對中國 投資가 시작된 2000년부터 電子·通信分野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1994년까지는 件當

86) 지만수 외 4인(2004. 12), 전계서, p. 53.

投資規模가 85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5年 中國이 단순제조업의 投資誘致 制限과 함께 WTO 가입 이후 內需市場 開放 등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는 움직임에 따라 大企業을 중심으로 投資規模도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表 IV-5> 韓國의 對中國 業種別 投資 現況

(단위 : 백만 달러, 건)

		제 조 업							비 제 조 업				
		음식 료품	섬유 의복	신발 가죽	석유 화학	조립 금속	전자 통신	기타	농림	건설	운수	도소매	기타
~1991	금액	6	9	10	6	0.04	7	25	0.1	-	0.5	0.1	1.2
	건수	7	19	10	2	1	9	45	1	-	1	1	5
1992	금액	3	35	12	2	10	16	40	2	-	-	0.2	22
	건수	9	47	10	4	10	14	66	7	-	-	1	2
1993	금액	8	84	22	13	7	25	94	3	2	3	2	4
	건수	21	105	33	32	13	24	127	6	2	0	3	15
1994	금액	26	104	34	30	18	145	224	6	12	7	4	22
	건수	67	194	45	61	33	58	245	17	9	13	30	69
1995	금액	55	123	45	65	13	143	267	4	26	16	12	70
	건수	60	132	44	65	31	68	248	11	9	10	19	51
1996	금액	45	106	26	81	17	176	233	7	52	11	44	86
	건수	63	124	46	56	33	53	247	24	10	1	20	39
1997	금액	19	58	11	65	10	50	241	1	44	7	39	165
	건수	38	107	27	46	32	59	217	10	6	6	19	41
1998	금액	7	30	8	50	5	291	148	2	18	4	2	56
	건수	12	62	9	18	6	23	76	4	1	3	13	15
1999	금액	5	14	13	25	6	5	74	1	9	2	11	43
	건수	30	99	35	21	18	28	165	4	3	3	11	21
2000	금액	8	19	21	63	16	97	97	1	16	1	14	5
	건수	45	128	57	53	24	88	265	8	2	3	26	60
2001	금액	38	71	27	81	19	-441	125	2	-13	-2	13	-109
	건수	61	141	84	85	36	135	344	6	2	1	42	81
2002	금액	31	81	25	84	37	115	398	4	17	4	24	42
	건수	69	43	63	103	65	225	444	12	5	7	65	100
2003	금액	38	127	31	167	78	293	617	5	11	-1	72	71
	건수	78	216	53	118	67	250	574	20	12	0	87	153
2004	금액	74	220	38	212	78	446	747	5	27	2	88	28
	건수	120	234	66	142	66	261	734	30	23	5	92	313
2005.8	금액	67	118	55	139	41	305	686	8	46	17	178	109
	건수	94	203	44	101	45	166	446	24	39	13	200	244

자료 : <표 IV-1>과 동일.

한편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의 전체 산업에서의 비중으로 보면, 1992년부터 2003년까지의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에서 製造業部門이 전체의 84.2%인 67억 2,512억 달러를 점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서비스업은 4.2%인 3억 3,714만 달러이며, 숙박음식업은 3.2%인 2억 5,581만 달러, 건설업은 2.8%인 2억 2,261만 달러, 도소매업 2.7%인 2억 1,329만 달러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점차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⁸⁷⁾

韓國의 國內投資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2001년 이후 對中國 投資가 급증하면서 한국에서는 國內 製造業 空洞化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韓·中 FTA의 締結로 投資環境이 개선되면 對中國 投資는 더욱 늘어날 수 있어서, 韓·中 FTA가 본격적으로 진전될 경우 FTA가 産業空洞化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의 하나로 등장할 가능성도 크다.⁸⁸⁾

<표 IV-6>에서 보듯이 製造業이 한국기업의 對中國 投資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기준으로 무려 88.0%에 달하고 있다.

<表 IV-6> 韓國의 海外投資에서 차지하는 製造業의 比重

(단위 : %)

년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 체	44.3	64.7	65.3	63.8	50.9	49.0	50.8	30.0	74.5	47.8	52.4
대중국	95.3	91.8	84.9	79.2	68.1	86.4	82.8	77.4	92.7	88.5	88.0

자료 : <표 IV-1>과 동일.

이처럼 製造業 爲主의 투자패턴은 外換危機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87) 상계서, p. 36.

88) 남영숙 외 3인(2004. 11), 전계서, p. 38.

를 보이다가 外換危機 이후 오히려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1993년 95.3%에 달했던 製造業 投資의 비중은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져 68.1% 수준까지 이르렀다가 外換危機 이후 다시 80%대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2001년에는 무려 92.7%대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外換危機 이후 製造業 投資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기보다 대중국 투자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景氣에 민감한 서비스업종 등 非製造業에 대한 투자가 더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2001년 이후에는 製造業 投資比重이 소폭 줄어들고 있다.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가 제조업, 특히 勞動集約的 業種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내의 高賃金으로 인한 국내외에서 輸出競爭力을 상실함에 따라 풍부한 低賃金 勞動力을 활용하기 위해 中國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것과 中國의 투자유치정책 중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수출의무 요구⁸⁹⁾와 내수시장 진출을 제한하며, 서비스업종에 대한 投資를 억제하였던 데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韓·中 修交 초기에 더욱 강하게 나타나다가 成長段階로 접어들면서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금융위기로 인한 國內經濟 沈滯로 말미암아 다시 제조업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3) 主體 및 規模別 現況과 特徵

투자주체면에서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는 다른 지역투자자와 비교할 때 中小企業에 의한 투자의 비율이 높고, 中小企業이 投資總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다가 外換危機 이후 다시 늘어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中小企業들의 경우 1992년부터 2004년 6월까지 對中國 投資 累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건수면에서 71.0%, 금액면에서 41.3%를 차지하고 있다(<표 IV-7> 참조). 이는 전세계에 대한

89)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에 수출의무 규정이 명시되었으나, 2000년 8월(외자기업법)과 2001년 3월(합자기업법) 관련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여 수출의무를 수출장려로 완화하였다.

韓國企業의 해외투자 누계 중에서 中小企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면에서 61.3%, 금액면에서 2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⁹⁰⁾

<表 IV-7> 投資主體別 對中國 投資 規模(1992~2004年 6月)

(단위 : 백만 달러, 건수)

	투자 건수				투자 금액			
	대기업	중소기업	기 타	합 계	대기업	중소기업	기 타	합 계
1992	14	156	0	170	55	86	0	141
1993	36	335	10	381	72	189	2	264
1994	92	705	4	841	344	283	6	633
1995	92	602	57	751	495	336	9	840
1996	73	488	172	733	571	307	24	903
1997	51	448	132	631	551	157	20	727
1998	19	174	68	261	589	82	8	679
1999	11	283	163	457	251	84	16	351
2000	14	555	198	767	472	175	24	671
2001	16	740	277	1,033	258	289	36	582
2002	33	921	393	1,347	409	483	64	955
2003	43	1,137	461	1,641	550	790	87	1,427
2004.6	34	552	391	977	336	474	70	881
누 계	528	7,096	2,366	9,990	4,953	3,735	366	9,054
누계비율	5.3	71.0	23.7	100	54.7	41.3	4.0	100

자료 : <표 IV-1>과 동일.

中國에 대한 투자액 중에서 中小企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72%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外換危機를 맞아 中小企業의 海外投資가 격감한 1998에는 12%까지 급감하였다. 1998년 이후 中小企業의 투자비중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4년 6월 현재 54% 수준에 이르고 있다.

90) 지만수 외 4인(2004. 12), 전계서, pp. 39~40.

이러한 추세는 韓國의 海外投資 전체에서 中小企業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와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中小企業 比重의 빠른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걸쳐 對中國 投資에서 中小企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海外投資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더 높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는 첫째, 韓國의 賃金上昇 등의 이유로 輸出競爭力이 떨어진 중소기업체들이 中國의 저렴한 勞動力을 活用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둘째, 大企業의 경우 中小企業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히 投資環境을 조사한 후 점진적으로 中國投資에 나서고 있다는 점, 셋째, IT분야의 중소기업의 海外投資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IT분야의 경우 對中國 投資의 업종별 분포에서 電子·通信業種의 비중이 커진 데서도 알 수 있다.

건당 투자규모면에서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는 여타 국가에 대한 投資에 비해 작은 편이다. 1992년~2003년까지의 對中國 投資의 평균 투자규모는 90만 달러 수준인데, 韓國企業의 전체 해외투자의 건당 평균규모는 264만 달러였다. 對中國 投資의 평균규모는 全體 海外投資 平均規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4% 수준이다. 이는 中國에 대한 투자 중에 中小企業의 小規模 投資가 많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第 4 節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動機와 投資決定 要因

1.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動機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동기 중에서는 저렴한 生産要素를 활용한 비용절감과 現地市場 開拓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지적된다. 수출입은행의 조사⁹¹⁾에 따르면 2003

91) 한국수출입은행(2004. 1),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현지법인 경영현황 분석(2002 회계년도 기준)』, p. 9.

년 中國에 投資를 신청한 1,701건을 투자목적별로 구분했을 때 低賃金 活用이 634건(37.3%)이었고, 輸出促進이 545건(32%)이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⁹²⁾가 2003년 12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費用節減이 43.7%, 海外市場 開拓 및 戰略的 提携가 33.9%, 國內의 人力難이 12.5% 등 순이었다. 한편 산업자원부⁹³⁾는 수출입은행의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2003년 1월~9월 기간 중 中國에 投資한 기업에 대해 投資動機를 조사하였다. 전체 조사 대상기업의 36.6%가 投資動機를 현지시장 개척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人件費 등 비용절감 35.7%, 협력업체의 해외이전 15.2% 순이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大企業과 中小企業을 분리하여 投資動機를 조사했는데, 大企業은 현지시장 개척이 무려 6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中小企業은 34.5%로 답해 大企業과 큰 차이를 보였다. 中小企業은 인건비 등 비용절감이 3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大企業과 中小企業은 中國에 대한 투자목적이 現地市場 開拓이나 費用節減이나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조사인 지만수 외 5인의 조사에서의 對中國 投資動機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표 IV-8>, <표 IV-9>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분석 결과에서는 저렴한 人件費가 36%, 內需市場 進出 26%, 해외 바이어의 요구 11%의 순으로 나타났고, 大企業의 투자동기 분석 결과에서는 內需市場 進出 45.3%, 저렴한 인건비 26.6%, 우회수출 9.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投資目的이나 動機는 변할 것이고, 時間經過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동기가 費用節減型에서 점차 現地市場 開拓型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大企業일수록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시장 개척이 對中國 投資의 중요한 動機가 되고 있는 것으로 기존의 조사들에서 분석되고 있다.⁹⁴⁾

9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4. 1), 『중국진출 기업의 경영환경 및 투자만족도 조사』, p. 8.

93) 산업자원부(2003. 9), 『해외 제조업 투자 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pp. 4~5.

94) 지만수 외 4인(2004. 12), 전계서, pp. 53~54.

<表 IV-8> 對中國 投資動機

항 목	응답수	응답비중	사례비중
내수시장 진출	155	25.6	53.3
저임금+노동력	219	36.2	75.3
우회수출	31	5.1	10.7
바이어 요구	67	11.1	23.0
원·부자재 확보	38	6.3	13.1
싼 토지비	14	2.3	4.8
조세우대	11	1.8	3.8
타기업과 연계	52	8.6	17.9
한국내 규제(환경 등)	18	3.0	6.2
계	605	100.0	207.9

주 : 다중응답

자료 : 지만수 외 4인(2004. 12), 전제서, p. 57.

<表 IV-9> 大企業의 對中國 投資動機

항 목	응답수	응답비중	사례비중
내수시장 진출	29	45.3	85.3
저임금+노동력	17	26.6	50.0
우회수출	6	9.4	17.6
바이어 요구	4	6.3	11.8
원·부자재 확보	3	4.7	8.8
조세우대	1	1.6	2.9
타기업과 연계	3	4.7	8.8
한국내 규제(환경 등)	1	1.6	2.9
계	64	100.0	188.2

주 : 다중응답

자료 : <표 IV-8>과 동일.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는 IMF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投資目的에 대해 설문을 조사했는데, 費用節減은 IMF 이전보다 이후에 1.3% 포인트 증가했으나 海外市場 開拓 및 戰略的 提携에 대해서는 12.1%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데서도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가 시간경과에 따라 단순한 비용절감 보다는 해외시장 개척, 즉 現地市場指向型 投資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決定 要因

海外直接投資 現狀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되었다. 하이머(S. H. Hymer)⁹⁵⁾의 獨占的 優位理論에서부터 더닝(J. H. Dunning)⁹⁶⁾의 절충이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동기와 競爭優位의 원천 및 海外進出 유형의 선택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들이다. 韓國企業들의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연구는 주로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獨占的 優位要素의 규명 또는 더닝이 제시한 ‘절충적 틀’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기업이 보유한 特有的 優位要素 이외에 立地와 內部化의 優位要素를 가질 때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어느 한편의 優位要素가 나머지 優位要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움으로써 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海外直接投資의 經濟的 效果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도 연구의 초점이 모아졌고, 특히 輸出에서 애로사항이 생길 때마다 政府와 企業

95) S. H. Hymer(1976),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96) J. H. Dunning(1981),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8), “The Eclectic Paradigm of International Production: A Restatement and Some Possible Extensions”, JIBS, Spring.

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직접투자에 관심을 모았다.

이처럼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단면적인 관심과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投資決定要因에 대한 일반이론은 없었다. 다만 貿易과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통합이론의 모색이 小島清(K. Kojima)⁹⁷⁾과 더닝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이다. 또한 더닝의 절충이론에 따라 웰스(L. T. Wells)⁹⁸⁾는 開途國 企業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데에 競爭優位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獨占的 優位要素를 가진 선진국의 多國籍 企業만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開途國 企業도 자국 실정에 맞게 변형시킨 기술적 노하우 등으로 현지의 競爭企業에 비해 상대적인 경쟁우위를 누릴 수 있으면 直接投資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소규모 생산방식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勞動集約的인 工程技術 등을 개발하여 현지의 원·부자재를 활용하고 제조간접비를 줄이면 開途國 企業들도 競爭優位를 확보할 수 있으며, 現地市場에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마케팅 노하우를 개발함으로써 競爭優位를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⁹⁹⁾

投資對象國의 비교우위요소와 企業特有的 競爭優位要素가 적절히 결합되어 투자 대상국의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는 投資가 이루어져야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現地事業에 성공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競爭優位를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中國의 지역별·산업별 발전전략에 부응하는 競爭優位要素를 부단히 창출하고 보완해 나가지 않으면 競爭優位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¹⁰⁰⁾

第 5 節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가 韓國經濟에 미치는 效果

97) 소도청(1985),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경제학적 접근”, 문진.

98) L. T. Wells(1983), “Third World Multinational The Rise of Foreign Investment from Developing Countries”, The MIT Press.

99) 김병순(2004. 12), 전개서, pp. 2607~2609 轉載.

100) M. E. Porter(1985), “Competitive Advantage Creating and Sustaining Superior Performance”, The Free Press.

급격히 증가하는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는 기업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韓國經濟 全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 증가는 원·부자재의 對中國 輸出을 노린 對中國 貿易收支 黒子 達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韓國內 産業 空洞化 촉발과 技術移轉의 부메랑 효과라는 부정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韓國經濟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절에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가 韓國經濟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對中國 投資企業의 賣出入 構造와 貿易收支

中國에 投資하고 있는 韓國企業의 대부분의 매출액을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통신포함)가 가장 많으며 화학, 섬유, 기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V-10> 참조).

<表 IV-10> 對中國 投資企業의 業種別 賣出과 買入의 構造

	매 출	매 입
섬 유	매출의 90% 이상을 제3국 또는 한국으로 수출	현지조달 및 제3국조달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상회
기 계	현지판매 비중이 매우 높음	한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음
전기전자 (통신포함)	한국에 대한 역수출 비중이 낮음	현지구매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음
화 학	제3국 수출, 중국 판매, 한국 수출 등의 순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	한국 및 중국에서 주로 조달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2004), p. 10.

그리고 對中國 投資企業은 매출의 6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는 반면 매입의 50% 이상은 수입에 의존하는 등 對外去來 指向的인 영업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는

對中國 投資企業들이 中國의 수출증대 및 貿易收支 黑子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출의 70% 이상은 제3국에 대한 수출이며 韓國에 대한 수출은 20% 내외에 불과하다. 그리고 輸入은 韓國에서의 수입이 거의 대부분이고,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0% 내외에 불과하다. 對中國 投資企業은 매출면에서 한국에 대한 依存度가 낮으나 매입면에서는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러한 영업패턴은 한국의 對中國 貿易收支 黑子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輸出·入 誘發效果의 추정을 통한 貿易收支 改善效果는 <표 IV-11>과 같다. 2003년의 경우 투자잔액 1달러당 對中國 輸出은 1.233 달러로 123.3%의 輸出誘發效果를 가져왔고, 투자잔액 1달러당 對中國 輸入은 0.885 달러로 輸入誘發效果는 88.5%로 나타났다. 따라서 對中國 投資의 貿易收支 改善效果는 이 두 효과의 차이인 34.8%로 추정되었다. 對中國 投資殘額 대비 貿易收支 改善效果를 시기적으로 보면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증가하다가 그 후 다시 감소하였고, 2003년에는 貿易收支 改善效果가 2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IV-11> 對中國 投資의 輸出·入 誘發效果 推移(1999~2003)

(단위 : 백만 달러, %)

	투자잔액 (A)	현지법인 수출		현지법인 수입		무역수지 개선효과 (B/A)-(C/A)
		금 액 (B)	수출유발효과 (B/A)	금 액 (C)	수입유발효과 (C/A)	
1999	2,281	983	43.1	641	28.1	15.0
2000	1,840	1,592	86.5	1,173	63.8	22.8
2001	2,010	1,416	70.4	1,076	53.5	16.9
2002	2,296	1,626	70.8	1,263	55.0	15.8
2003	2,439	3,007	123.3	2,159	88.5	34.8

자료 : <표 IV-1>과 동일.

향후 對中國 投資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海外依存度가 큰

한국경제에는 經濟成長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에 의하면 中國進出 企業의 부품조달 현지화에 따라 投資의 輸出誘發效果가 줄어들고 중국의 輸入代替가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對中國 輸出이 중장기적으로 위축되는 한편, 중국내 생산품의 技術競爭力이 제고되면서 한국으로 逆輸入하는 비중이 확대되어 중장기적으로는 對中國 輸入增加率이 對中國 輸出增加率을 크게 상회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⁰¹⁾ 이러한 전망은 현재 韓國이 누리고 있는 中國特需를 중장기적으로 지속해 나가는 힘들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이는 향후 中國의 추격에 대비한 競爭力 確保 努力과 동시에 적극적인 對中國 協力을 통해 한국의 對中國 輸出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2. 投資의 二重的 役割

급격히 증가하는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는 韓國經濟에 이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¹⁰²⁾ 첫째, 對中國 투자증가와 함께 기업내 무역의 증가에 따라 中間財의 輸出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對中國 輸出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生産과 관련된 中間財, 資本財 등이다. 나아가 對中國 投資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의 주요한 원인이다. 현지 진출기업이 원·부자재를 母企業이나 한국에서 조달하고 일부 생산품을 역수입하는 것은 對中國 貿易黑子の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둘째,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는 국내산업의 이전과 産業空洞化 現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韓國의 設備投資率이 급속히 하락하고 국내에서 投資機會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데 주요 원인이 있지만 企業들이 손쉽게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101)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2004), 『대중국 중장기 교역 전망』에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2004년까지 확대추세가 지속된 후 200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여 2011년부터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2) 박변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특성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5, pp. 43~44.

對中國 投資의 증가도 한 요인임에는 분명하다. 실제로 外換危機 이후 주춤했던 韓國의 對中國 投資는 2002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2년 1,333건에 8억 9,440만 달러의 투자로 전년대비 64.8%가 증가한 이후 2004년에는 22억 8,710만 달러로 2배 이상이 증가하였다(<표 IV-1> 참조).

韓國 製造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성격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域外輸出型 中小企業의 경우 가장 초기에 시작된 투자로서 現地の 저렴한 生産費用을 이용하여 우회수출용 제품을 생산한다. 원·부자재는 韓國이나 韓國 關係企業에서 더 많이 조달하고 있고 中國과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다. 둘째, 內需指向型 大企業들은 주로 現地市場을 지향하여 투자한다. 이런 기업들은 주로 1차 금속이나 브랜드를 갖춰 耐久消費財를 생산하는 대기업의 경우로 이런 기업은 대체로 中國市場을 타킷으로 하지만 생산품의 일부를 수출하기도 한다. 內需指向型 大企業의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반도체, 철강, 유화 등의 소재기업은 現地에서 판매하고, 전자 등의 경우에는 現地市場에 판매하거나 해외시장에 수출한다. 원·부자재는 韓國에서 도입하기도 하지만 점차 현지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企業들은 中國 內 現地販賣를 위해 中國이나 합작파트너와 전략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셋째, 內需供給型 部品企業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진출 형태로 진출하거나 大企業의 관계회사로 진출하는 경우이다. 기본적으로 所有優位는 조립대기업과의 밀접한 관계이며, 조립업체의 성과에 따라 이러한 企業의 收益性이나 經營成果가 달라진다는 특성이 있다. 일부 기업은 勞動集約度가 높은 일부 공정만을 가공해 국내로 逆輸入하기도 한다.

3. 輸出增加率 停滯 可能性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가 증가할수록 당분간 對中國 輸出은 증가할 것이다. 즉 한국기업이 生産過程에서 수직분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母企業이나 한국에서 部品

이나 素材를 조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의 對中國 輸出構造는 향후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輸出의 成長勢가 둔화될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¹⁰³⁾ 첫째, 中國이 部品 및 素材의 국산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中國企業들의 技術水準이 제고되고 신규기업들이 부품이나 소재부문에 投資를 확대하면 중국의 부품과 중간재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中國은 부품의 輸入代替를 위해 다국적 부품업체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韓國企業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多國籍企業들의 중국진출이 증가하면서 중국 내의 競爭이 치열해 질 때, 韓國企業은 경쟁압력에 직면하여 부품의 현지조달을 확대할 것이다. 이는 協力業體의 동반진출을 유도하거나 현지 기업들로부터의 部品購買를 더 늘릴 것임을 의미한다. 이미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고 있고 한국기업의 원·부자재 현지조달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多國籍企業들도 중국 내에서 市場을 擴大하기 위해 R&D 센터를 설립하는 등 中國의 소비자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경우에도 韓國의 對中國 部品 및 素材企業의 투자는 증가할 것이고, 向後 輸出增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中國의 수입수요 확대가 韓國經濟에 기여하는 긍정적 요소가 점차 감소하고, 오히려 향후 부정적 효과를 더 많이 갖게 될 수도 있다.

4. 産業空洞化에 미치는 效果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는 산업구조조정 촉진, 수출확대 유발 등 韓國經濟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國內 設備投資가 부진한 가운데 對中國 投資가 지나치게 빨리 증가하는 추세가 두드러져 韓國의 産業空洞化 促發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¹⁰⁴⁾

일반적으로 産業空洞化는 제조업의 활력 약화에 따라 國際競爭力이 상실된 산업

103) 상계논문, pp. 44~45.

104) 지만수 외 4인(2004. 12), 전게서, pp. 129~132.

이나 기업이 소멸되거나 海外로 生産基地를 이전시킴으로써 國內 産業基盤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新産業이 창출되거나 産業高度化가 발생하지 않고 産業構造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所得水準의 향상과 함께 製造業의 비중이 하락하는 脫工業化와는 다른 개념이다. 특히 海外直接投資가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경우는 비교우위분야의 國內 投資機會가 있음에도 이 분야에서 輸出代替·逆輸入型 投資가 해외에서 일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海外投資의 급속한 확대로 일부 특정산업 혹은 지역에서 企業의 海外移轉이 집중될 경우 심각한 經濟·社會的 問題가 발생할 수 있다. 韓國의 경우 아직 附加價值 側面에서는 제조업 비중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表 IV-12> GDP에서 製造業이 차지하는 比重 推移

(단위 : %)

	명목 GDP 비중	실질 GDP 비중	취업자수	경제성장률	총고정자본 형성증가율
1985	29.5	24.8	23.4	6.5	4.3
1990	28.9	28.0	27.2	9.0	25.9
1995	29.2	29.2	23.5	8.9	11.9
1997	28.7	29.5	21.2	4.7	-2.3
1998	30.5	29.0	19.5	-6.9	-22.9
1999	30.6	31.8	19.8	9.5	8.3
2000	31.3	33.8	20.2	8.5	12.2
2001	30.3	33.4	19.7	3.8	-0.2
2002	28.8	33.4	19.1	7.0	6.6

자료 : 한국은행 ECOS(www.bok.or.kr).

韓國 製造業의 附加價值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 IV-12>에서 보면 2002년 기준 28.8%로 1990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28.0%에서 오히려 2002년 33.4%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海

外直接投資에 따른 국내 제조기반이 무너지거나 貿易側面에서의 악순환은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韓國의 産業空洞化 程度를 일본, 대만과 비교 분석한 이지평·강승호의 연구¹⁰⁵⁾에 의하면 韓國의 製造業이 제조업 사업체수, 출하금액의 증가세가 1990년대 후반 들어 크게 둔화되고는 있지만 확대기조는 유지하고 있으며, 日本처럼 제조업의 쇠퇴현상이 가시화되었다고 간주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동 연구는 韓國, 日本, 臺灣 등 3국간의 제조업 경쟁력을 勞動生産性과 單位勞動費用을 기초로 비교할 경우 최근 韓國의 競爭力指數가 3국 중 가장 저조한 실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比較優位를 잃은 제조업의 공동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産業이 이를 메우지 못하면 失業問題가 심각해 질 수 있다. 실제로 일본과 대만은 失業率이 현격하게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韓國의 경우 탈공업화 현상이 고용측면에서는 뚜렷하지만 附加價值側面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韓國 製造業이 인원합리화, 자동화 등을 통해 附加價值 提高에 주력하여 활력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所得水準의 향상과 함께 제조업 비중이 하락하는 脫工業化의 선순환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억제되고 있는 製造業의 본격적 쇠퇴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非製造業의 선순환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産業空洞化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製造業 雇用比重의 급격한 감소가 한국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서비스산업의 勞動生産性이 製造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데 있다.¹⁰⁶⁾ 한국의 경우 外換危機를 계기로 제조업분야의 고용감소세가 가속화되었으나 비제조업분야의 비정규직중 등에서의 고용확대,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서의 就業 및 創業을 통한 고용이 확대되어 실업문제가 日本, 臺灣에 비해 심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低附加價值 勞動의 확대, 기술혁신 부진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서 所得水準의 안정적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海外投資의

105) 이지평·강승호(2004), 『일본 및 대만의 공동화 현황과 대응전략 연구』, LG경제연구원, p. 23.

106) Nam, Young Sook(2004), "China's Industrial Rise and the Challenges Facing Korea", East Asian Review, Vol. 16, No. 2.(Summer).

급증에 따른 製造業, 특히 중소기업의 雇用創出의 급속한 감소 가능성은 韓國經濟 전반 혹은 特定地域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第 6 節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의 問題點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進出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中國의 WTO 가입에 따른 中國 市場環境의 많은 변화에 따라 韓國企業들이 직면할 문제점들은 中國의 보복성 수입제한 조치와 시장진입은 수월하나 경쟁심화로 생존상의 위협, 韓國企業의 중국 내 消費市場 進出基盤 微弱, 법규·정책의 중요성 및 성실한 파트너 선택의 어려움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中國의 WTO 가입 이후 多國籍企業들을 중심으로 세계 각 국의 企業들은 中國市場 進出加速化로 과다경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中國企業과의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 中國企業은 노동집약적인 제품에서 韓國企業보다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WTO 가입 이후 원자재·부품 수입관세 인하, 그리고 외국에서의 수입쿼터 철폐 등으로 말미암아 中國企業의 價格 및 品質競爭力이 더욱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中國市場으로의 진입은 수월해졌지만 경쟁이 매우 격화되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WTO 가입 이전에 주로 單獨投資方式으로 生産基地移轉型을 취한 韓國企業은 중국이 그 동안 流通業 開放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중국 내에는 流通網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통망을 가진 중국파트너도 없었다. 그러나 WTO 가입 이후 그 동안 제한되었던 유통업이 개방됨에 따라 韓國企業들은 中國市場을 겨냥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기업은 아직까지는 유통업 진출 경험 부족으로 중국 내 소비시장 기반이 매우 미약하다.

여기에 中國의 經濟改革·開放과 WTO 가입에 따라 外國人投資에 대한 법규·정책이 규범화되고 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中國에 관한 법규와 관세의 관계를 다

시 인식해야 된다. 韓國企業은 중국의 판시를 중요시해야 하지만 법도 철저히 알아야 한다. 법규의 허용범위 내에서 기존의 판시를 잘 활용하면 성공적인 投資가 될 수 있다. 中國은 계속해서 法制化를 강조하기 때문에 ‘血緣, 地緣, 學緣’처럼 판시에만 의존한 사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中國이 WTO 가입 이후에도 통신·서비스분야 등 제한되었던 市場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개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韓國企業이 이런 분야에 진출하려면 中國企業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판시가 중요시되는 中國社會에서 進出企業의 競爭力은 중국 내 파트너쉽에 좌우되는 측면이 많지만, 합작파트너를 선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적절한 파트너의 선정문제는 더욱 더 핵심적인 애로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¹⁰⁷⁾

따라서 이러한 배경하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中國의 投資環境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1. 對中國 投資에서 나타나는 問題點

中國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투자대상 지역이다. 1990년 이후 매년 아시아 開途國 海外直接投資 流入의 30% 이상이 中國에 집중될 정도로 중국에 대한 투자 열기는 대단하다. 더구나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시장선점 전략을 구사하는 歐美 先進企業들의 投資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그리고 中國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한 歐美 先進企業들의 投資도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對中國 投資에서 점차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분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韓國企業들은 對中國 投資의 중요성을 걸으로는 끊임없이 강조해 왔었지만, 실제 對中國 投資는 최근 수년간 오히려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1998년 이후 對中國 投資는 다음과 같은 문제

107) 윤기관(2003. 9),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전략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중국투자 촉진 방안”, 『무역학회지』 제28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pp. 206~207.

점들을 보이고 있다.

가. 中國에 대한 事前 情報不足

中國에 投資하려는 한국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中國에 대한 情報不足이다. 사전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사업의 妥當性 分析 및 投資戰略 樹立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결국 對中國 投資의 직접적인 실패요인으로 연결된다. 치밀한 사전정보 수집 및 준비가 없이 海外直接投資를 실행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되면서 원래의 事業目的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편 中國市場에 대한 조사 및 연구부족으로 인한 情報不在가 기업의 사회적·문화적·법률적 환경이 다르고, 勞動力의 教育을 통한 능력배양, 일반 거래관행에 따른 관습의 상이 등으로 이를 한국기업이 인지하고 습득하는데 오랜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投資 이전에 철저한 調査와 더불어 이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 對中國 投資件當 規模 減少

2005년 현재 한국의 對中國 投資는 전체적으로 투자건당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최근 中國에 투자하는 外國企業들의 평균 투자건당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투자건당 규모의 축소는 투자협상 과정에서 企業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規模의 經濟를 달성하기 어렵게 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공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더구나 中國政府도 점점 소규모 투자보다는 자국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유도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건당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外國企業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勞動集約的 製造業에 投資業種 集中

韓國의 對中國 投資는 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勞動集約的 製造業部門의 많은 企業들이 韓國 國內의 생산비용 상승 등 투자환경 악화로 인하여 생산공장을 中國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企業들은 주로 中小 企業으로서 대부분 原資材와 核心部品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中國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공한 후 한국이나 제3국에 수출하는 경영형태를 갖는다. 최근 한국의 對中國 投資는 대기업의 진출이 증가하였고, 비제조업 기업들의 投資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投資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勞動集約的 製造業部門의 집중투자 현상은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입장에서는 產業間 不均衡을 초래할 수 있고, 한국입장에서는 投資의 다양화 추진에 매우 불리한 요인이 되고 있다.

라. 東北3省과 環渤海灣地域에 投資 偏重

韓國의 대중국 투자는 東北3省과 環渤海灣地域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주로 韓國이 이 지역에 대하여 지리상의 인접성, 문화의 유사성을 갖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하여 經濟合作의 比較優位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特定地域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정보비용과 투자비용 및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이 中國의 社會·經濟的 制度나 特性과 융화되어 최근에는 외국인투자기업간의 과당경쟁으로 오히려 직접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내수시장 개척을 목표로 하는 企業들을 중심으로 기타 지역에 대한 投資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東北3省과 環渤海灣地域에 대한 편중성은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입장에서는 지역간 발전의 불균

형을 초래할 수 있고, 韓國立場에서는 投資地域의 확대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현재 中國政府는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서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내륙지역의 각 地方政府는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해 지방세 감면, 내수판매 비율 완화 등 특별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연해지역에 이미 확보한 生産 및 販賣據點을 기반으로 삼고 중서부내륙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내수시장 개척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獨自投資 選好

對中國 投資 韓國企業은 투자방식에 있어서 독자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費用節減型和 生産據點型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들 企業들은 投資企業의 경영권 확보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현지 파트너와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뿐만 아니라 현지 제도의 잦은 변경과 不確實性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中國立場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관리와 외국기술 습득의 어려움, 국내 유희노동력 활용의 한계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고, 한국입장에서는 內需市場 開拓의 어려움과 기업의 현지화 실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¹⁰⁸⁾

바. 商品의 高級化 이미지 實現 未洽

中國은 내국기업과 외국기업, 그리고 다국적기업이 서로 공존하는 가운데 경쟁하는 시장이다. 中國에 投資한 많은 한국기업은 중국내 내수시장 공략을 희망하고 있지만 中國 內需市場에서 고급제품 이미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국민소

108)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630.

득수준 향상, 대외개방폭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입 증가 등에 따라 中國 消費者들의 수요와 기대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中國 內需市場에서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제품을 高級化시키고 제품의 附加價値를 높여야 한다. 하지만 對中國 投資 韓國企業들은 대부분 技術水準이 낮은 경공업, 방직업 등 노동집약적 분야의 진출이 많고, 한편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밥솥 등 소비재 업종이다. 이러한 業種에 투자한 기업들은 때때로 중국시장 내에서 中國企業과의 치열한 경쟁관계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韓國企業은 품질이 뛰어난 고급제품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⁰⁹⁾

사. 企業의 現地化 水準 未洽

中國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은 企業의 現地化를 매우 중시하는데 비해 한국기업의 현지화 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外國企業의 경우 기업이 요구하는 원·부자재를 대부분 현지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관리자와 업무담당자 등 企業의 管理人力뿐만 아니라 최고관리자까지도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企業의 경우는 원·부자재를 대부분 韓國을 비롯한 해외에서의 輸入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최고관리자부터 중간간부, 심지어는 평사원까지 韓國人을 고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많은 中國人 勤勞者들은 한국기업에서 몇 개월 또는 몇 년간 근무하다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企業의 장기적인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經營現地化는 현지 우수인력의 조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요소이지만, 현지 韓國企業들은 현지 경영관리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현지 경영성과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9) 노키아는 중국시장의 선발전입자로서 저가격대의 PCS를 판매하고 있으나 후발전입자인 삼성전자의 애니콜 PCS는 고급·고가이미지 실현을 통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외에도 태평양 립스틱, 하이파이버 울시, 미용실 이가자, 오리온 초코파이, LG에어컨 등은 철저한 고품질, 고가전략을 통하여 고급브랜드를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킨 성공 사례들이다.

2. 中國의 投資環境에서 나타나는 問題點

中國은 WTO 가입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를 國際規範에 부합하도록 많은 投資環境을 개선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다음은 中國側의 投資環境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가. 中國政府의 經營干涉

中國政府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간섭은 고용 및 해고, 임금수준, 기업경영성과, 노무관리, 그리고 다양한 요금이나 수수료 징수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雇用に 있어서 행정구역내의 人力을 먼저 고용토록 하거나 인사청탁을 하는 경우도 많고 解雇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압력을 배제할 수 없다. 賃金引上 壓力은 특히 저임금 노동집약형 경공업의 경우이고, 내수시장형 기술집약형 업종의 경우엔(특히 미국기업들) 임금인상 자제압력을 가할 때가 많다. 勞務管理에 대한 간섭 중에 매우 심각한 것은 投資企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 구성을 요구하고 노조위원장을 파견 또는 선임하거나 勞使紛糾를 일으켜 임금문제를 거론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부당한 사례 외에도 찬조금이나 수수료를 징수하는 준조세 형태도 한국내의 慣習과 비슷하지만 부담은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中國特有的 商慣行

中國式 商慣行은 거래자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행이다. 中國은 經濟改革·開放의 기조와 더불어 WTO에 가입한 국가이지만 外國企業과의 거래에서 계약취소 및 불이행, 미수금 문제 등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이다. 地域에 따라 다소 차

이는 있지만 中國業者들이 담합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원료조달이나 기타 상행위에서 방해를 조장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中國의 전통적인 商慣行이 수요·공급자, 生産者와 流通業者 사이에서 비밀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 外國企業들에 있어서 황당한 경우가 많다. 한편 이들의 인맥을 중시하는 ‘관시’ 상관행은 참으로 어렵다. 중국 본토인과 화교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무형의 관계 속에 정보 통로가 있으며, 이 통로를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계획된 事業의 成功與否가 결정되고 영향을 받을 때, 이러한 商慣行으로 인한 投資環境의 불확실 문제는 中國投資의 결정과 사업과정에 있어 매우 크게 느껴진다.

다. 內需市場 保護

중국은 內需市場 保護를 위해 직접적으로 인허가 단계에서 投資企業이 제안하는 투자방식, 기술수준, 현지화 정도, 그리고 수출과 내수 비율을 조정·간섭하고 있다. 즉 外國人投資企業側이 요구하는 내수시장 개방정도에 따라 반대급부로 이에 상응하는 投資方式이나 기술이전 수준 혹은 조건, 그리고 현지화 정도를 요구하며, 內需市場 개방정도가 클수록 技術導入 條件을 투자기업에게 까다롭게 요구하고 현지화 정도도 강화시킨다. 外國企業이 중국 내에 진출한 이후에도 계속 輸出比率을 높이거나 현지화 비율을 높게 요구하면서 자국내 시장을 보호하려고 한다.

라. 中國內 勞動力의 移動性 制限

中國에는 중국특유의 주민등록제도가 있어 農村과 都市間의 근로자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당안이란 것이 있어 일반 노동자·농민과 고등교육을 받은 事務職 勤勞者들이 따로 따로 관리되기 때문에 현기업에서 타기업으로 옮기는 데도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필요에 의해 보다 많은 勤勞者가 필요할 때에 필

요한 만큼 확보될 수 있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이 밖에도 住宅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을 소속기관이 부담하는 제도도 勞動力의 移動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마. 工業用地的 價格算定 難易

중국에서는 外國人의 土地所有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外國人投資企業은 필요한 工業用지를 임차하거나 중국측 파트너로부터의 출자에 의존하게 된다. 賃借者가 외국기업인 경우 用地使用料가 비교적 높게 부과되고 있으며, 용지사용료에 대한 전국적 표준이 없고, 地方에 따라 料率의 격차가 심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임차할 때마다 그 料率이 中國側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外國投資者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중국의 편향적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중국측의 用地價格 算定の 임의성은 외국기업의 사업추진에 있어 꺾어야 할 중요한 문제중 하나이며 한국의 對中國 投資企業도 예외는 아니다.

바. 從業員 雇用上的 問題

중국의 勞務管理 法規에 따르면 지방노동국이나 중국측 投資者의 알선뿐 아니라 신문, TV 등을 통한 모집광고 및 시험전형에 의한 자율적 인력채용도 가능하다. 그리고 해고의 권한도 勤勞成果 및 勤務態度가 불량하거나 유희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從業員을 解雇할 수 있는 권한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부여되고 있으나, 사회주의 특유의 勞動市場의 硬直성과 오랜 고용습관 때문에 外國人投資企業이 종업원의 採用과 解雇에 자율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고용체결시에 임시고용 기간을 두고 일정기간 경과 후 정식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다.

한편 중국측 합작선이 있는 合資 또는 合作企業의 경우 합작선의 종업원으로 熟練勞動者를 조달할 수 있어 어려움이 없으나, 投資者가 100% 전액 출자하는 독자기업의 경우 기존 직장의 방해 등으로 숙련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 뜻하지 않게 試生産 내지 教育訓練 등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中國에서는 숙련노동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勞動生産性이 낮아 낮은 임금수준이 곧 저렴한 生産原價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 따라서는 주택, 의료, 교통, 식량, 퇴직보조금 등이 무분별하게 外國人投資企業에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며, 현지 진출기업의 勞動組合은 근로자를 대표하여 合作企業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이행을 감독하며 기업측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 勞動生産性

勞動力이 있는 한 평생 일자리가 보장된다는 이른바 ‘전반석’(쇠밥그릇)이란 안일한 勞動意識에 젖어 있는 中國 勤勞者들에게 서구식 성과급제도와 근로규율로 노동성과 욕구를 자극하기는 매우 힘들다. 중국측 중간관리층은 生産·勞務管理의 효율성 제고와 管理能力이 부족하며, 직장의 공산당조직과의 원만한 유대관계를 더 중시하고 있다. 특히 中國人들은 새로 습득한 技術을 다른 동료에게 잘 가르쳐주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어 外國人投資企業의 교육훈련투자가 勞動生産性에 미치는 과급효과가 적고, 또한 教育水準이 보편적으로 낮고 생산과정에서 재료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어 對中國 投資企業들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

아. 文化的 問題

한국은 본래 역사적으로는 中國과 같은 文化圈에 속하므로 이러한 측면의 문화

적 갈등은 상대적으로 덜 겪게 되나, 體制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은 文化的 差異는 여전히 존재하며, 진출시 이를 최대한 면밀히 고려하여야 한다. 즉 中國의 지도층은 여전히 근본적으로는 소위 ‘中華’로 대변되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外國投資 및 技術導入은 한시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과거 자본주의 제국에 의한 유린 등을 염려하고 있는 등 미묘한 文化的 背景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대처 역시 요망된다.

第 V 章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活性化 方案

中國은 현재 국정의 최고목표를 경제건설에 두고 있으며, 經濟改革·開放을 단행한 뒤 경제시스템을 경제개발에 가장 적절한 형태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經濟活動 및 技術交流를 강화하기 위하여 輸出과 外國人投資 誘致의 增大를 주된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中國의 經濟改革·開放 以後 投資誘致政策에 발맞추어 중국에 많은 企業들이 투자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2004年 現在 中國의 GDP 貿易依存度は 44%이고,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1/3이 전면 개방되었고, 256개 업종 가운데 91%가 이미 外國人投資가 流入되었다. 이에 따라서 中國經濟는 이미 ‘세계의 工場’에서 ‘세계의 市場’으로 세계경제 속에서 그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對外開放의 확대는 資本과 技術, 새로운 消費部門을 창출하였으며,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 초일류 多國籍企業의 대중국 투자전략 변화에서도 극명하게 입증되고 있다. 즉 이들은 중국투자 전략을 자신들의 世界化 戰略에 적극 편입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략적 위상을 강화시키고 있다.¹¹⁰⁾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第II章~第IV章에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活性化를 위한 投資戰略과 投資活性化 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 1 節 對中國 投資活性化를 위한 投資戰略

110) 유희문 외 11인(2004), 전계서, pp. 448~449.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야말로 언어, 관습, 문화, 법률이 다른 국가에서 企業活動을 하는 것이므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냉철한 판단이 기초가 된 효율적인 對中國 投資戰略이 필요하다. 사전 준비 없이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이 존재하는 中國이기에 무엇이든지 가능할 거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中國에 진출한다면 결과는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中國에 진출하여 대중국 투자를 하기 전에 철저한 사전준비와 進出企業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완벽한 投資戰略을 세워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對中國 投資를 위해 먼저 中國進出의 목적이 生産原價 節減型投資인가, 아니면 內需市場販賣型 投資인가를 확실히 해야 한다. 대부분 投資進出業體들이 ‘먼저 生産原價節減을 위해 投資하고, 기회를 봐서 內需販賣를 하고 싶다’는 양면적인 진출 목적을 밝히고 있으나, 生産原價節減型 投資와 內需市場販賣型 投資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위한 관계자들은 명확히 해야 한다.

生産原價節減型 投資는 생산라인 이전을 통한 현지제조 및 海外販路에 대한 수출업무에 국한되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內需市場販賣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投資初期부터 시장조사와 제품개발부터 판매망 구축, 대금회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체제구축과 이를 전담하는 관리인력의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 生産原價節減型 投資戰略

현지생산 대상품목의 製造原價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항목별로 原價節減의 가능성과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대중국 투자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보기로 한다. 외국에서의 사업운영에 따른 각종 리스크와 부대비용을 감안한다면, 40%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없다면 기업의 기본 목적인

利潤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韓國과 中國의 인건비 비교는 生産效率性의 격차를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中國은 韓國보다 인건비가 훨씬 낮은 대신에 韓國 같으면 한 명이 필요한 자리에 여러 명의 고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韓國人의 勞動生産性이 中國人에 비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從業員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機密을 요하는 工程에는 여러 명에게 일을 분할시킬 필요성도 생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直接人件費의 비율이 높지 않은 高附加價值型 事業의 경우 단순히 원가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국 투자의 이점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인 주재인력에 투입되는 경비는 전체 관리비용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최대한 낮추느냐가 中國事業의 수익성 확보에 관건이 된다. 그리고 管理·技術人力의 현지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生産原價節減에는 부품과 원자재의 현지조달률의 확대가 관건이다. 投資 檢討段階에서 현지조달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주요 현지조달 소요품목에 대해서는 품질, 단가, 가격, 수량, 물품인도, 결제 및 검사조건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고기능 부품이나 特殊部品の 조달은 현지 메이커의 기술수준을 충분히 확인한 후 이뤄져야 한다. 기술지원을 통해 現地企業에게 부품을 개발시킬 경우, 技術情報의 流出防止와 지적재산권 보호측면에서의 만전의 대책이 필요하다. 中國에서는 地理的 與件이나 정보유통 제약 등 문제로 韓國에 비해 현지조달 관련 정보수집이 매우 어렵다. 최근에는 中國政府의 投資誘致와 관련한 정보지를 비롯한 産業情報誌 등도 발간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며, 정확한 정보는 전시회를 참가하거나 企業訪問 등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수집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中國에서는 부품 현지조달처 발굴과 마찬가지로 외부협력공장의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투자검토 단계에서 外部加工處의 소재지와 조달 및 생산능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中國業體들은 품질과 납기 준수意識이 韓國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中國市場은 어떤 부문이든 업체들이 난립해 있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불량 원자재와 부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외부업체의 製造工程과는 상관없이 불량품이 제조되어 공급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설비를 韓國에서 반입할 것인가, 현지에서 조달 할 것인가에 따라 상당한 원가의 차이가 발생한다. 현지조달시 원가절감면에서 유리하나 설비 성능측면에 주의가 필요하다. 中古設備를 반입할 경우, 初期投資費를 낮출 수 있으나 최근 중고 설비의 수입은 中國政府의 엄격한 규제조치로 매우 까다로운 通關節次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¹¹¹⁾

2. 內需市場販賣型 投資戰略

內需販賣를 목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우선 자사제품의 시장규모와 장래성, 경쟁 정도와 판매방법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中國의 법 규정, 세무·회계제도 파악 및 각종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事前 管理方案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것은 生産과 營業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체계적인 組織構築과 전문 관리인력이 요구되며, 損益分岐點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버티기 위해서는 初期 投資資金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자금여력이 필요하므로 投資檢討 段階에서 자사의 실행능력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일정 기간 내 투자금의 회수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시장규모의 존재 여부와 自社製品의 品質, 가격대에 맞는 市場需要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자사 아이템이 유망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유출과 경쟁업체의 출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도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만한 독보적인 技術力과 開發能力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에서 新製品開發과 생산관리(납기 및 품질) 강화는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충분조건으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기업들이 향후 기존의

1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 3), 전계서, pp. 12~15.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문제에 대한 의식을 정확히 해야 하며, 중국기업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고 향후 內需市場 確保가 관건이다.¹¹²⁾

中國市場에서 한국제품의 판매가격은 中國 現地企業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그 가격차를 자사제품의 어떤 것으로 메울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信用去來制度가 성숙되지 않은 中國에서는 認知度나 신용도면에서 앞서 진출한 企業이 이점이 큰 시장이므로 선발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경쟁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그리고 내수판매는 中國의 어떤 지역을 목표로 할 것인지, 어떤 거래선을 상대할 것인지, 대금결제와 판매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營業戰略의 수립과 실제 시장에서 유효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¹¹³⁾

3. 對中國 投資企業의 地域別 投資戰略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기업의 투자전략을 東部沿海地域, 東北3省地域, 西部地域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東部沿海地域에 대한 投資戰略¹¹⁴⁾

中國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는 동부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 동부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면, ① 북경, 천진, 하북성, 산둥성 등 환발해만 지역, ② 상해, 강소성, 절강성 등 장강삼각주 지역, ③ 광둥성, 복건성 등 주강삼각주 지역 등이다.

중국의 경제개혁·개방정책 이후 동부연해지역의 1인당 GDP는 크게 상승하여

112) 강승호·김진경(2004. 12), 『청도 진출 인천기업 실태조사』, IDI연구보고서 2004-22, 인천발전연구원, p. 69.

1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 3), 전계서, pp. 17~18.

114) 김병순(2004. 12), 전계서, p. 2615.

광주, 북경, 상해 등의 소득수준은 중소득 이상의 他國家 水準에 이르렀으며, 購買力評價 基準으로 보면 中·上所得 이상의 國家水準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동부연해지역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가 과거의 가공산업에서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資本集約的 産業과 技術集約的 産業에 대한 투자로 전환되고 있어 기존 투자기업이나 신규 투자기업 모두 새로운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기업차원의 구체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東部沿海地域은 사회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港口에 隣接하여 있기 때문에 中國 內需市場과 輸出을 병행하는 투자전략이 바람직하다. 특히 국내 본사와 중국 현지법인과의 수출입 활동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하여야 한다. 즉 本사와 中國 現地法人間에 기업 내 분업을 통해 技術流出을 방지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부품의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처럼 貿易과 海外直接投資를 보완적으로 실행하면 중국의 內需市場과 世界市場에서 모두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政策的인 次元에서도 산업공동화에 따른 손실보다 比較劣位分野의 해외이전에 따른 産業構造의 高度화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國際收支의 改善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東部沿海地域에 인구 500만명 이상의 대도시 13곳의 총인구가 1억 명에 달하여 市場規模가 클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의 소득수준이 높아 有效需要가 많다. 그리고 東部沿海地域은 시장개방 정도가 높아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이곳은 브랜드 중심의 高附加價值 製品을 가지고 내수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체브랜드가 없이 注文者 商標에 의한 OEM방식의 수출을 했던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자체브랜드를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IT 등 첨단산업분야의 海外輸出基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한 尖端産業 爲主의 産業構造 高度化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總輸出에서 첨단제품 및 기계설비 제품의 수출비중이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外國人投資企業의 수출실적이 압도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다. 따

라서 中國이 아직 國際競爭力을 갖추지 못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중국현지에 해외수출기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는 情報化로 工業化를 발전시키고 공업화로 정보화를 촉진하겠다는 목표하에 첨단산업분야를 육성하려는 産業政策을 추진하고 있어 技術 및 資本集約的인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대량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供給過剩 狀態에 있으나, 아직 技術集約的 高級製品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競爭力을 갖춘 한국기업이 현지 기반을 구축하기는 그 만큼 용이하다고 하겠다.

나. 東北3省地域에 대한 投資戰略

東北3省은 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 등으로 요녕성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經濟改革·開放에서 소외되었고, 국유기업 비중이 높아 經濟의 活力이 떨어지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創造的인 思考를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분야의 진출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동북3성지역으로의 진출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부터 추진된 東北3省의 개발은 중화학공업 위주의 老後設備 交替와 技術導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韓國企業들은 이런 중화학공업의 재건 계획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重化學工業分野의 노후설비 교체사업은 한국기업이 경제개발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競爭優位를 점할 수 있다. 또한 국내기업 중 플랜트수출분야에서 國際競爭力을 확보하고 있는 企業들은 설비의 교체와 운영에 있어서 技術的 優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근접성에 따르는 費用上의 優位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기업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둘째, 東北3省은 기계 관련 기술자와 熟練技能工 등 기술인력이 비교적 풍부하기 때문에 공작기계분야 등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所得 및 賃金이 沿海地域에 비해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勞動力의 質的水準도 높은 편이어서 인적자원

인프라가 좋은 편이다.

셋째, 교통요충지역으로의 이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東北地域은 육로로는 러시아, 蒙古, 韓半島에 이르는 주변국가들과 연결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강점이다. 이는 東北地域이 일본, 시베리아 철도와 몽고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통하는 허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점이야 말로 해외를 통하는 육로를 지니지 못한 華南·華東地域에는 없는 동북지역만의 우위성이다. 그리고 2003년 7월에는 ‘중화의 별’이라는 최고시속 320km의 고속전철이 시험운행을 하였다.

넷째, 都市化가 되는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동북지역은 높은 소비수준을 보이고 있다. 동북지역은 消費市場 規模나 1인당 소비수준을 종합해서 보면 제4의 경제권이며, 이점이 消費市場으로서의 동북지역의 潛在力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內需市場을 위한 직접투자에도 유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文化的인 類似性과 朝鮮族 僑胞들이 타지역에 비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韓國企業이 대중국 투자의 經營活動을 하는데 있어서 낮은 언어장벽 등의 접근성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또 대중국 투자시 접근성면에서 가장 유리한 수많은 華僑들이 타지역에 비해 東北3省으로의 진출이 적은 편으로 企業間의 競爭力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¹¹⁵⁾

다. 西部地域에 대한 投資戰略

中國의 西部地域이라 하면 중경, 사천성, 귀주성 등 12개 지방을 가리킨다. 西部地域은 중국에서도 邊方地域으로 소수민족이 집단 거주하는 貧困地域이다. 한국은 서부대개발 공동협력을 위한 민간차원에서의 韓·中 中國西部大開發協力委員會의

115) 강승호 외 8인(2004. 6), 전계서, pp. 45~49.

설치를 합의하였다.¹¹⁶⁾ 그리고 中國政府는 西部大開發을 통하여 동부와 서부지역의 지역간 격차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東部地域에 기진출한 한국기업은 그간에 축적한 현지사업 경험과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중국사업 전체로서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西部地域으로의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西部地域은 産業이 중국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생산제품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農村住民의 所得增大를 위해 都市化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류·플라스틱·자동차부품·건축자재 등의 勞動集約的 産業 중에서 고부가가치 제품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西部地域에 대한 IT산업분야의 투자는 위험은 크지만 市場先占이라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서부지역 가운데 科學技術人力이 풍부한 西安, 成都로의 진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원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도 위험은 크지만 부족한 資源確保라는 장점이 있어 政策的 次元에서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西部地域은 경제개혁·개방의 지연으로 保守的·閉鎖的·排他的 性向이 강하기 때문에 합작투자방식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東部沿海地域에 진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技術流出 등을 우려해 단독투자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西部大開發過程에서 소요되는 고급 원·부자재의 생산을 위한 投資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西部地域은 고급원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輸入代替型 外國人直接投資는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4. 政府次元의 投資支援 戰略

한국의 對中國 經濟協力과 투자는 앞으로도 상당한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116) http://cafe.naver.com/6303120.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16

되는데 中國에 대한 交易과 投資가 확대될수록 韓國經濟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이다. 對內的으로는 중국경제의 活況과 양국경제의 상호 보완성, 對外的으로는 선진국의 知的財産權 強化와 시장개방 압력, 多國籍企業들의 글로벌화전략과 기술보호주의 등의 요인들이 한·중 양국의 經濟協力을 확대시키는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中國은 計劃經濟와 시장경제,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국유경제와 사유경제 등이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있고, 沿岸地域과 內陸地域間的 경제적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어 지방정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등 對中國 投資戰略을 확립하는데 단편적 시각을 갖고 투자를 계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中國을 하나의 國家로 간주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地域別·産業別로 구분하여 투자방식과 형태 등을 달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중국은 韓國의 최대 經濟協力 同伴者로 부상하였으며, 이와 같은 대외경제협력 구조의 변화는 韓國의 産業構造에도 상당한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世界 最大市場으로 부상한 중국을 한국의 生産基地 및 內需市場과 輸出市場으로 적극 개척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對中 協力構造를 산업간 분업에서 산업내 분업으로 확대 전환하고 이를 政府의 産業政策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中國政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産業構造 高度化政策과 그에 따른 한국과의 競爭可能性에 대해서도 충분한 政府次元의 정책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中國政府는 '90년대 중반부터 4대 전략산업 위주의 産業構造 高度化戰略을 추진하고 있으며 投資誘致政策을 이와 연계시키고 있다. 이들 산업은 그 특성상 投資規模가 크고 소수업체에 한해서 진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中國政府는 효율적인 外國人投資 誘致를 위해 다국적기업들의 경쟁을 최대한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IT, 半導體, 石油化學, 自動車産業에서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中國의 경제체제 특성상 重化學工業과 SOC 관련 대규모 투자사업의 中國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정부이며,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情報는 정부로 취합된다. 반면 韓國企業은 관련 情報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분산되어 있어 협상과정

에서 항상 열세에 놓여 있으며, 특히 韓國企業들간의 競爭이 치열할 경우 競爭會社의 약점을 서로 노출시켜 협상에서 극도로 불리해질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中國의 獨占的 體制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韓國政府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효율적인 情報蒐集·分析·分配體制를 마련해야 한다. 인구 13억의 中國을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情報를 수집·분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中國의 실물경제에 대한 效率的 情報를 개발하고 수집된 情報가 필요한 업체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신속한 情報 分配體制를 구축하는 것은 政府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第 2 節 對中國 投資活性化 方案

中國 내 韓國企業의 가장 큰 문제점은 中國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준의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內需市場 開拓도 가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없이 투자하는 企業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對中國 直接投資의 대부분을 점하는 對中國 投資企業의 경우 제품 브랜드와 기술, 마케팅 능력 등 海外投資 經驗이 부족한데다가 中國의 변화무쌍한 投資環境에 적응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企業特有의 競爭優位 要素가 약하고 핵심역량이 부족하면서도 다른 企業을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中國의 市場開拓과 擴大를 위해서는 본사 및 현지 자회사차원의 다양한 投資活性化 方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中國시장 내에서 韓國企業이 競爭力의 確保와 強化를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다음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中國 政府政策에 대한 活性化 方案

가. 中國政府의 政策變化에 柔軟한 對處

WTO 가입과 2008년 올림픽 유치 등으로 中國의 外國人直接投資 誘致를 통한 産業構造 高度化政策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中國政府는 2002년 4월부터 외국인투자정책 방향, 外國人投資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 부여 및 품목별 외국인투자 허가기준이 되는 “外國人投資指導方向規定”과 “外國人投資産業指導目錄”을 새로이 시행하여 이미 중국 내에서 과잉 생산되고 있거나 기술력이 저하된 제품의 生産과 投資는 제한하는 등 첨단산업 위주의 투자유치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¹¹⁷⁾ 최근 동 정책에 부응하여 多國籍企業의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통신, 석유화학 등 大規模 投資가 활발하다는 사실은 변화하는 中國 投資環境을 고려하지 못하고 제조업 위주의 投資로 인해서 이제는 명백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韓國企業들의 對 中國 投資政策에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미 진출해 있는 企業뿐만 아니라, 향후 對 中國 投資計劃을 가지고 있는 企業들의 중국 정책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능력 배양으로 中國側의 政策變化와 賃金上昇 등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진출 모델을 세울 필요가 있다.

中國은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政策基調를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안목에서의 中國進出은 市場環境 變化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市場環境과 制度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製品 技術水準과 販賣價格 등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¹¹⁸⁾

나. 中國 國有企業과의 競爭 回避

中國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에게 中國의 國有企業과의 경쟁을 가급적 피하라고 권

11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02. 6), 『중국투자환경과 투자사례』, pp. 2~3.

118) 이덕무·윤홍근(2003), “중국의 투자환경과 국내기업의 대중국 투자 증진방안”, 『지역발전연구』 제8권 제2호, p. 184.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中國의 國有企業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약점을 파고들며 무섭게 공격하여 倒産에 이르게까지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違法이나 犯法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위법행위나 범법행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中國社會가 원칙과 법을 존중하지 않는 無秩序한 사회로 보이는 것은 중국인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法과 規則의 약점과 허점을 노리기 때문이다. 마치 물이 진흙, 모래 및 부스러기 등의 약점을 노리는 것과 같다. 中國企業들이 외국인투자기업과 경쟁을 하게 되면 단순한 市場占有率 確保나 쟁취차원을 넘어 상대기업의 도산을 노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中國의 國有企業들이 중국정부로부터 보이지 않는 지원을 자본주의국가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中國의 國有企業의 경우 大企業이나 有名企業의 CEO는 대개 정부에서 임명된다. 따라서 CEO의 能力보다는 정치적 요인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中國에서는 기업과 행정, 기업과 정치, 그리고 기업과 정부간의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國有企業을 경영하는 데 있어 政府 및 行政機關의 간섭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지방의 大企業의 경우는 地方政府의 입김이 무척 강하여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점이 되기도 하지만 좋은 점이 되기도 한다. 企業이 적자에 허덕여도 좀처럼 倒産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기업에게는 좋은 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기업간 경쟁에서도 自社企業의 부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競爭이 戰爭과 흡사한 상태로 변질되곤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國有企業과의 가격경쟁을 하는 外國人投資企業들은 자칫 경영위기를 맞게 되는 수가 많다. 중국 국유기업과의 競爭回避 戰略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投資活性化를 위한 경영전략 중의 하나이다.

다. 政府間 協議體의 內實化

중국정부의 差別待遇가 한국의 중국 현지법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아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韓國의 對中國 投資가 확대될수록 중국정부의 關聯施策이 韓國의 對中國 投資企業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¹¹⁹⁾ 예컨대 知的財産權 保護에 대한 중국의 이행력 문제, 통관 및 검역절차 합리화, 각종 제도의 투명성 제고, 인력연수 및 교환을 위한 입출국 허가, 과실송금 보장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韓國의 중국 현지법인이 不利益을 입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對中國 投資企業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다 할 수 있다. 그 동안 韓國政府가 中國投資와 관련하여 별 다른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中國 現地法人들도 정부차원의 지원에 대해 별 다른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政府支援도 부족하고 대중국 투자기업이 韓國政府에 거는 기대도 미흡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中國 投資企業의 성과 제고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政府次元에서 구성되어 있는 中國과의 協議體를 내실있게 가동하여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投資企業의 政府支援 需要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投資形態에 대한 活性化 方案

가. 無形資產의 競爭力 強化

對中國 投資活性化를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再投資와 增資 등을 통해 중국 내 R&D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中國에 있어서

119) 김홍석·이영주(2003. 12), 『중국투자 중소기업의 현지적용비용과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pp. 201~203.

도 경쟁사에 비해 生産能力과 技術이 우위에 있지 않으면 價格, 品質, 技能面에서 경쟁우위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無形資産 競爭力은 기업이 타기업과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企業을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無形資産의 경쟁력 강화 전략은 일종의 지적재산권의 활용을 위한 海外投資이며, 카슨(R. Carson)에 따르면 ‘知的財産權이야말로 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資産이며 財産權의 所有가 다국적기업의 海外投資를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技術的인 側面에서의 R&D 또는 經營的인 側面에서의 마케팅활동 등의 변수가 海外投資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중요하며, 研究開發 能力이 중심이 된 기술력 우위와 마케팅 능력을 기초로 한 경영관리 능력 우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競爭的 優位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속적 우위 입장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競爭企業들이 쉽게 모방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競爭的 優位만 가지고는 확고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投資企業의 經營目標은 지속적인 경쟁적 우위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韓國 投資企業들이 계속하여 競爭的 優位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끊임없이 新製品을 개발할 수 있도록 R&D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야 하며, 특히 中國과 같이 보다 유리한 賃金과 勞動力으로 추월해 오는 나라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中國에 진출한 韓國企業들은 기술개발을 통한 生産性 向上에 전념해야만 中國에 대해 競爭的 優位를 지킬 수 있다.

技術開發은 장기적 투자와 장시간을 요함으로 단기적으로 中國市場 및 世界市場에서 多國籍企業들과의 경쟁에서 열위일 수밖에 없으므로, 마케팅전략을 통해 단기적인 우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中國企業을 통해 접할 수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고급이미지에 포지셔닝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中國 消費者들은 高價 및 高級이미지 제품을 모방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韓國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韓流 및 스포츠를 활용하여 최근 中國사회 내에서 신장되고 있는 女性 및 靑少年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나. 投資形態의 轉換

投資對象國의 전반적인 경제적 수준이 先進國인가, 아니면 開發國인가에 따라서 投資方法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生産效率性을 추구하는 投資인 경우에는 단독투자가 유리하고, 內需市場 進出을 추구하는 의도라면 合資投資가 비교적 목표달성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內需市場을 지향하려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방향을 고려하면 單獨投資를 선호하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형태는 合資투자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중국 투자전략이 生産效率性 投資인 점을 감안할 때, 韓國企業들이 단독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內需市場으로의 진출확대와 企業의 經營利潤 創出을 위해서는 현지 중국기업과의 合作投資에 보다 많은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 引受·合併(M&A)形態의 對中國 投資

中國政府의 외국인투자 유치방식의 하나로 引受·合併을 통한 대중국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引受·合併方式의 投資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中國政府의 국유기업의 개혁의지와 外國企業의 효율적인 중국시장 진출 요구가 서로 결합되면서 外國企業의 중국의 국유기업에 대한 M&A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中國의 國有企業의 재무상황이 투명하지 않은데다 매각대상 기업이 대부분 건설하지 못하고, 자본시장 개방도 미흡하여 실제로 外國人投資者가 引受·合併方式으로 중국에 진출한 경우는 2003년 기준 7.1% 수준으로 그리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표 V-1> 참조). 이는 開發途上國이나 타 아시아지역은 물론 전세계 수준과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投資與件 造成의 여지에 따라 對中國 投資에 있어서 引受·合併方式의 투자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¹²⁰⁾

<表 V-1> 外國人 直接投資額 中 引受・合併型 外國人直接投資 比率

(단위 : %)

년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세 계	63.8	76.9	70.5	82.4	72.7	54.4	53.1
중 국	4.2	1.8	3.4	5.5	5.0	3.9	7.1
개발도상국	35.0	44.1	32.9	29.7	41.9	28.3	24.5
남, 동, 동남아시아	19.3	18.4	28.4	16.1	35.1	24.0	20.8

자료 : 송영남(2005. 8), p. 1474.

引受・合併方式은 국유기업을 활용한 판매망 개척이 용이하고 생산가공 기지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內需市場 開拓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中國의 國有企業을 매수하면서 해당기업의 기존 공장과 건물을 개조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工場 新築期間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고 단기간 내에 공장의 가동이 가능해져 投資費用이 대폭 절감될 수 있다. 더욱이 2002년도 이후 中國政府는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와 관련한 새로운 법규를 잇달아 발표하였다. 또 2003년도에는 신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國有企業의 私有化와 構造調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外國企業의 국유기업 M&A를 적극 장려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분위기에 동반하여 향후 韓國企業이 대중국 투자시 中國의 國有企業과의 M&A를 통한 진출방안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引受・合併投資를 통한 투자시 중국 내 관련 법률 및 소유권 문제, 노사관계 등 障礙要因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國有企業이 아닌 市場과 流通網을 갖춘 우량 국유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대중국 투자가 필요하다.¹²¹⁾

120) 송영남(2005. 8), “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 저해요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아시아지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 『산업경제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산업경제학회, p. 1474.

3. 經營方式에 대한 活性化 方案

가. 徹底한 投資環境 分析과 事前準備

投資環境의 변화가 빠르고 지역별 법규적용의 편차와 不確實性이 높아 현지적용 비용이 높은 對中國 投資의 경우 투자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投資環境의 不確實性은 현지적용 비용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진출업체나 현지 지원기관, 중국정부 등을 통해 政策의 核心內容과 方向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치밀한 사전정보 수집 및 준비가 없이 海外直接投資를 실행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되면서 원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投資對象地域에 대한 投資決定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이 기간 중 현지국의 전반적인 投資 與件 및 해당 투자사업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 등에 관한 세밀한 現地國 事前調查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中國은 광대한 국토를 가진 나라로서, 각 지역별로도 다소 상이한 文化와 制度, 商慣行, 社會間接資本, 經營環境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중국전체를 대상으로 한 投資環境 分析에서 더 나아가 각 省(地域)別 投資環境도 세밀히 분석하여 투자지역을 선택하여야 한다. 投資 地域이 결정되면 투자지역의 投資環境에 대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투자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타당성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不確實性이 높은 부분이나 사후 분쟁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契約書에 명기하여 부용부담을 줄여야 한다.

나. 中國市場 內에서 戰略的 提携¹²¹⁾

121) 이덕무·윤홍근(2003), 전계논문, pp. 186~187.

중국 내 자회사의 投資財源이 넉넉지 않고, 本社의 支援도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지 자회사로서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중국시장 내에서 한국기업의 對中國 投資活性化를 위한 다른 外國人投資企業 혹은 中國企業과 공동 R&D,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을 위하여 戰略的 提携를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 投資業種의 多樣化

韓國企業들은 다른 外國企業에 비해 여전히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다. 실제 中國 勤勞者의 임금이 한국의 1/4 수준이라는 점과 外國人投資企業 增加로 최근 연해지방 대도시의 임금상승률이 연 10~30%라는 사실로 인해서 勞動集約的 産業의 제조업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投資는 더 이상 韓國企業들이 競爭優位를 확보하기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 및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尖端産業의 중국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尖端産業의 빠른 성장에 동참할 수 있다면 韓國企業들에게도 좋은 청신호가 될 것이다. 한편 中國은 西部地域開發을 강조하면서 이미 상당수준까지 발전한 남동부 연해지역에 대해서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外國投資를 誘致한다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韓國企業이 시장전망이 밝은 남동부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技術集約度가 높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의 中·西部地域으로의 投資와 尖端技術産業 開發과 관련된 投資에 대해서는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동등한 대우로 취급할 전망이다기 때문

122) 김익수(2005), 전계서, p. 550.

에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投資擴大를 통해 점진적인 시장개척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라. 現地人力 活用 擴大를 통한 內需市場 攻略

收益創出을 위해서는 제3국 수출 등 우회적인 방법보다는 現地 內需市場의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內需市場의 공략에 대한 기회는 技術과 資金이 허락한다면 일찍 진입할수록 더욱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좀 더 원활한 內需市場 攻略을 위해서 中國의 經濟政策과 친화적인 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경험이 풍부한 화교 인사들과의 人脈關係를 강화하여 동반진출이나 合資會社 設立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또 다른 전략으로 流通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요망된다. 예를 들면 韓國企業의 中國 內需市場 진출시 가장 큰 애로사항이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과 生産代金 未回收 등임을 감안할 때 대형슈퍼마켓, 할인점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流通市場에 진출하는 것은 韓國企業들의 시장개척 어려움과 외상매출액 증가에 따른 흑자도산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中國 內需市場을 공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現地化를 진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중국현지에 대한 철저한 事前調査와 研究로 현지에 대한 피상적인 표준이나 韓國式 經營만으로는 對中國 投資에서 실패하기 쉽기 때문에 中央政府와 各 省과의 유대관계를 위한 ‘관시’ 형성 등 현지문화와 동화하는데 주력하며, 韓國企業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문화를 창출하는 등 현지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企業文化의 장점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지 고급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現地化를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中國에는 단순노동력은 물론 고급인력도 풍부하다. 따라서 현지 우수인력의 적극적인 採用 및 昇進機會 保障, 從業員 育成을 위한 과감한 투자, 직원 복지제도 선진화 등으로

직원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經營效率도 제고시킬 수 있는 現地化의 努力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마. 事務室과 生産工場은 同一場所 位置

대부분의 韓國의 對中國 投資企業들은 販賣市場 中心部에 위치하
고 있어야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중국의 광범위한 시장
의 현실에서 販賣事務실을 공장사무실과는 별도로 두게 되면 販賣事務실 관리와
販賣管理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많다. 中國事業은 오너경영, 직접경영, 확인경영,
현장경영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販賣사무실과 공장사무실이 각기 다른
場所에 있으면 사장이나 현지의 管理責任者가 직접경영, 확인경영, 현장경영이 불
가능하게 되어 組織管理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저효율체제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販賣組織이나 공장의 生産組織이 적어도 사장이나 관리책임자의 관
리시아 바깥에 놓이면 효율적인 경영이 어렵다. 사장이나 관리책임자의 관리시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그 조직은 효율적인 경영을 이루기 어렵다.

바. 製造業 進出 前 輸入販賣 先試行 後 工場建設 決定

製造業에 투자하기 위해 공장건설을 결정하기 이전에 販賣를 먼저 시도하여 중
국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製品의 販賣가능성 및 事業의 성공가능성을 미리 측정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中國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을
한국에서 輸入하여 中國市場에 販賣를 해 보고 난 후 공장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전략인 것이다. 中國市場에서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情報보다 수면 아래에 잠복되
어 있는 潛伏性 情報이 더 많다. 情報의 실용성면에서도 수면 위에 있는 情報보다
수면 아래 정보의 實用價值가 더 큰 경우가 많다. 따라서 企業社會 전반에 걸쳐 不

確實性이 광범위하게 내재되어 있어 投資를 추진할 때 무척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이처럼 對中國 投資에서도 製造業에 바로 진출하지 말고, 販賣를 먼저 시도해 본 다음 공장을 세운 후 공장가동이 순조롭게 될 수 있겠다고 판단될 때 中國에 投資하여 공장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경험자들의 조언이며 대중국 투자의 실패를 최소화하는 올바른 경영방법이다.

사. 內需事業의 物流·配送·倉庫·通關·稅務業務은 아웃소싱을 利用

組織의 規模는 거래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코즈의 法則(Coase's Law)이다. 외부 조달비용과 내부 운용비용이 동일한 점에서 組織의 境界선이 결정된다는 것이 코즈의 법칙의 핵심 내용이다. 企業이 外部組織을 이용할 때 드는 외부조달비용이 자체 조직을 구축·운용할 때 드는 내부 운용비용보다 적게 되면 內部組織을 구축하지 않고 外部組織을 운용하게 된다는 것이 코즈의 법칙이다. 對中國 投資에서 자사인력을 활용하여 기업활동 전체를 활용할 경우, 組織이 방대해지고 이에 따라 방만한 經營으로 흐르기 쉽다. 특히 韓國人들이 이를 전부 관장하려 할 경우, 統制力이 기업전반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조직전체에 非效率과 低效率의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일부 업무는 별도로 떼어 外部業體에 일임하는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製品의 利潤率이 높아 일부 이익을 아웃소싱업체에 할애하더라도 企業의 利潤確保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¹²³⁾

아. 勞動組合(公會) 適切 活用

中國에서는 企業이 무리수를 두거나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勞動組合은

123) 신주식(2003), 『중국 비즈니스전략 308선』, 고려대학교 출판부, p. 150.

우군이 된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에 있어서의 勞動組合은 한국의 勞動組合과 같은 鬪爭的 性格의 조직이 아니고 家族的 性格의 조직에 가깝다고 설명하기도 하며, 그 이유를 中國人들의 가족중심의 의식구조에 잠재되어 있는 社會指向的인 사고방식에서 찾고 있다. 中國人은 가족관념이 매우 강한 민족이지만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環境과 現實을 매우 중시하는 민족이다. 그리고 他人의 견해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 自身の 주장을 굽히는 것을 中國人들의 민족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社會全體의 분위기에 곧잘 따르기도 하고 자주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기도 한다. 中國人의 이러한 習性은 그들의 情狀에 따르는 心理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중국인의 民族性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은 人間關係를 중시하고 社會關係를 중시하며 구성원간의 조화와 화목을 중시한다. 둘째, 他人의 의견을 중시하고 비판을 잘 받아들인다. 셋째, 對象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어디냐, 어떤 경우냐, 어느 시기냐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응한다. 넷째, 自身을 낮추고 社會規範과 전체의 의견에 순응한다. 다섯째, 中國人은 일이 잘못 되었을 경우 자신을 탓하고 외부의 탓 또는 社會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中國人의 국민성은 중국사회의 安定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본다. 中國의 기업경영에서 勞動組合의 행동양식이 과격하지 않고 경영층과 잘 화합하는 이유도 이런 中國人의 민족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中國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勞動組合을 경영층에 대한 대항세력으로 보지말고 協力과 事業의 同伴者로 보아야 하며, 그들과 相生하는 마음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시키는 대화의 전략이 필요하다.

자. 積極的인 ‘관시’ 戰略 活用

中國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중국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라는 말을 자주 한다. 도저히 안되는 일 같은 데도 어느 날 갑자기 술술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관시가 작용했기 때문이다.¹²⁴⁾

관시전략은 現地適應 費用을 줄이기 위해 韓國企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對中國 投資企業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현지적응 비용을 해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企業特有의 관시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관시네트워크는 기업이 成長하고 發展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現地經營에 미칠 수 있는 이해당사자의 관시네트워크에 대한 파악과 이에 대응하는 업체 나름의 관시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시구축에는 企業規模, 조직디자인, 진입방식, 中國에서의 經驗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관시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관시구축에는 合資企業이 바람직하지만 한국기업들이 선호하는 獨資企業도 관시구축을 염두에 두고 現地人을 採用한다면 관시구축과 관련하여 독자기업이 가지는 한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¹²⁵⁾ 한편 관시 쌓기는 돈과 시간이 요구되는 일종의 投資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관시는 依存하는게 아니라 活用하는 것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차. 高附加價值 戰略

中國市場 攻略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품질,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中國의 消費市場에서는 상품의 질, 브랜드 이미지 선호 등 消費의 兩極化, 高級化 現狀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¹²⁶⁾ 中國에서 富者들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를 ‘리치마케팅’, 혹은 ‘하이엔드마

124) 상계서, p. 42.

125) 김홍석·이영주(2003. 12), 전계서, pp. 199~200.

126) 강승호 외 8인(2004. 6), 전계서, p. 50.

케팅', '탑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는 고품질 제품으로 高價市場에서 승부를 걸어보자는 게 핵심이다. 리치마케팅이 필요한 이유는 적당한 수준의 品質을 갖춘 中低價 商品市場에는 너무나 많은 중국기업들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韓國企業이 발붙일 틈이 없다. 더욱이 中國은 고소득층을 조금만 벗어나면 구매력이 형편없이 떨어진다. 中國市場에서는 최고급 품질로 아주 비싸거나 적당한 品質로 아주 싸야만 성공한다. 그 만큼 中産層이 적고 貧富隔差가 심하다는 반증이다. 中國 消費者들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高價 및 高級이미지 製品을 모방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韓國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한류 및 스포츠를 활용하여 中國企業을 통해 접할 수 없는 製品과 서비스를 고급·고가 이미지에 포지셔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¹²⁷⁾

리치마케팅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21세기 中國戰略과도 맞아떨어진다. 中國市場에서 '한국제품은 비싸지만 좋다'는 이미지가 정착된다면 韓國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모든 제품군에서 中國보다 한 발 앞선 品質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을 무기로 고가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中國共產黨은 '자산가 계층도 이제 당원으로 끌어들이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중국의 13억 인구 중에 약 4%에 해당하는 消費者들이 리치마케팅의 수요자이며, 中國富者들은 사회 전면으로 나서서 더 왕성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며, 바로 그들을 노린 販賣戰略이 필요하다.

카. 國際經營人力の 確保·育成

海外投資는 기초자료 수집, 투자형태, 투자규모, 중국내 투자지역, 그리고 광범위한 投資環境調査 및 치밀한 事業妥當性 分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분석능력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國際經營人力の 確保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7) 한우덕(2002), 『뉴차이나 그들의 속도로 가라. WTO 가입 이후 중국 비즈니스전략 50』, 한국경제신문, pp. 219~223.

世界經濟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내시장은 갈수록 開放化 되어 가고 있으므로 外國企業과의 경쟁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人力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國際經營人力의 확보 및 육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海外投資의 成敗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기업들은 중국 현지근무에 필수요건인 中國語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他文化圈의 理解 및 適應力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이고, 현지근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이러한 國際經營人力들을 教育하고 양성하는데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러한 教育訓練과 더불어 유능한 국제경영인력들이 韓國企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써 能力에 상응하는 처우 및 보수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4. 對中國 投資企業의 現地化를 통한 活性化 方案

가. 人的資源의 現地化를 통한 優位確保

현지화란 投資對象國의 경제사정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企業의 경영을 피 투자국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投資國의 도움 없이 투자대상국 현지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즉 投資對象國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특성에 부합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이에선 生産人力의 현지화, 원·부자재 조달의 현지화, 마케팅의 현지화, 자금조달의 현지화, 연구개발의 현지화 등이 있다.

해외투자 초기단계에서는 母企業의 원조하에 企業을 영위하게 되지만 현지법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投資企業의 현지화가 필수적이다. 中國의 경우 해외 투자유치 초기에는 각종의 특혜를 주어 外國企業의 투자를 장려했지만 投資가 일정 수준에 이른 후에는 이러한 특혜를 점차 줄여가고 있으며, 따라서 현지법인 경쟁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企業의 現地化는 현지에서의 압력에

대한 대응이라는 방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現地에서 지속적으로 成長하기 위한 성공전략이라는 측면도 있다.

現地化는 먼저 人的資源 現地化에서 출발하는데, 성공적인 인적자원의 현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와 시간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다른 文化와 慣習을 가진 현지인을 이해하고 배우려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문화는 學習된 행위, 즉 生理적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닌 教育을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中國에 倣效되어야만 現地 勤勞者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人的資源을 現地化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中國人 管理者를 육성시켜서 중국인 종업원에 대한 勞務管理를 중국인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中國人 最高經營者를 육성하여 중국 현지 자회사의 경영전반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人的資源의 現地化와 더불어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원·부자재의 품질이 떨어지고, 적기에 조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生産量의 極大化에 치중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品質管理를 소홀히 하는 점과 道路·輸送體系의 미발달로 납기를 제때에 지키지 못하는 점이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納期の 遲延에 대비하여 사전에 미리 충분한 재고를 확보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며, 이러한 事前在庫 確保는 현지 자회사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원·부자재의 品質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원·부자재의 현지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資金調達의 現地化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현지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信用을 쌓아가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면 장기적으로 韓國企業들의 중국내 현지 금융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資金의 流動性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²⁸⁾

128)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630

나. 投資地域의 多變化

현재 한국의 對中國 投資企業의 西部地域 投資規模는 미비한 수준이다. 한국 종합상사들은 서부지역 진출 초기 설치한 지점을 거의 철수시켰으며, 필요에 따라 特定地域에 주재원을 파견하거나 대리점만 두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中國政府의 우대정책 약속으로 ‘東部地域의 사업기회가 풍부하여 西部地域은 진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태도에서 ‘東部沿岸地域은 규제강화와 경쟁격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西部地域으로의 생산설비 이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점차 西部地域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점진적 변화를 하고 있다.

西部地域은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다수 소재하고 있어 고급기술인력 확보가 용이한 편이며, 賃金水準도 동부지역에 비해 저렴하여 R&D 센터나 尖端技術産業 投資가 가능하며, 석유와 천연가스는 물론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 유기 EL 소재인 인광, 건전지 및 산화제로 이용되는 망간 외에 주요 합금소재인 주석, 티타늄, 안티몬, 텅스텐 등 비철금속 매장량이 풍부한 편으로 資源確保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진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WTO 가입에 따른 市場開放으로 동부 연안의 상해,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 전담했던 貿易, 物流, 流通機能의 분담이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서부지역 투자진출전략 구상단계로서, 中部와 西部, 南北을 연결하는 협서, 장강 중상류 지역의 중경·사천, 베트남과의 交易增加가 예상되는 운남, 광서 등지의 무역, 물류, 유통기능 부여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기업의 對中國 投資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投資地域의 多邊化를 모색하여 지금까지 편협된 동부지역만의 投資에서 벗어나 서부지역으로의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서부지역에서의 住民 및 官僚들의 의식수준이 보수적인 면 등 外國人投資의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점진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해서 진출해야 한다.

다. 投資地域別로 差別化된 事業戰略 摸索

中國市場은 연해지역이나 대륙지역이나에 따라 진출하는 業種이 달라진다. 內陸地域에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자원개발 및 물류 위주의 진출전략을 펴야 하고, 製品의 生産보다는 제품판매 위주의 진출전략을 펴야 한다. 製品을 生産하는 공장을 內陸地域에 건설하는 경우는 물류, 배송, 운송비가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工場과 販賣地域이 멀어짐으로써 조직관리상의 각종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어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한편 沿海地域의 大都市의 경우에는 생산 및 서비스 위주의 투자가 적합하다. 沿海의 대도시의 경우 주변에 大型市場이 많아 생산 위주의 投資를 할 경우 판매에서 유리한 편이고 서비스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서비스분야의 投資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上海와 같은 先進 大都市市場은 하이테크산업분야나 서비스산업분야가 아니면 진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쪽 地方政府로서는 이미 外國企業의 진출이 포화상태가 되어 있어 外國人投資企業의 投資를 선별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 대도시시장은 하이테크가 아닌 일반 제조업체 진출의 경우 公害問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外國人投資企業의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¹²⁹⁾

라. 現地 雇用人 優待 戰略

中國에 투자한 韓國企業들은 많은 수의 현지 중국인을 雇用하게 된다. 工場의 단순노동자로부터 중간관리자, 고급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국인을 현지에서 고용한다. 中國事業은 이들 현지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事業의 成敗가 달려 있

129) 신주식(2003), 전게서, p. 180.

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附加價值 創出에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韓國 投資者들은 중국인을 자기 부하로 생각하며 부리는 대상쯤으로 여겨, 그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高強度 勞動을 요구하기도 하며, 또 그들을 믿지 못해 중요한 일을 맡기지도 못한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때문에 事業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현지 직원들을 잘못 다루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¹³⁰⁾은 첫째, 現地人들을 信賴함으로써 그 믿음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 실제로 生産職 勤勞者의 경우 중국의 勞動生産性이 결코 한국의 노동생산성에 뒤지지 않는다. 深圳에 진출한 삼성SDI 공장의 직원 1인당 不良率이 서울보다 낮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社長이 직접 나서서 종업원과 하나됨을 보여줘야 하고, 從業員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되며 칭찬해주고 존중해 주려는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그들을 敎育시켜야 한다. 둘째, 中國의 勞動環境이 바뀌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所得水準 向上으로 중국 근로자의 期待水準이 높아짐으로써 돈보다 인간관계 등 人間價值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중국정부 역시 技術移轉 없는 단순 임가공분야는 반기지 않으며, 자국 근로자들의 희생을 더 이상 눈감지 않는다. 이제는 中國 勞動者들을 事業同伴者로 인식함으로써 조금 주고 많이 부리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최적의 勞動環境을 조성해 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그러면 중국 근로자들은 최고의 勞動生産性으로 보답할 것이다. 셋째, 現地人 雇用に 있어 高級管理者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줘야 한다. 韓國企業들은 현지 고급관리자를 채용하면서도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中國 現地人들에게 당신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면 어떤 면에서 어떤 經歷을 쌓을 수 있고, 우리 회사의 成長에 따라 당신은 어디까지 昇進할 수 있다는 등의 확실한 비전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그들을 영업전면에 내세워 販賣活動을 하게 하고 權限과 責任을 부여해 주며, 실적에 따라 그들을 과감히 승진시킴으로써 그들도 잘만

130) 한우덕(2002), 전개서, pp. 64~80.

하면 韓國企業의 경영자도 될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주어야 한다.

中國 勤勞者들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서 기회만 닿으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한다. 따라서 韓國企業에서 일하면 報酬도 좋을 뿐더러, 많은 것을 배우고, 내 뜻을 펼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어야만 有能한 人才를 많이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한국기업을 위한 근로자로 붙들어둘 수 있다.

마. 現場經營을 통한 內實化

現場經營이라 함은 오너와 경영진은 항상 현장에서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뜻이다. 中國事業의 성공전략은 현장을 장악하는데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中國語에 ‘칭청다저(層層打折)’라는 말이 있다. 經營層의 經營政策이 하부조직에 하달되는 과정에서 변질된다는 말이다. 또 ‘上面有政策, 下面有對策’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政策을 세우면 밑에서는 그 정책에 대항하는 대책을 세워 대항한다는 뜻인데, 실제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經營層은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自身の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고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現場을 중심으로 모든 情報를 수집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자신의 經營理念과 戰略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¹³¹⁾

바. 中國에 대한 該博한 智識 및 中國語 習得을 통한 經營

對中國 投資企業이 중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려면 경영자는 중국어에 능통해야 한다. 中國語에 능통하지 못하면 경영자가 통역을 위해 朝鮮族을 고용해야 하고, 조선족을 고용하면 자연히 그를 통해 모든 지시사항이 한족에게 전달된다. 이 경우

131) 신주식(2003), 전게서, pp. 243~245.

朝鮮族은 經營者의 힘을 빌어 자신이 힘있는 간부나 된 듯이 으쓱하게 될 것인데 이런 현상은 한국인과 조선족 그리고 한족간의 갈등을 야기하여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現地의 유력한 인사를 친구로 사귀려 할 경우 특히 中國語를 잘 구사해야 한다. 事業上의 機密을 요한 대화를 通譯을 통해 한다고 가정해 보면, 되어야 할 일도 그르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 결과가 투자실패로 귀결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工場과 寄宿舍에서 중국의 현지 직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經營者만이 중국투자사업에서 성공의 축배를 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韓國政府의 支援에 의한 活性化 方案

가. 經濟的 側面

中國에 대한 投資活性化를 위하여 국가가 취해야 할 政策·制度方向은 다음과 같다. 첫째, 韓·中 經濟協力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中國과의 經濟協力 環境은 무역, 투자보장협정, 과학기술협정, 해운협정, 우편 및 전기·통신협정, 환경보호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산업협력협정, 문화협정 등이 체결되었으며, 中國과의 經濟協力 環境은 점차 정착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韓·中 經濟協力の 發展에 따라 中國은 韓國의 제1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질적 향상을 기하며, 새로운 관계형성을 통한 相互發展 潛在力을 바탕으로 補完關係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協力的 經濟構造로 전환시켜야 한다.

둘째, 國內의 對中國 直接投資許可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節次를 보다 간소화·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許可基準을 해당사업의 기대수익률, 위험의 정도, 사업주체의 능력, 자금조달 방법, 國內경제에 대한 영향 및 외교안보적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하되, 정부측은 國內經濟에 대한 영향이나 外交安保의 側面보다 거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對中國 投資事業에 적용되는 예비검사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

셋째, 한·중간의 直接投資는 중국의 對外經濟政策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그 政策變化에 대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中國의 經濟開發戰略이나 개방조치 등 中國 經濟政策 變化에 대한 연구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對中國 投資 및 기타 중국과의 경제교류와 관련하여 필요한 情報를 제공하는 통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 경제단체, 상사, 실무진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 정부관련 부처의 代表陣으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어 정보를 관리하며 情報의 獨占을 없애고 업무의 중복, 과당경쟁에서 생기는 피해를 줄임으로써 對中國 直接投資에서 초래되는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나. 非經濟的 側面

한·중간의 投資活性化를 위한 經濟的 協力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友好的인 增進을 조성해 가는 일인데, 이는 政治的·文化的 次元에서 협력을 구축하는 일로서 經濟的 協力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비록 韓·中 修交는 오래되었지만 이념을 달리하는 양국간에는 여전히 理念的 葛藤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갈등요소를 文化的 交流의 촉진을 통한 양국간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相互間 不信이나 경계심을 완화시켜 관계개선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學術交流를 활성화하는 일이다. 즉 중국의 연구기관, 대학 등과 국제학술대회나 자료교환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둘째, 문학, 연극, 영화, 체육 등의 교류를 통하여 相互 文化的 理解增進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일이다. 셋째, 觀光交流의 擴大를 통한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일이다. 中國의 經濟人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의 선진경제를 시찰하게 하여 韓國經濟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

혀 줄 필요가 있으며, 더욱 폭넓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民間企業이 民間親善團을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일이다. 넷째, 韓流를 통한 中國人들의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文化的 理解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第 VI 章 要約 및 結論

중국은 1978年 鄧小平을 중심으로 한 經濟改革·開放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7~8% 이상의 經濟成長을 이룩하였는데, 이는 국정의 최고목표를 경제건설에 두고 經濟改革을 착수하여, 현재 미국과 더불어 경제대국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경제개혁·개방 이후 엄청난 양의 外國人直接投資를 유치하여 현재 세계 최대의 外國人直接投資 誘致國이 되었고, 중국 역시 한국의 최대 투자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약 1만 5천개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弱小國에서 強大國으로 기업이 이동한 세계 최초의 사례이다.

기회의 땅인 中國, 그러나 좀처럼 외국인인 돈을 벌기 힘든 中國에서 韓國企業들은 어떠한 投資戰略을 수립하여야 할까?

中國市場에는 전 세계 초일류기업들이 대거 진출하였다. 또 기존의 중국에 투자한 外國企業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과 市場 및 消費者에 대한 이해와 강한 유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新規 投資企業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이나 막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진출하기에는 위험성이 큰 시장이다. 中國에 진출해 성공한 企業이 많지 않고 현재 진출해 있는 企業도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확실하게 경쟁력 있는 製品과 技術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력, 기술, 시스템은 물론 자본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풍부한 勞動力과 저렴한 人件費만 믿고 중국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철저한 市場調査와 事前準備가 된 상태에서도 다시 한번 재점검 해보는 노력이 필요함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尖端製品으로 정면승부를 펼친다는 사생결단이 필요하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은 外國人投資企業들의 해외투자를 허용하는 등의 자본자유화정책을 먼저 시행할 정도로 外國人投資誘致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韓國은 중국에 수출과 대중국 투자활동을 통해 중국과 交易關係의 후자는 물론 經濟成長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 현재 한국은 중국에 수세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 韓·中 交易은 산업발전단계의 차이로 인해 상호 보완적인 패턴을 지니고 있으며,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기업들의 設備投資 및 生産活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중간 무역불균형은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공급하고 中國에서 임가공한 후 제3국에 수출하는 交易構造에 근거한 것으로, 한국이 일본과의 교역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나타내는 것과 유사한 구조이다.

특히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에게 약 100만명의 雇用創出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반하여,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실업자수가 약 84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韓國經濟의 현실을 고려할 때, 對中國 投資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내기업의 海外投資는 수출증대를 통한 貿易收支 改善效果를 수반하므로 외환수급을 고려한 범위 내의 해외투자의 활성화 및 기존의 투자기업의 經營活性化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中國은 13억 인구의 巨大市場으로서 WTO 가입과 올림픽 유치 등으로 內需市場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소비재부문은 貿易收支가 오히려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中國 內需市場 開拓을 위한 마케팅 강화와 함께 현지투자를 내수확대와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류 및 유통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여 생산에서 물류와 유통으로 이어지는 일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中國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中國의 經濟改革·開放의 확대, 특히 관세율 인하 등을 통해 현재보다 더 많은 海外投資企業들이 中國에 진출할 것이 확실하다. 특히 지리적 우세, 문화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韓國企業들이 중국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나, 韓國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화되고 있어 개성공단이나, BRIC's, 베트남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中國市場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마늘과동이 발생했을 때 한국 휴대폰 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통해 韓國經濟에 위기를 조장했던 것처럼 여러 나라에 위협부담을 분산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중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資本財와 原資材 輸出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 격차 유지와 제품차별화가 긴요하게 요구된다. 그리고 海外投資 및 기업내 무역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統計의 正確度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海外投資企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韓國企業들이 해외 생산기지를 대거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環境變化에 대응한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이었으며, 國際競爭力을 상실한 비교열위 업종은 사업전환이나 해외이전을 통해 競爭力을 강화시킨다는 정부의 企業政策도 海外直接投資를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環境變化에 대응한 방어적 차원의 해외직접투자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렵다. 해외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競爭優位를 누리려면 현지에서 人的·物的資源 能力을 축적하고 기업의 핵심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韓國企業들이 대중국 투자시 고려해야 할 投資戰略 및 投資活性化 方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企業의 가치사슬을 공유할 수 있는 中小企業과 大企業間에 또는 경쟁우위의 원천이 강한 韓國과 中國의 전문기업간에 협력관계를 맺어 투자진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지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의 대중국 투자목적에 있어 內需市場으로의 진출확대와 기업의 이윤창출을 고려해서 현지 중국기업과의 合作投資에 많은 관심과 中國政府의 외국인투자 유치 방식의 하나로 引受·合併을 통한 대중국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引受·合併 方式의 投資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海外投資가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철저한 投資環境 및 投資妥當性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적시·적소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國際經營人力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현지국의 投資誘引策을 잘 활용하고, 중국내의 다른 外國人投資企業이나 現地企業과의 전략적 제휴와 투자업종의 다양화, 노동조합 적극 활용,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 高品質, 高價戰略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現地法人의 장기적인 성장과 현

지법인에 대한 국내 본사의 輸出活動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投資企業의 현지화가 필수적인 과제이다.

셋째, 中國文化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폭 넓은 인간관계의 형성, 현지인의 商慣習과 더불어 關시를 활용하는 경영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中國政府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政策基調를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가 많고 關連법규를 통해 外國人投資를 일정한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投資方式에 따라 출자, 경영방식, 이윤분배 방식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合資, 合作, 獨資投資 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넷째, 기업 전체 차원에서 經營效率을 높이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다. 中國에 대한 直接投資를 통해 단기적으로 投資收益率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輸出과 直接投資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R&D 확대와 지적재산권 활용을 통한 無形資產의 競爭力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아직까지 中國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의 投資成功率은 낮은 편이다. 이는 中國社會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중국특유의 ‘관시’, 즉 관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中國과의 貿易 및 投資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저한 事前調査와 協力關係를 바탕으로 투자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울러 政府에서도 中國과의 協議體를 내실 있게 가동하여 현지상황에 대한 충분한 情報과 專門家 養性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한국기업들이 현지에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여섯째, 中國은 自國經濟에 대한 공헌도가 낮은 단순조립방식의 投資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대폭 줄였다. 따라서 부품, 자재 등을 현지에서 조달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일괄생산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中國政府는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經濟特區 中心의 지역별 우대정책을 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하여 신소재, 첨단산업부문에 대하여 金融·稅制上的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들 내륙지역에 대한 外國人投資를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업종별·지역별로 상이한 投資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투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

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韓國企業의 대중국 투자는 급변하는 世界 經濟環境 變化로 인하여 더욱 증가되고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中國은 세계에서 成長潛在力이 가장 큰 국가이고, 저렴한 勞動賃金과 거대하지만 단일화된 市場을 갖춘 나라로서 이미 세계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가장 많은 국가로 부상하였다. 한국의 對中國 投資企業은 이런 中國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앞으로 競爭關係보다는 共生共存의 關係로 韓·中 兩國間에 理想的인 시너지效果를 創出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國內文獻 >

- 강승호·김진경(2004. 12), 『청도 진출 인천기업 실태조사』, IDI연구보고서 2004-22, 인천발전연구원.
- 강승호 외 8인(2004. 6), 『중국 동북3성 개발과 한국의 대응전략』, IDI행사자료집 2004-3, 인천발전연구원.
- 강영문(2000), “WTO 체제하의 한·중 통상관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 25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 권순범(2004. 7), “우리 기업의 대중투자 현황과 개선과제 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 동북아팀.
- 김번욱·김혜진·김연하(2001. 11), 『중국 투자 제도 및 관행』, 한중교류센터 연구보고서 2001-01, 인천발전연구원 한중교류센터.
- 김병순(2004. 12),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대한경제학회지』 제17권 제6호, 대한경제학회.
- 김익수(2005), 『중국투자론: 이론과 실제』, 박영사.
- 김익수 외 14인(2005), 『현대 중국의 이해』, 나남출판.
- 김원배·권영섭(1998), 『한·중 경제협력 전망과 연안지역 개발방향』, 국토개발연구원.
- 김주영(2002), “한국의 대중국 투자의 평가와 전망”, 『대은경제리뷰』, 대구은행.
- 김준봉(2005), 『다시 중국이다』, 지상사.
- 김중관·안준범(2003), 『가자! 중국으로』, 도서출판 두남.
- 김홍석·이영주(2003. 12), 『중국투자 중소·벤처기업의 현지적용비용과 대응전

- 략』, 산업연구원.
- 남영숙 외 3인(2004. 11),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번순(2005),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특성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 박찬일(2003. 9),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자금조달과 현지금융』, 한국경제연구원.
- 백권호 외 5인(2002. 12),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지화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4), 『중국내 한국계 외자 기업의 경영현지화』, 지식마당.
- 성용모(2003), “중국의 WTO 가입에 대응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전략”, 『산업경영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산업경영학회.
- 손수윤(1997), “중국진출 한국투자기업의 애로사항 분석”, 『중국통상정보 2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송영남(2005. 8), “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 저해요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아시아 지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 『산업경제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산업경제학회.
- 신주식(2003), 『중국 비즈니스전략 308선』, 고려대학교 출판부.
- 안경준(1999), 『이것이 중국 상술이다』.
- 유희문 외 11인(2004), 『현대중국경제』 증보판, 교보문고.
- 윤기관(2003. 9),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전략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중국투자 촉진 방안”, 『무역학회지』 제28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 이근·한동훈(2002), 『중국의 기업과 경제』, 박영사.
- 이기호(2005),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요인의 실증분석을 통한 직접투자 전략』,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덕무·윤홍근(2003), “중국의 투자환경과 국내기업의 대중국 투자 증진방안”, 『지역발전연구』 제8권 제2호.
- 이덕무·이충호(2004), “중국의 투자환경에 따른 효율적인 현지법인 설립방안”,

- 『무역학회 발표논문집』, 한국무역학회.
- 이장원(2002),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 관리: 노동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이재기(2005), 『현대중국경제론』, 청목출판사.
- 이지평·강승호(2004), 『일본 및 대만의 공동화 현황과 대응전략 연구』, LG경제연구원.
- 장동식(2002), “WTO 기업에 따른 중국의 대외무역제도 개편과 한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에 관한 연구”, 『WTO 제1차 다자간협상(DDA)과 한국무역의 대응전략 도출』, 한국무역학회.
- 조현준(2004. 6), 『제조업계의 중국 현지투자·경영 실태-현지조사 결과 분석』, KIEP.
- 지만수 외 4인(2004. 12),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정책연구 04-1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남용(2003), “중국특구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방안”,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정책방향』, 한국국제통상학회.
- 최성일(2002), 『중국이 WTO를 만났다』, 신지서원.
- 최순화·신현암·권성용(2001), 『중국이 몰려온다』, 삼성경제연구소.
- 최용민(2002. 3), 『대중투자의 수출입 효과』, 무역연구소 동향분석팀.
- 한우덕(2002), 『뉴차이나 그들의 속도로 가라. WTO 가입 이후 중국 비즈니스전략 50』, 한국경제신문.
- 홍성범·이춘근(2000), 『중국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홍인기(2004), 『최근 중국경제와 세계화·정보화』, 박영사.
- 경기개발연구원(2005. 5), 『산동성 진출 한국기업을 통한 경기도와 산동성간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위탁연구 2005-01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0),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2), 『WTO 최신 중국 경제법령집』.

- (2003), 『중국의 유통업 현황과 진출방안』 .
- (2004. 3), 『중국 투자 실무 가이드(증보판)』 .
- (2004. 12), 『중국투자 신전략: 투자리스크 관리·권역별 진출 환경』 .
- (2005. 4. 29), 『성공적인 중국 투자 설명회』 .
- (2005. 11. 4), 『2006 중국 경제 전망 세미나』 .
- 대한상공회의소(1997),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현황과 전망』 .
- (1998 a),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경영실태와 애로요인』 .
- (1998 b), 『사례분석에 기초한 대중 투자·경영전략』 .
- 산업자원부(2003. 9), 『해외 제조업 투자 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
- 외교통상부(2000), 『외국의 통상환경』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4. 1), 『중국진출 기업의 경영환경 및 투자만족도 조사』 .
- 한국무역협회(2000),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2003. 10), 『대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실태조사』 .
- 한국수출입은행(2004. 1),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현지법인 경영현황 분석(2002 회계년도 기준)』 .
- (2005. 11), 『APEC 회원국의 경제 동향과 투자환경』 , 특별조사과 제 2005-4.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02. 6), 『중국투자환경과 투자사례』 .
- 한국은행(1998. 8), 『중국 경제의 개혁성과와 개혁정책 평가』 .
- LG경제연구원(2001), 『변화하는 중국 달라지는 소비자』 .

< 外國文獻 >

- 나카가네 카츠지, 이일영·양문수 역(2001), 『중국 경제 발전론』 , 나남.
- 등소평·김승일 역(1998. 8), 『등소평 문선 상, 하』 , 범우사.

- 마홍주 편(1993), 『십마시사회주의시장경제』, 중국발전출판사.
- 소도청(1985),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경제학적 접근”, 문진당.
- 王治林(2004), “中國吸收外國直接投資的法律和政策(중국의 외국직접투자유치에 관한 법률과 정책),” 『경남법학』 제19호,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문룡 등 편저(1997), 『국유소기업개혁조작지도』, 중국세무출판사.
- 임의부 외, 한동훈 역(1996), 『중국의 기적: 발전전략과 경제개혁』, 백산서당.
- 장군저(1997), 『체제경제학: 중국적 경제개혁』, 상해인민출판사.
- 장탁·오재환 편역(1997), 『중국의 개혁·개방사』, 도서출판신서원.
- 청차오 저, 최윤정·김준봉 역(2005), 『중국경제성장의 비밀』, 지상사.
- 해로명성 외(2000), 『WTO가맹으로 중국경제가 변한다』, 동양경제신보사.
- 중국 국가통계국(각년호), 『중국통계연감』, 중국통계출판사.
- 中國 國家統計局(2004~2005), 『中國統計摘要』.
- 중국사회과학원공업경제연구소(2001), 『중국공업발전보고』, 경제관리출판사.
- Divid, H., L. Hale(2003), “China Takes Off”,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 Dunning, J. H.(1981),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George Allen & Unwin.
- (1988), “The Eclectic Paradigm of International Production: A Restatement and Some Possible Extensions”, JIBS, Spring.
- Hymer, S. H.(1976),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Lipsey, R. E.(2001),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Operation of Multinational Firms”, Queens University.
- Markusen, J. E., K. Ekholm, and R. Forslid(2003), “Export-platform Foreign Direct Investment”, NMER Working Paper, No. 9517.
- McGuckin, R., M. Spiegelman(2004), *Restructuring China's Industrial Sector:*

Productivity and Jobs in China, Kitakyushu: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East Asian Development, Working Paper Series, Vol. 2004-13, July 2004.

Nam, Young Sook(2004), "China's Industrial Rise and the Challenges Facing Korea", *East Asian Review*, Vol. 16, No. 2.(Summer).

OECD(2003), *OECD Investment Policy Reviews: China*, Paris: OECD.

Porter, M. E.(1985), "Competitive Advantage Creating and Sustaining Superior Performance", The Free Press.

UNCTAD(2004), *World Investment Report 2003(United Nations)*.

Wells, L. T.(1983), "Third World Multinational The Rise of Foreign Investment from Developing Countries", The MIT Press.

< Internet Web Site >

관세청, <http://www.customs.or.kr>

국제금융센터, <http://www.kcif.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두산세계대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베이징저널, <http://www.beijingjournal.co.kr>

야후 경제사전, <http://kr.ecodic.yahoo.com>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http://www.koreaemb.org.cn>

중국경제 둘러보기, <http://www.chinabang.co.kr>

청도시외자기업정보지원센터, <http://www.qdic.net>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한국은행 ECOS, <http://www.bok.or.kr>

TRADEHELPER, <http://www.tradehelper.org>

개인사이트, <http://blog.naver.com/hanmailhan.do?Redirect=Log&logNo=80013246286>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630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8013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5351

http://cafe.naver.com/6303120.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16

< 기타 >

매일경제신문, 2004년 8월 ~ 2005년 10월.

무역일보, 2004년 8월 ~ 2005년 4월.